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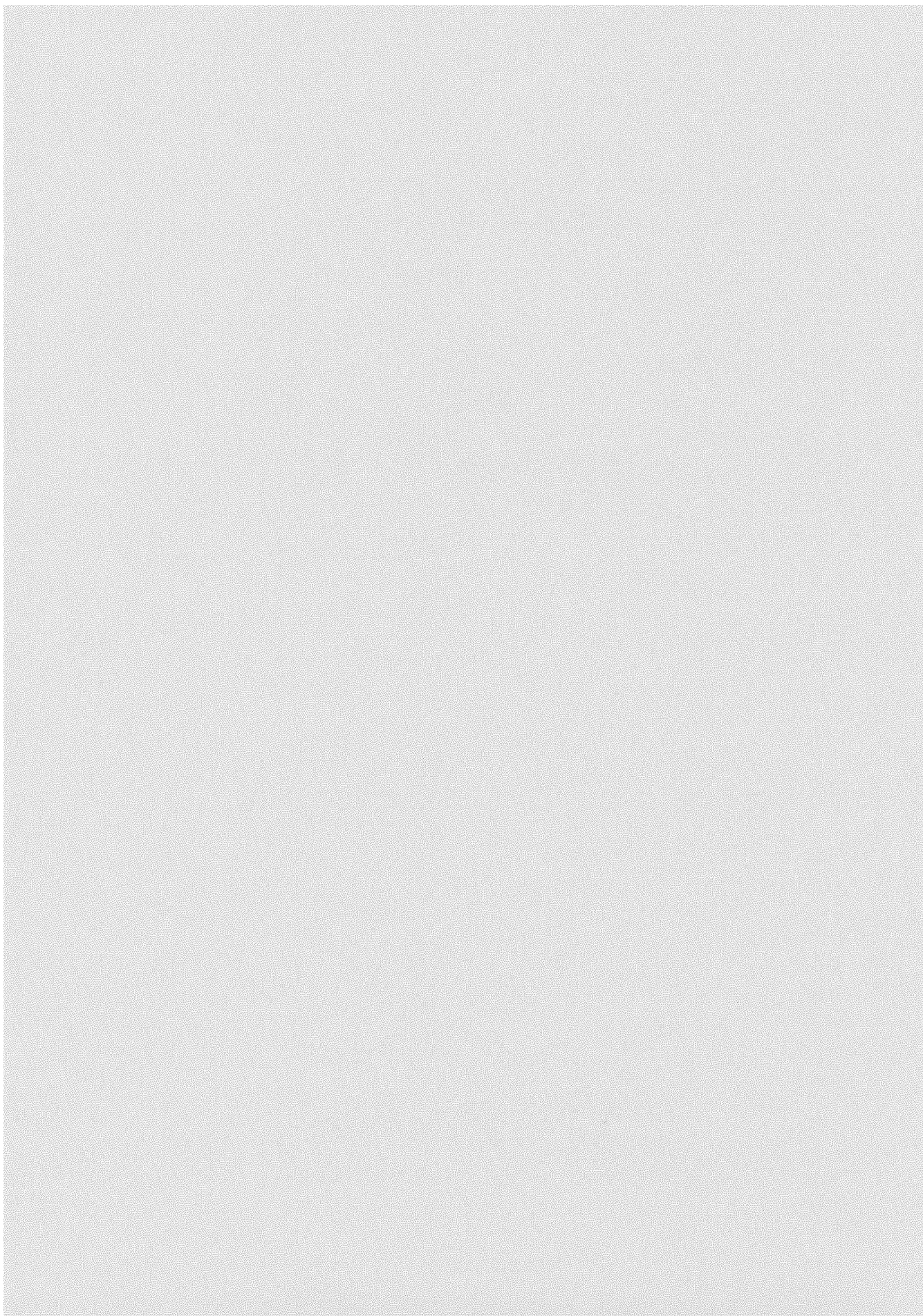
第15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3.4.22.~4.2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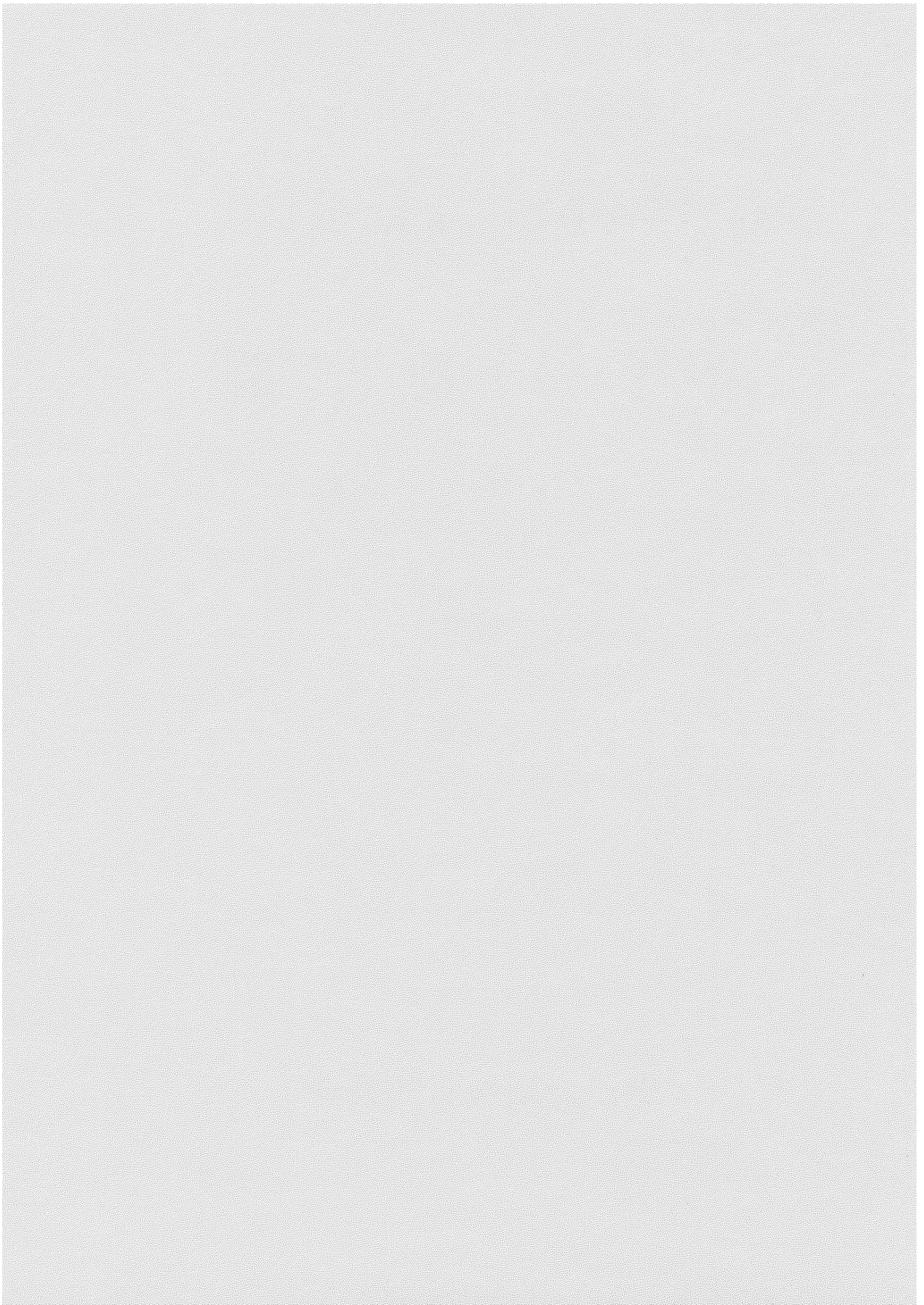


第15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3
II.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III.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5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27
2.	충청북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9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5
4.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	41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	51
6.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69
7.	충청북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71
8.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79
9.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87
10.	교육기관방문의건 .....	99
11.	결의문채택의건 .....	103
V.	별책부록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4월 22일 (화요일) 14시 02분

## 開會式順(第152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4시 02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4시 04분 폐식)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4월 22일 (화요일) 14시 04분

## 議事日程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6.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4시 04분 개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교

1. 경과보고



[제152회-제1차 본회의]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용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4월 1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 제2003-4호로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날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안건 제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9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3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15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산회 후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신 다음에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4월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교육기관

방문의견과 결의문채택의견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교육국장 반창남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명경영 품격행정을 펼치는 희망찬 충

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하여 정서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학생수련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52회-제1차 본회의]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  
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입  
혜수련 신축에 따른 운영 관리 업무를 충  
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  
함에 따라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  
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  
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학생야  
영장의이용관리등에관한규정을 학생수련  
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  
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

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  
계획안

7.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3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설유치원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  
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  
6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  
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별  
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  
는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단설유치원설립 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입니다.

설립목적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원장 임용으로 책임 행정 구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번지에 위치한 남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청주시 흥덕구 복대 2동 977번지에 위치한 서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3년 9월 1일자로 각각 남성유치원과 서원유치원으로 개편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실증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경초 외 5교에 교실 및 화장실 등 5,515㎡의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35억 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농고의 옥외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원거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력제고 여건을 조성코자 음성고 기숙사 997㎡를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학생들의 각종 학예활동, 실내체육 등을 위하여 영동농·공고 외 1개교에 다목적실 1,762㎡와 화산초 외 1개교에 도서관 1,708㎡를 신축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28억 3,5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받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월초 체육관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에 특별교부금 5억 9,000만원으로 714㎡의 다목적실을 건립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3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300㎡의 면적을 늘려 1,014㎡의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3교에 148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참 조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별첨 5)

(끝에 실음)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다음은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금과 2002년도 결산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 과학교육진흥 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교육공무원 증원 인건비 및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조정, 교육경비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746억 2,200만원에서 969억 9,200만원이 증액된 1조 7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511억 2,4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66억 3,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9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476억원, 교육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공무원 보수 인상분 306억 5,000만원, 교육시책 추진 및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150억 5,800만원, 예비비 3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증축비 23억 7,600만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비 22억 8,600만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유치원 시설비 20억 3,400만원, 각급학교 난방개선비 80억 6,300만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 117억 7,300만원, 급식시설확충비 18억 3,000만원, 선수합숙소, 강당 및 사택 등 보수사업비 41억 4,5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다목적교실, 도서관, 체육관, 직업보도실 신축비 38억 7,500만원, 2004년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인 청주농고 수영장 및 현암 로울러스케이트장 보수비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실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발명영재교실 및 과학영재교육 교육원 운영비 1억 8,500만원, 학교과학관 현대화 사업비 16억 6,000만원, 발명공작실, 현대화 실험

실, 과학선도학교,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반 운영비 11억 3,4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비 5억 5,600만원, 직업교육확충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버 재활용 사업비 3억 2,700만원, 지역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6,000만원, 교원 증원분 컴퓨터 구입과 교직원 연수용 컴퓨터 교체비 4억 6,900만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웹메일시스템 구축비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및 지역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사서보조원 배치 및 도서관 리모델링과 독서교육자료 개발비 3억 1,000만원,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상하지 못한 시책사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준별 성취도 평가 프로그램, 교육과정 관련 집중연수, 선택중심과정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비 등 9,000만원, 교육과정자료 개발 보급비 4억 300만원과 연구시범학교 운영비 1,100만원, 교원자격연수 및 자율연수, 영어교사 심화연수 경비 1억 5,4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보조교사 인건비 5,300만원, 사립유치원 교구구입비 9,500만원, 탁아방 운영비 1,500만원, 장

에학생의 교육보조원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2003학년도 신설학교 교구구입비 16억 5,700만원, 2003학년도 증설학급 교구구입비 2억 4,000만원,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대천에 신축 개장하는 임해수련원 운영비 및 인건비로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 대로 편성하였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4시 24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4시 25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

위원회구성건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진옥경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71개 공공기관 중

[제152회-제1차 본회의]

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전국 4위에 선정되어 그 동안 언론에 널리 홍보되어 왔습니다.

이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공무원, 그리고 1만 6천여 교육가족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친절과 청렴을 생활화하여 충북교육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별첨 4)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별첨 5)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별 책 부 록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4월 25일 (금요일) 11시 31분

## 議事日程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교육기관방문의건
7. 결의문채택의건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교육기관방문의건(의장 제의)
7. 결의문채택의건(고규강 위원 외 6인 발의)

(11시 31분 개의)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 ● 의장 이상일

[제152회-제2차 본회의]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고규강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별로 각각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규강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1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

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정서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한 임해수련시설을 충청남도 보령시에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이관, 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수련시설 일부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를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둔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  
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  
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야  
영장의이용관리등에관한규정을 학생종합  
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  
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은 타  
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출시 누  
락된 일부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하여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  
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  
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들  
아감)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  
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  
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  
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11시 3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4월 24일 남성유치원 및 서원유치원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

(11시 3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4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진옥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진옥경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진옥경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4월 1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쪽의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746억 2,164만 7,000원보다 969억 9,218만원이 증액된 1조 716억 1,3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11억 2,422

만 8,000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66억 3,80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92억 2,99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별 재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526억 6,836만 4,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16억 9,364만 2,000원, 급여복지에 306억 5,012만 8,000만원, 교육행정에 82억 9,596만 6,000원, 예비비 36억 8,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6억 8,250만원으로 교원단체활동운영비로 2억 42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한교조는 충북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교원단체로 한교조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로 5억 9,4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립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므로 설계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

[제152회-제2차 본회의]

담수입, 2002년도 결산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과학교육진흥,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적 추진, 학교교육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지원, 교육공무원 증원 인건비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이월 추정액을 적정히 판단,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시설비 등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배분에 있어 가능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 합숙소 시설, 난방·조도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9)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출예산에서 6억 8,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세출 각각 1조 716억 1,382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육기관방문의견

(11시 48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6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가 제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축구 꿈나무 중 9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경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4월 8일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실 및 4월 18일 금천고등학교 정독실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하절기를 앞두고 급식학교에서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바,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된 위험한 교육 및 급식환경을 조기 확인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신뢰받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합숙소 기숙사 및 급식소 운영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미원공업고등학교 등 11교에 대하여 2003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 학교현장을 방문 점검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육기관방문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교육기관방문의견(별첨 10)

(끝에 실음)

7. 결의문채택의견

(11시 50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결의문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일곱 분의 위원님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옴)

●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시·도



[제152회-제2차 본회의]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시·도 교육청 기구 및 정원 책정권 지방이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제가 출범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권한이양이 미흡하고 지방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시·도교육청 기구 및 정원책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토록 관계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장 직급을 시·도와 동일 직급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배정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완전한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을 다지고자 1만 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충북 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 중 결의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1. 시·도교육청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1. 시·도교육청 국장 직급을 시·도와 동일직급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은 조례에 규정된 지방 3급으로 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4월 25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결의문채택의건(별첨 11)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규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 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즉시 관계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청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화재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실 화재에 이어 이번에 또 금천고등학교 정독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예방은 집행청에서의 공문지시와 주기적인 점검 등 일상적인 조치만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을 위하여는 실질적인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관계 공무원 및 학생의 화재에 대한 인식전환 등에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관장은 물론 방화관리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문책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함으로써 작은

화재에도 큰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관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폐회)

[제152회-제2차 본회의]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웅,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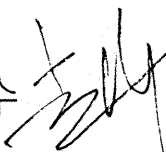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7)
-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8)
-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9)
- ▶ 교육기관방문의견(별첨 10)
- ▶ 결의문채택의견(별첨 11)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5.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이 기 수 

위 원 진 옥 경 지 옥 경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영 기





# 議 事 日 程 (案)

第152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3. 4. 22. ~ 4. 25.(4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4월 22일(화)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b>[ 제1차 본회의 ]</b> 1.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3. 4. 22. ~ 4. 25.(4일간)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4.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제안설명)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제안설명) 6.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7.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4월 23일(수) ~ 4월 24일(목)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본회의 휴회
4월 25일(금) (11:30)	<b>[ 제2차 본회의 ]</b> 1.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5.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교육기관 방문의 건 7. 결의문 채택의 건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52-1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4월 25일 (제 154 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4월 14 일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152-1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0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것임.

### □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5절, 제20조제1항).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학생수련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 (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호).

### □ 개정조례안 : 붙 임

### □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기 타 : 입법예고('03. 04. 04 ~ 04. 1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의하여 단재의 얼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을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학생수련 및 공무원연수”를 “공무원 연수”로 한다.

제5절의 제목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야영장”을 “수련원”으로, “산4번지에 둔다.”를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장장”을 “원장”으로 하고, 본문중 “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며, 장장”을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으로 한다.

제22조중 “야영장장”을 “수련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1조(설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재의 일을 이어받아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 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며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설치) ① . . . . .의  <u>하여 교육공무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학생수련 및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p> <p>2. ~ 4. (생략)</p> <p>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p>	<p>제13조(업무) (현행과 같음)</p> <p>1. 공무원 연수 . . . . .  .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 5 절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p>
<p>제20조(설치) ①법 제3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야영장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4번지에 둔다.</p>	<p>제20조(설치) ① . . . . .  . . . . . <u>학생들</u>  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 . . . .  . . . . .</p> <p>②수련원 . . . . .  산3번지에 둔다.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1조(장장) <u>야영장에 야영장장을 두</u>며,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 . . . . .                  . . . . .                  . . . . .</p>
<p>제22조(업무) <u>야영장장은</u> 다음사항을 관장한다.</p> <p>1. ~ 3. (생략)</p>	<p>제22조(업무) <u>수련원장</u>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별첨 3)

의안번호	제 152-2 호
의결 연월일	2003년 4월 25일 (제 152 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3년 4월 14일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 - 2
----------	---------

제출년월일 : 2003. 0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 학생야영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 (안 제6장).

## □ 개정 조례안 : 불 입

##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기 타 : 입법예고(03. 04. 04 ~ 04. 1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수련원 및 야영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야영장” 을 “수련원 및 야영장” 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중 “야영장” 을 각각 “수련원 및 야영장” 으로 하고, “장장” 을 각각 “원장 및 장장” 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개원·개장시기 및 시간) 수련원 및 야영장의 개원·개장시기 및 시간은 원장 및 장장이 정한다.

제33조제1항중 “야영장” 을 “수련원 및 야영장”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장장” 을 “원장 및 장장” 으로 한다.

제34조중 “장장” 을 “원장 및 장장” 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야영” 을 “수련 및 야영” 으로, 제3호의 “장장” 을 “원장 및 장장” 으로 한다.

제36조중 “야영장” 을 “수련원 및 야영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 등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야영장</p>	<p>제2조(정의)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수련원 및 야영장”이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수련원 및 야영장</p>
<p>제30조(이용대상) 야영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잠장은 근로청소년,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야영장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활동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30조(이용대상) 수련원 및 야영장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원장 및 장장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수련원 및 야영장 . . . . .</p>
<p>제31조(개장시기 및 개장시간) 야영장 시설의 개장시기 및 개장시간은 장장이 정한다.</p>	<p>제31조(개원·개장시기 및 시간) 수련원 및 야영장의 개원·개장시기 및 시간은 원장 및 장장이 정한다.</p>
<p>제32조(시설이용의 허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야영장 이용신청서를 장장에게 제출하고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32조(시설이용의 허가) 수련원 및 야영장 . . . . . 수련원 및 야영장 . . . . . 원장 및 장장 . . . . .</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3조(사용료 징수) ①야영장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u>장장이</u> 정한다.</p>	<p>제33조(사용료 징수) ①<u>수련원 및 야영장</u> . . . . .</p> <p>② . . . . .</p> <p>. . . . . <u>원장 및 장장</u> . . . . .</p>
<p>제34조(이용제한) <u>장장</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야영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li>2. (생략)</li> <li>3. <u>장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ol>	<p>제34조(이용제한) <u>원장 및 장장</u> . . . . .</p> <p>.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수련 및 야영</u> . . . . .</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u>원장 및 장장</u> . . . . .</li> </ol>
<p>제3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u>야영장</u>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제35조(이용자의 책임) . . . . .</p> <p>. . . . . <u>수련원 및 야영장</u> . . . . .</p> <p>. . . . .</p>
<p>제36(재정) <u>야영장</u>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p>	<p>제36(재정) <u>수련원 및 야영장</u> . . . . .</p> <p>. . . . .</p>



의안번호	제 152-3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연 출 일	2003년 4 월 14 일

#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의안 번호	제 152-3호
----------	----------

제출년월일 : 2003. 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I. 제안사유

-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유자격원장 임용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

## II. 주요골자

설립목적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 조성
- 유자격원장 임용으로 책임행정 구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시군명	유치원명	개원예정일	학급수	추진방법	위 치	비고
청주	남성유치원	2003. 9. 1	5	남성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	
	서원유치원	2003. 9. 1	5	서원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977	

시설확보계획 : 병설유치원 시설활용

추가소요예산액 : 운영비 80,000천원 (1개월당 40,000천원)



### Ⅲ.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 1. 설립계획

시군명	유치원명	개원예정일	학급수	추진방법	위 치	비고
청주	남성유치원	2003. 9. 1	5	남성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19-1	
	서원유치원	2003. 9. 1	5	서원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977	

#### 2. 원아 및 교직원 현황

유치원명	원아수현황				교직원현황			비고
	3세	4세	5세	계	원감	교사	계	
남성유치원	20	32	80	132	1	5	6	일반적인 초등학교 직원겸임
서원유치원	26	39	56	121	1	5	6	

#### 3. 시설확보현황

유치원명	교지	건축면적	연면적	사용시설현황					비고
				보통교실	유화실	관리실	기타	계	
남성유치원	1,350m <sup>2</sup>	450m <sup>2</sup>	790m <sup>2</sup>	5실 (310m)	1실 (113m)	1실 (62m)	305m <sup>2</sup>	7실 (790m)	'84. 3. 10. 병설유치원 설치
서원유치원	1,350m <sup>2</sup>	450m <sup>2</sup>	790m <sup>2</sup>	5실 (315m)	1실 (114m)	1실 (62m)	299m <sup>2</sup>	7실 (790m)	'84. 3. 10. 병설유치원 설치

4. 추가 소요예산액 : 운영비 80,000천원(1개원당 40,000천원)

- 금회추경반영예정 26,800천원(1개원당 13,400천원)

## 5. 원아수용계획

유치원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비고
남성유치원	취원대상아	880	833	817	762	
	취원아	132	140	140	140	
서원유치원	취원대상아	557	578	564	599	
	취원아	121	140	140	140	

## IV. 참고자료

1. 시설기준 및 검토내역
2. 5학급이상 병설유치원 현황
3. 위치도
4. 근거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 시설기준 및 검토내역

유치원명	구분	시설·설비적용기준	기준	보유	비고	
남성유치원	교지	교사용대지①	◦ 건축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건축면적/건폐율)	750.25m <sup>2</sup>	900m <sup>2</sup>	충족
		옥외체육장②	◦ 학생수별 기준면적 - 41명이상(120+N)m <sup>2</sup>	270m <sup>2</sup>	450m <sup>2</sup>	충족
	교지 합계 (①+②)		1,020.25m <sup>2</sup>	1,350m <sup>2</sup>		
	교사	◦ 학생수별 기준면적 - 41명이상(120+3N)m <sup>2</sup>	530m <sup>2</sup>	790.33m <sup>2</sup>	충족	
서원유치원	교지	교사용대지①	◦ 건축관련 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건축면적/건폐율)	751.05m <sup>2</sup>	900m <sup>2</sup>	충족
		옥외체육장②	◦ 학생수별 기준면적 - 41명이상(120+N)m <sup>2</sup>	270m <sup>2</sup>	450m <sup>2</sup>	충족
	교지 합계 (①+②)		1,021.05m <sup>2</sup>	1,350m <sup>2</sup>		
	교사	◦ 학생수별 기준면적 - 41명이상(120+3N)m <sup>2</sup>	530m <sup>2</sup>	789.39m <sup>2</sup>	충족	

[ 참 고 자 료 ]

□ 단독원사보유 5학급이상 병설유치원 현황

지역별	유치원명	학급수	원아수	비 고
청 주	덕성초병설	5	140	학구분리로 사천초신설시 원아감소
	남성초병설	5	132	3세반 편성
	창신초병설	5	131	3세반 편성
	서원초병설	5	121	3세반 편성
충 주	예성초병설	5	134	3세반 편성
보 은	삼산초병설	5	128	3세반 편성
옥 천	삼양초병설	6	174	3세반 편성

# 근거법령 받쳐서

##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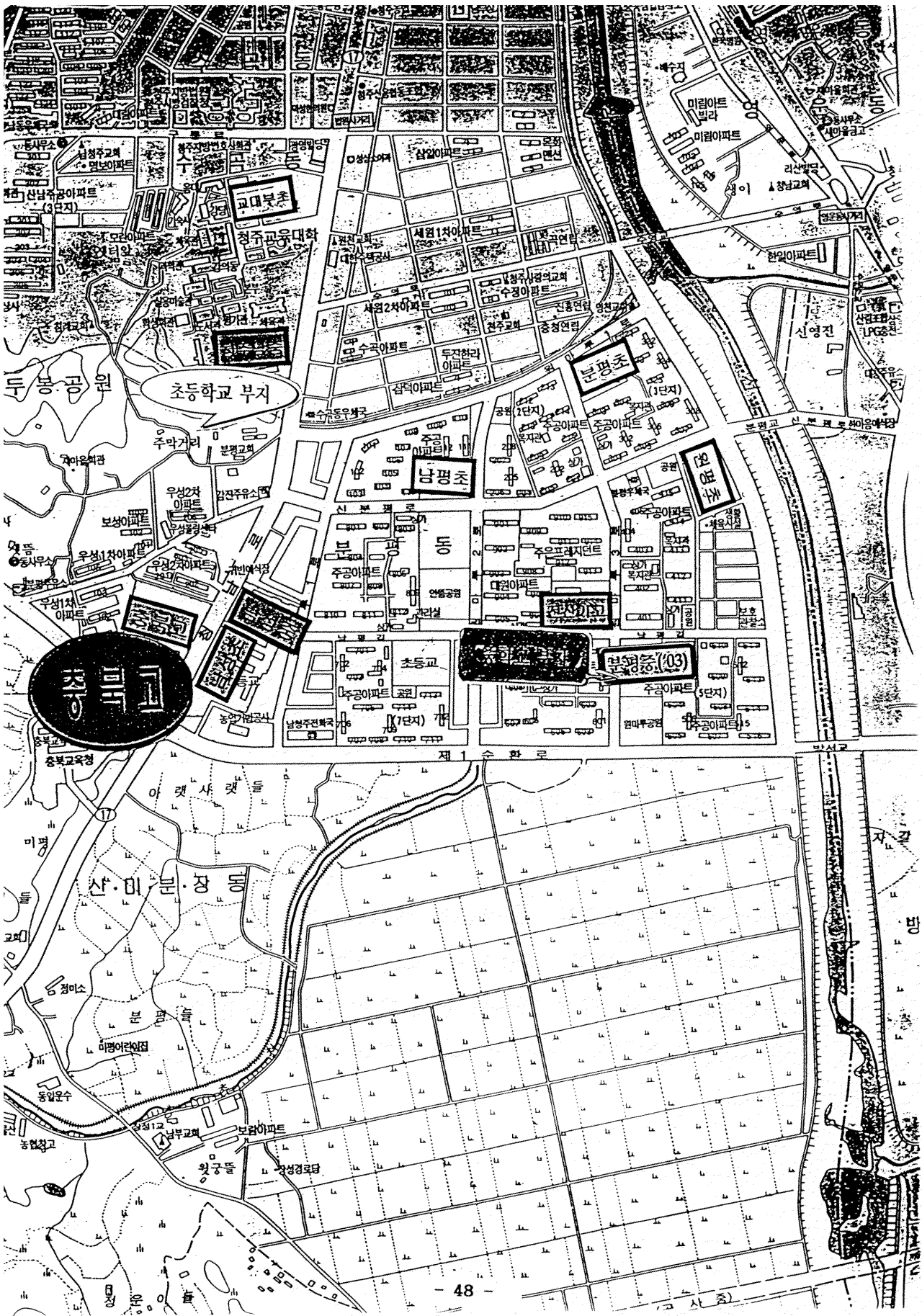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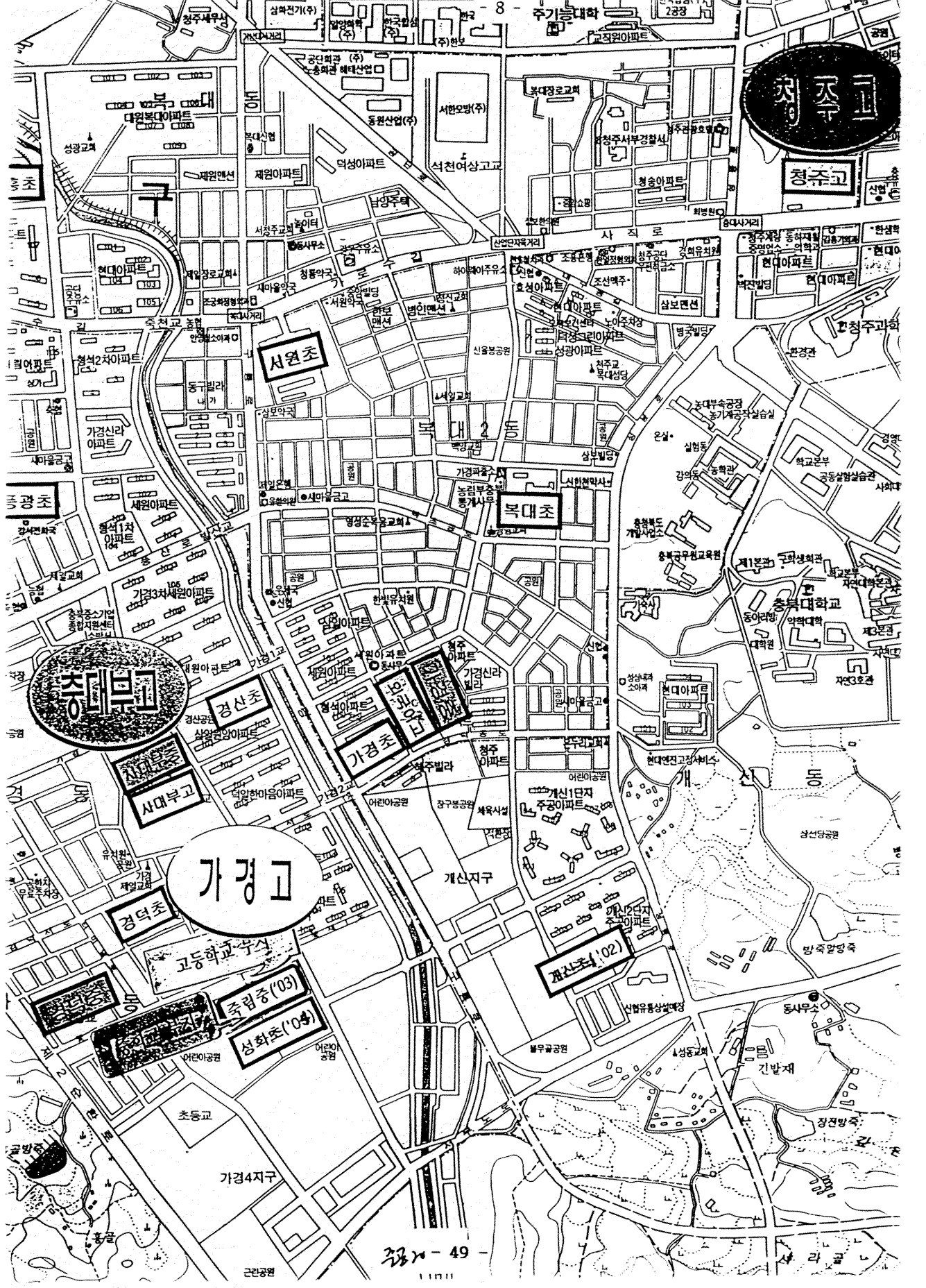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두봉공원

초등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







(별첨 5)

의안번호	제 152-4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 제 회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3년 4월 14일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52-4
----------	-------

제출년월일 : 2003. 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취득

(단위:m<sup>2</sup>,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추정금액
건 물	청주농고외 12교	수영장의 12건	13,936.42	14,870,023

## 3. 제안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붙임 : 건물 취득 배치도 13부.

#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총괄표

(단위 : m<sup>2</sup>,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특 취	계	토지									
		건물	1	997.92	1,000,000	12	12,938.5	13,870,023	13	13,936.42	14,870,023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1	997.92	1,000,000	12	12,938.5	13,870,023	13	13,936.42	14,870,023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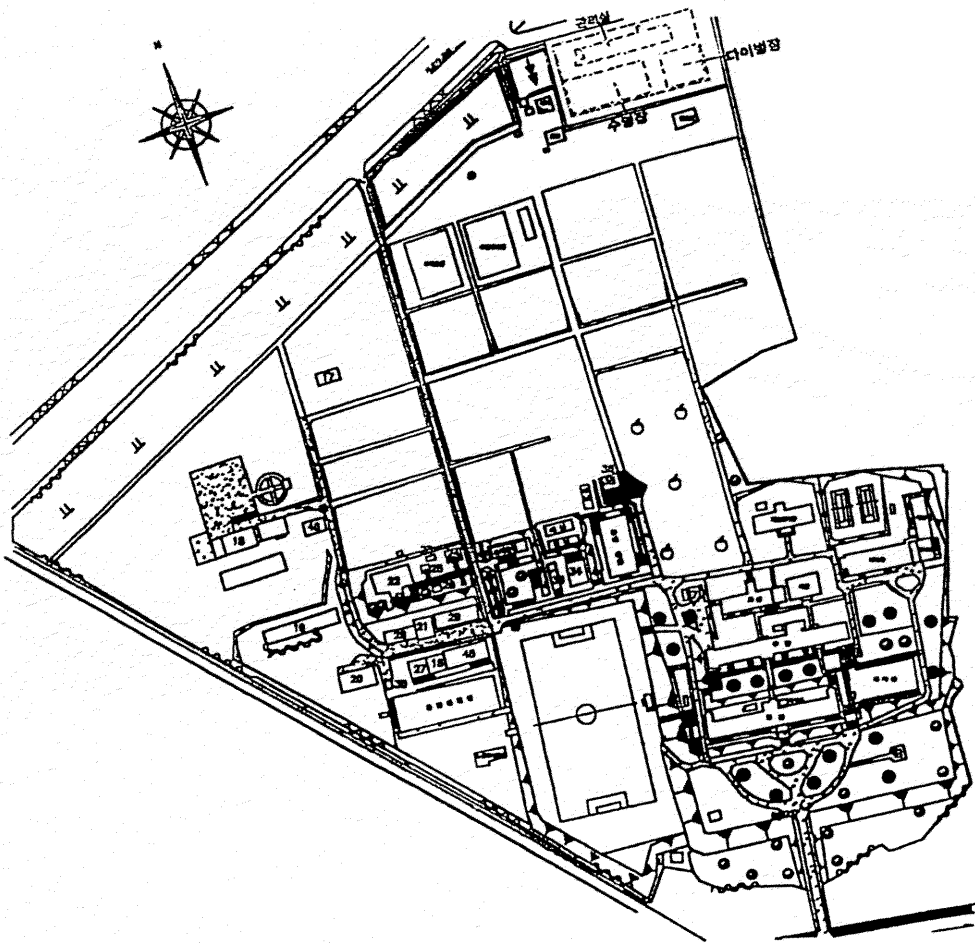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 유 자	비 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					
청주농고	건물 (수영장)	내덕동 322	3,653	6,000,000	하반기	2004 전국체전 수영 경기장	교육감	1쪽
영동농공고	건물 (다목적실)	영동읍 부용리 42-1	912	721,5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2쪽
음성고	건물 (기숙사)	음성읍 읍내리 503-7	997.92	1,000,000	상반기	기부채납	교육감	3쪽
가경초	건물 (교실외)	복대2동 2443	732.7	794,299	하반기	수용시설확충	교육감	4쪽
석교초	건물 (교실외)	석교동 10	1,170	985,235	하반기	제7차교육과정	교육감	5쪽
청운중	건물(다목 적실,교실)	영운동 73-48	1,086	642,654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수용시설확충	교육감	6쪽
봉명중	건물 (교실외)	봉명2동 1305	630	520,837	하반기	7차교육과정 수용시설확충	교육감	7쪽
남산초	건물 (교실외)	용산동2109	595.80	509,010	하반기	7차교육과정	교육감	8쪽
화산초	건물 (도서관)	화산동 606	972	780,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9쪽
부강초	건물 (다목적실)	부용면 부강리 432-2	850	668,265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10쪽
이월초	건물 (체육관)	이월면 송림리 667	300	300,000	하반기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11쪽
대소초	건물 (유치원,교 실,급식소)	대소면 오산리 186-1	1,301	1,374,542	하반기	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감	12쪽
음성여중	건물 (도서관)	음성읍 평곡리 830-3	736	573,681	하반기	평생교육시설확충	교육감	13쪽
계	건물		13,936.42	14,870,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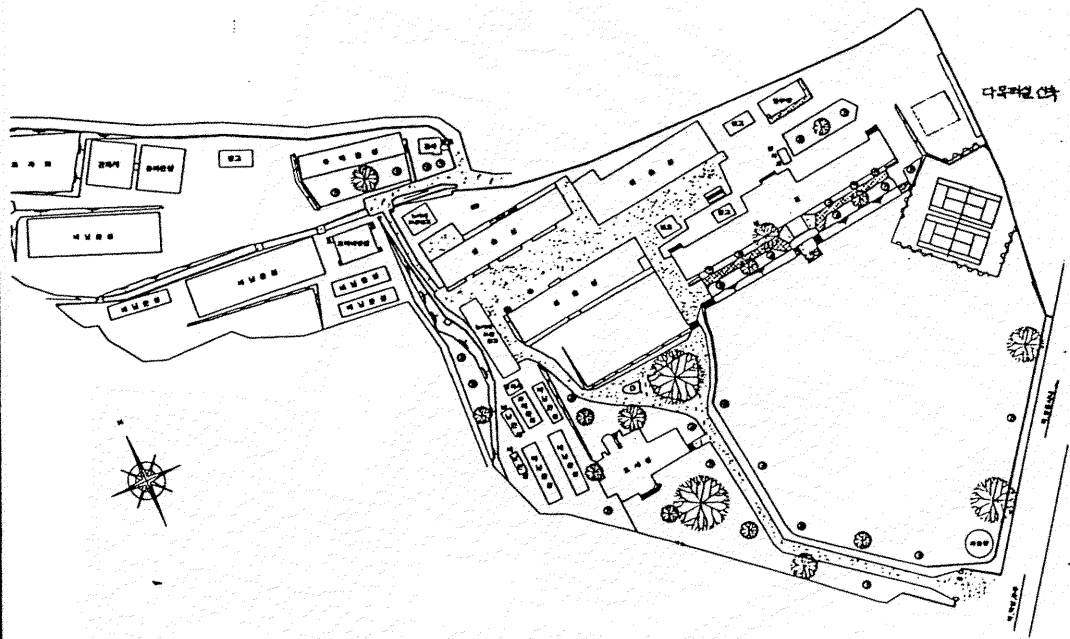
# ( 1 ) 청주농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수영장	청주시 내덕동	322	철골	3,653	6,000,000	2004 전국체전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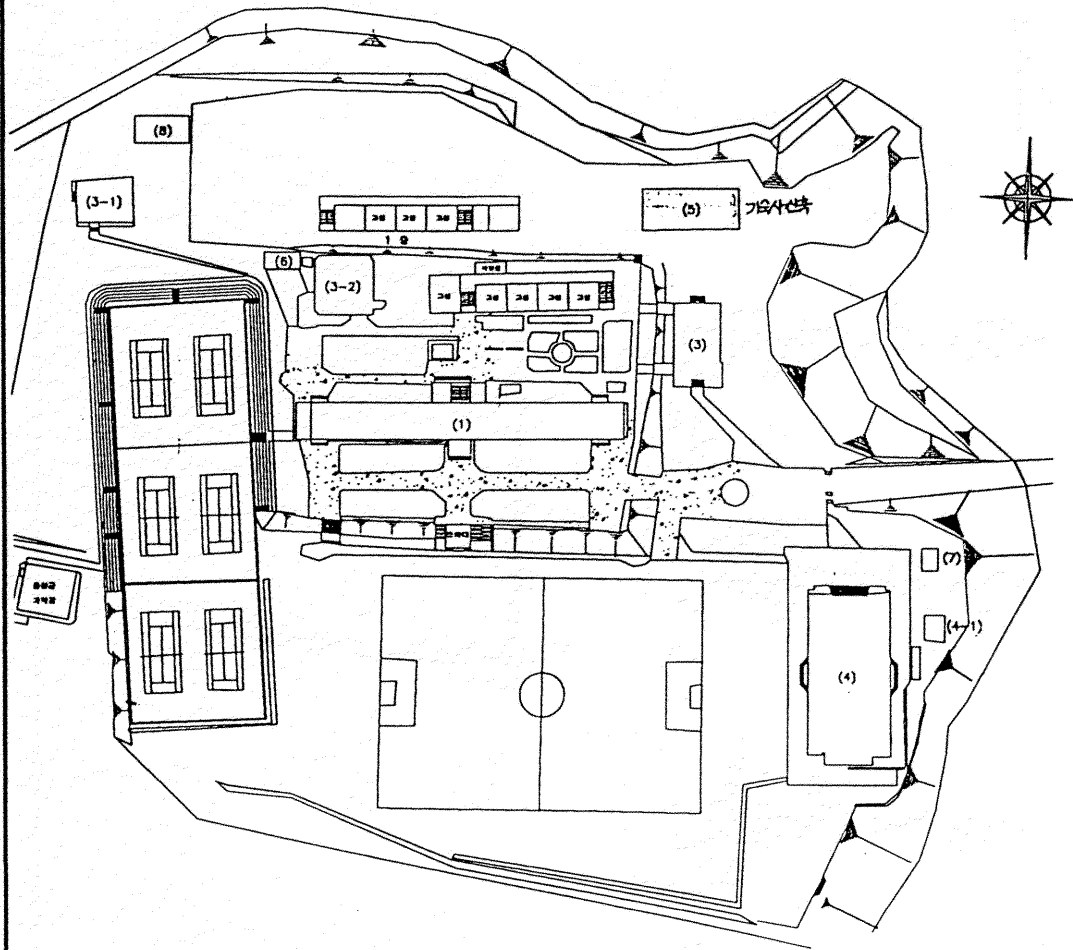
## ( 2 ) 영동농공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다목적실	영동읍 부용리	42-1	철콘슬	912	721,500	교육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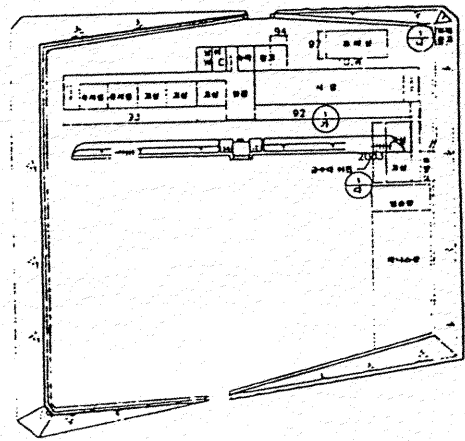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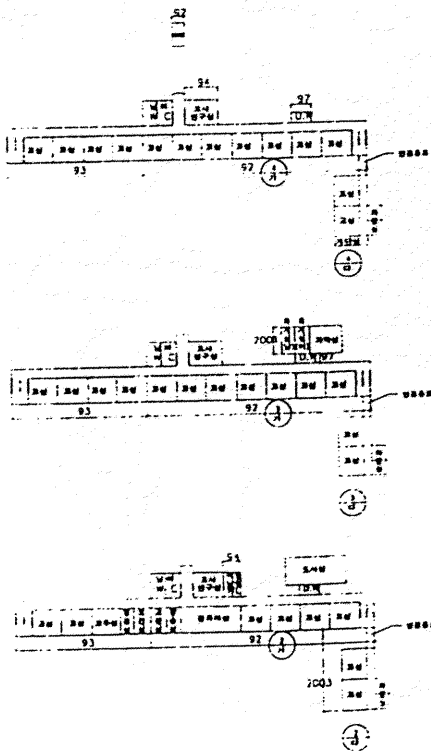
### ( 3 ) 음성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조	수 량 (㎡)	추정가액 (천원)	사 유
기숙사	음성읍 읍내리	503-7	철콘슬	997.92	1,000,000	기부채납



## ( 4 ) 가 경 초 건 물 취 득 배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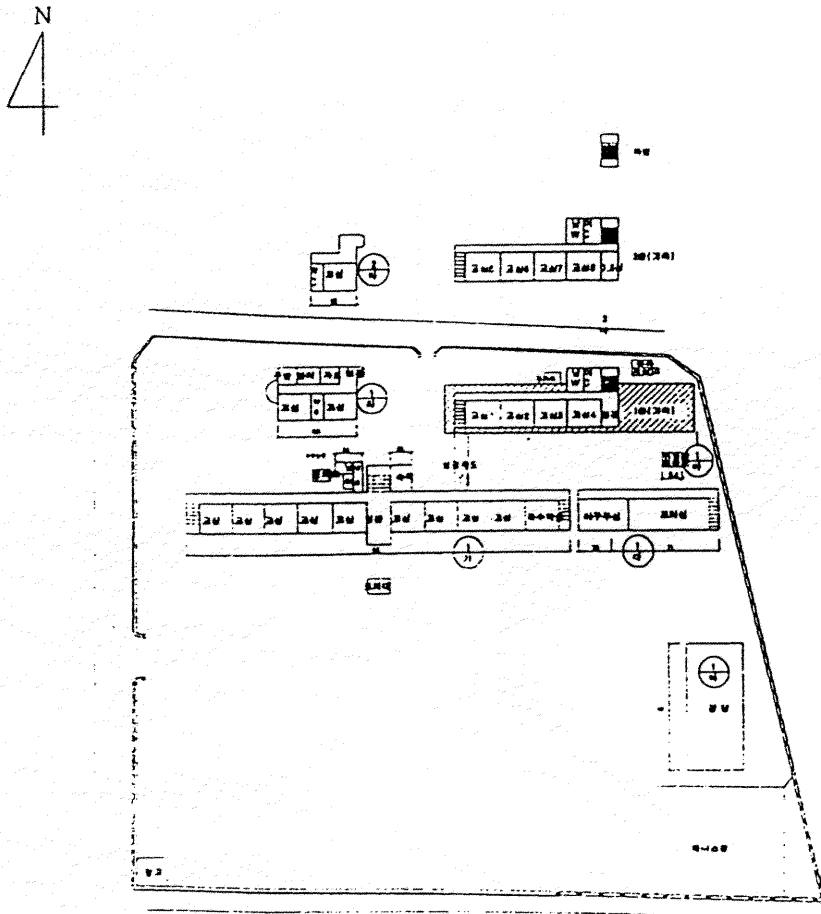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수 량 (㎡)	추 정 가 액 (천 원)	사 유
교 실	복대2동	2443	철콘슬	360	342,474	수용시설 확충
계 단 실			철콘슬	45	31,200	
화 장 실			철콘슬	240	359,200	
연 결 복 도			철콘	87.7	61,425	
합 계				732.7	794,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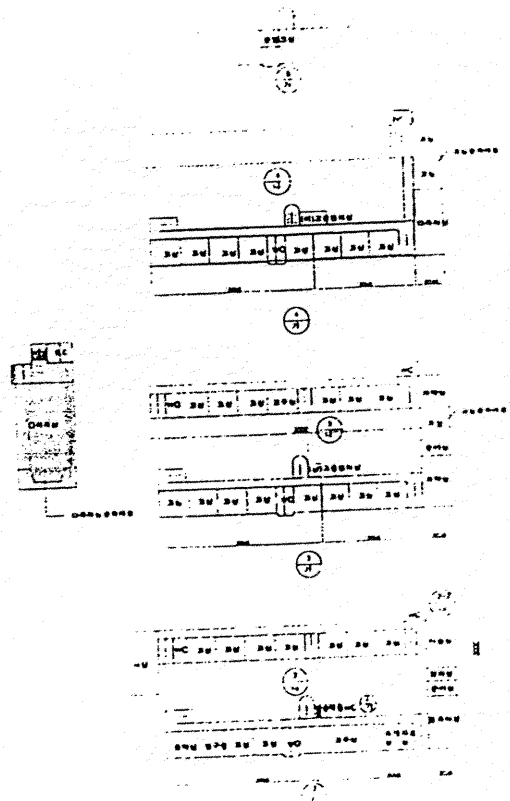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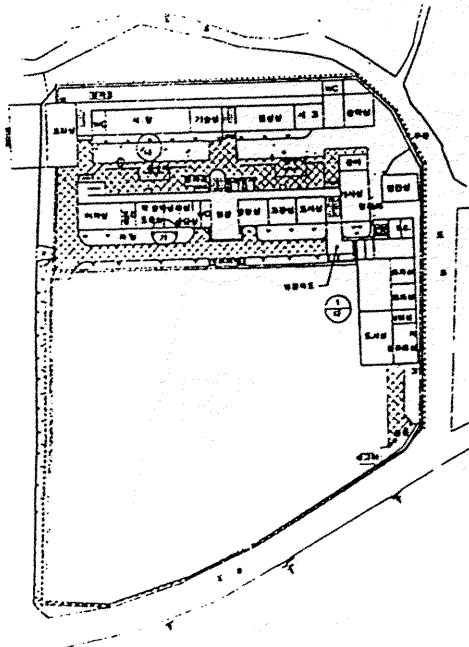
## ( 5 ) 석교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교실	상당구 석교동	10	철콘슬	765	716,835	제7차교육과정
계단실			철콘슬	315	218,400	
연결복도			철콘	90	50,000	
합계				1,170	985,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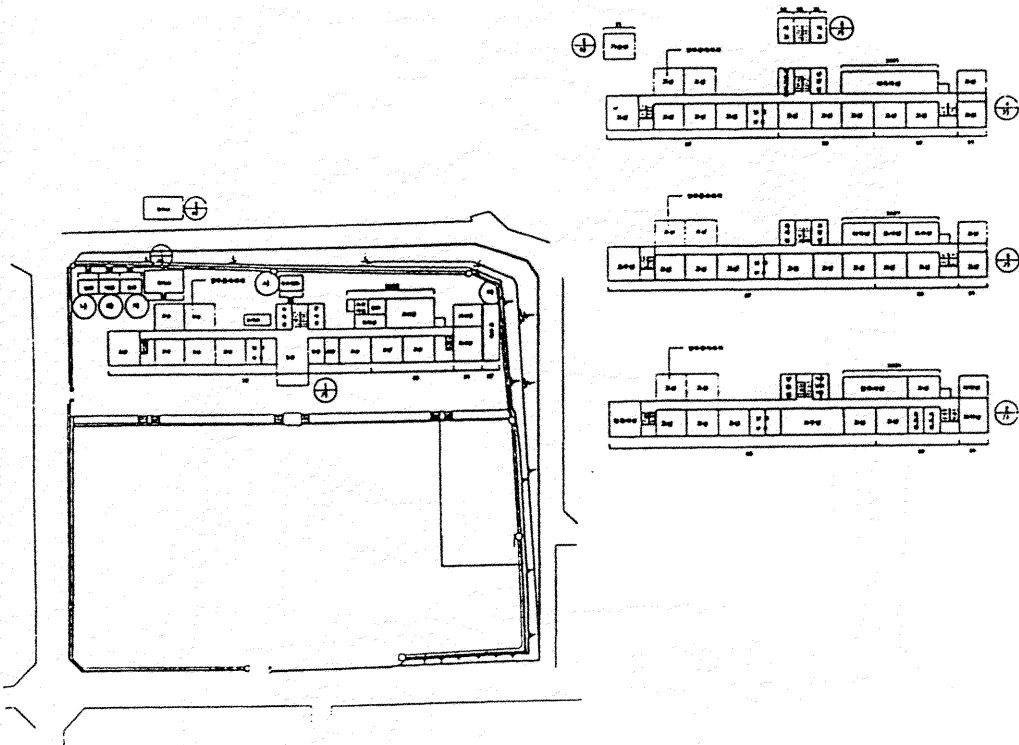
## ( 6 ) 청운중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다목적실	상당구 영운동	73-48	철콘슬	702	300,000	교육환경개선
교실			철콘슬	270	215,054	수용시설확충
화장실			철콘슬	60	89,800	
연결복도			철콘	54	37,800	
합계						1,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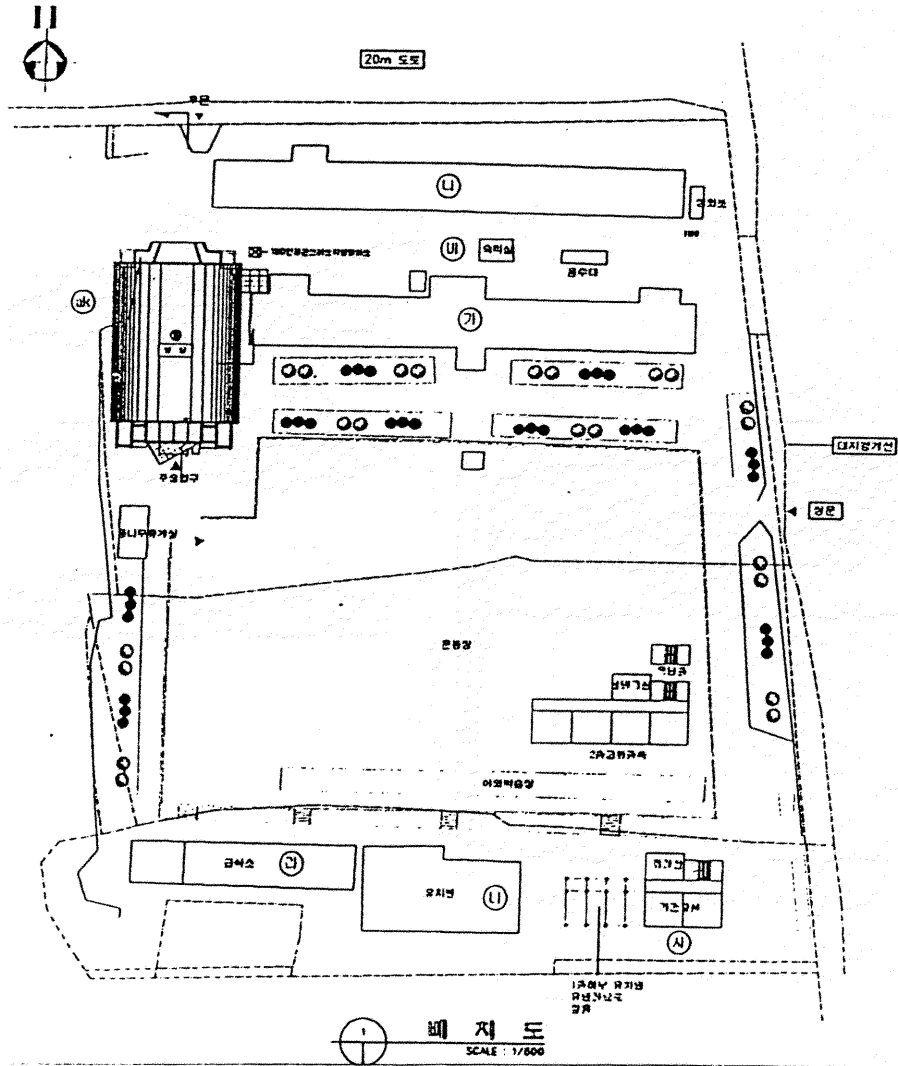
## ( 7 ) 봉명중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조	수 량 (㎡)	추정가액 (천원)	사 유
교실	흥덕구 봉명2동	1305	철콘슬	630	520,837	7차교육과정 수용시설확충



# ( 8 ) 남산초 건물 취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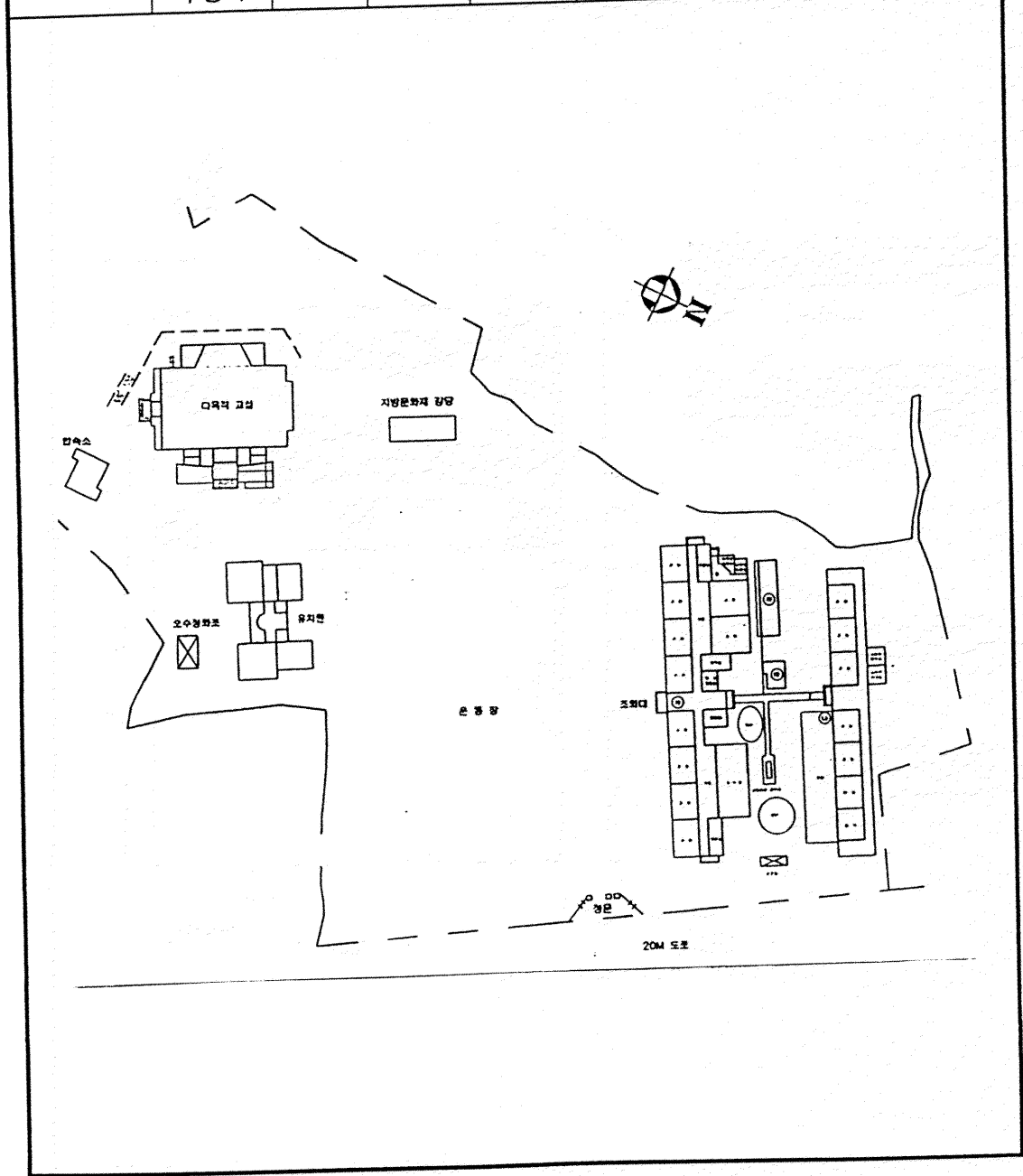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교실	충주시 용산동	2109	철콘슬	367.2	286,910	7차교육과정 교실 확충
계단실			철콘슬	137.7	93,600	
직원화장실			철콘슬	45	89,800	
물탱크실			철콘슬	45.9	38,700	
합계				595.8	509,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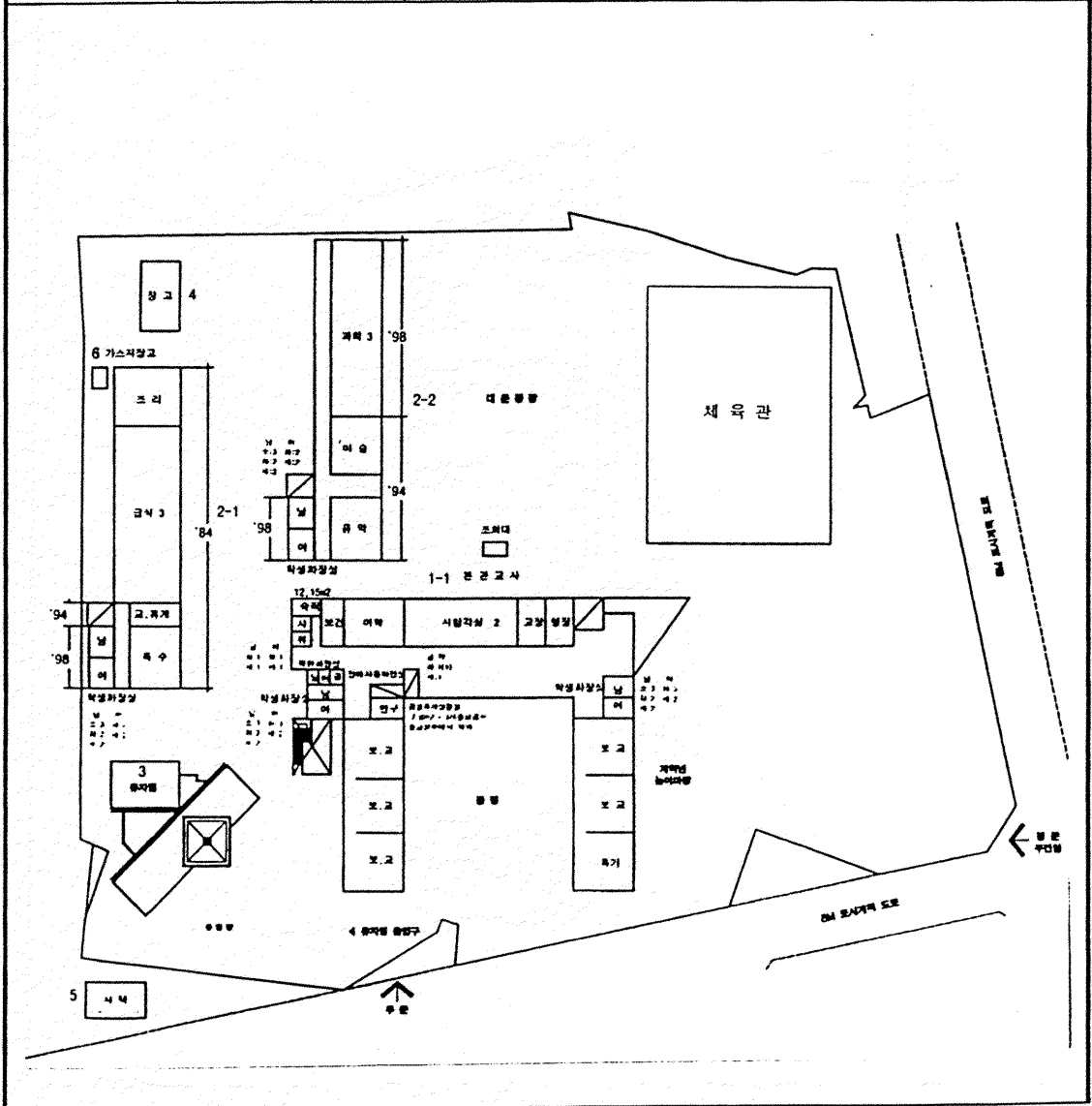
# ( 10 ) 부강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수 량 (㎡)	추 정 가 액 (천 원)	사 유
다 목 적 실	부 용 면 부 강 리	432-2	철 콘 철 골	850	668,265	교 육 환 경 개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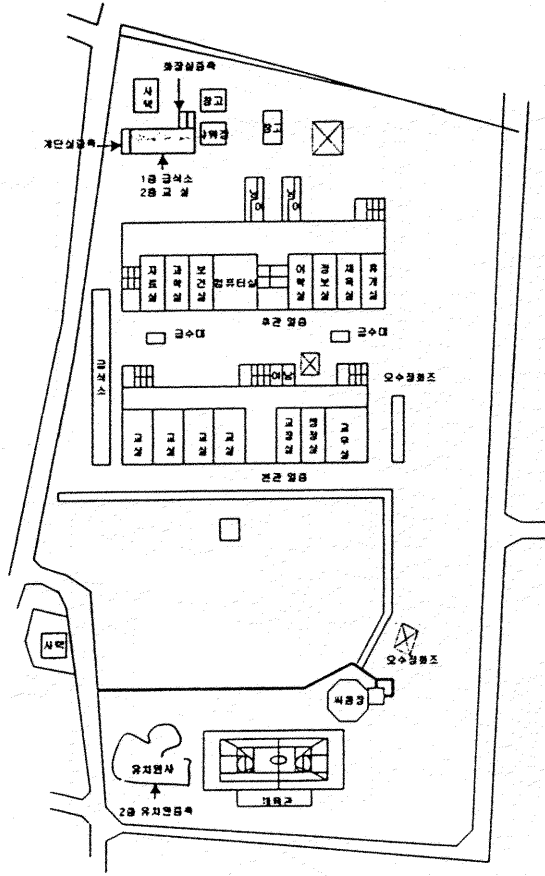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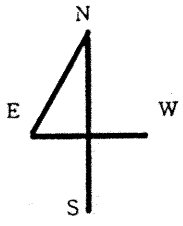
## ( 11 ) 이월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번	구조	수 량 (㎡)	추정가액 (천원)	사 유
체육관	이월면 승림리	667	철콘슬	714	591,000	교육환경개선 2002년5회변경계획 714㎡, 591,000천원
				300	300,000	
합계				1,014	891,000	



## ( 12 ) 대소초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가액 (천원)	사유
유치원교실	대소면 오산리	186-1	철콘슬	386	589,777	수용시설 확충
교실			철콘슬	360	310,800	
계단실			철콘슬	135	93,600	
화장실			철콘슬	60	89,800	교육환경개선
급식소			철콘슬	360	290,565	
합계				1,301	1,374,542	









(별첨 6)

의안번호	제 152-5 호
의 결 연 월 일	2003년 월 일 (제 회)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03년 4 월 14 일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52-5
----------	-------

제출년월일 : 2003. 0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746억 2,164만 7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969억 9,218만원이 증액된 1조 716억 1,382만 7천원으로 편성한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511억 2,422만 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 66억 3,800만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92억  
2,995만 2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526억 6,836만 4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16억 9,364만  
2천원, 급여·복지 306억 5,012만 8천원, 교육행정 82억 9,596만 6천원,  
기타경비 36억 8,408만원을 계상 하였음.

예산안 : 별 책

사항별 설명서 : 별 책

(별첨 7)

(제152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3. 4.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4월 22일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4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반창남)

#### 가.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5절, 제20조제1항)
-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의 학생수련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  
(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호)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에서 실시 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 이관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련시설 일부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를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218-1번지에 둔다.”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4월 25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련시설의 일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를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218-1번지에 둔다.”로 함.(안 제20조제2항)

### 3. 수정안 : 따로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안 제20조제2항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를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218-1번지에 둔다.”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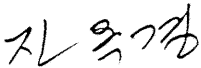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0조(설치) ①(생략)</p> <p>② . . . . .</p> <p>. . . . .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p>	<p>제20조(설치) ①(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 . . .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는 충청남도 보령시 신흥동 2218-1 번지에 둔다.</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4.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별첨 8)

(제152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3. 4.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4월 22일 제152회 일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3년 4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교육국장 반창남)

가.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후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 학생야영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 (안 제6장).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충청남도 보령시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야영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누락된 일부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4월 25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 1. 제안이유

조례안 제출시 누락된 조항을 삽입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및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를 삽입함. (안 제35조)

## 3. 수정안 : 따로 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안 제35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및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를 삽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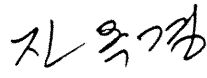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p>제35조(이용자의 책임) <u>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및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u></p>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4. 2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고규강	
간사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별첨 9)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03. 4.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3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3년 4월 22일)

○ 제2차 소위원회(2003년 4월 23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74,621,647천원에서 세입·세출예산 각각 96,992,180천 원이 증액된 1,071,613,827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51,124,22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6,638,000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9,229,952천원을 증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52,668,364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1,693,642천원, 급여·복지 30,650,128천원, 교육행정 8,295,966천원, 기타경비로 3,684,080천원을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974,621,647천원보다 96,992,180천원이 증가한 1,071,613,827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071,613,827	974,621,647	96,992,180	9.9%증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51,124,228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6,638,000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9,229,95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477,792 53.1
	지방교육양여금	△535,809 △0.6
	국고지원금	182,245 0.2
	소 계	51,124,228 52.7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	6,638,000 6.9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725,753 0.7
	입학금 및 수업료	621,210 0.6
	잡수입	60,484 0.1
	이월금	37,822,505 39.0
	소 계	39,229,952 40.4
합 계	96,992,180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52,668,364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1,693,642천원, 급여·복지 30,650,128천원, 교육행정 8,295,966천원, 기타경비로 3,684,08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학교교육	유치원	2,541,327	2.6
	초등학교	20,007,969	20.6
	중 학교	12,044,514	12.4
	고등학교	16,540,464	17.1
	특수학교	1,534,090	1.6
	소 계	52,668,364	54.3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1,693,642	1.7
급여·복지	급 여	32,487,013	33.5
	복지·후생	△1,836,885	△1.9
	소 계	30,650,128	31.6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17,200	0.0
	교 육 청	2,247,445	2.3
	지역교육청	3,763,976	3.9
	교육지원기관	2,267,345	2.4
	소 계	8,295,966	8.6
기타경비	예 비 비	3,684,080	3.8
합 계		96,992,180	100.0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학교신설 2,057,000천원
  - 신설학교 토목공사비 400,000천원
  - 신설학교 교재교구 지원 1,657,000천원
- 수용시설 확충 6,695,687천원
  - 초·중학교 수용시설 2,375,558천원
  - 제7차 교육과정시설 2,286,509천원
  - 유치원 수용시설 2,033,620천원
- 교육환경 개선 23,980,876천원
  - 교육환경 개선 19,835,676천원
  - 다목적실및합숙소 2,766,360천원



· 체육시설및사택보수 등	1,378,840천원
○ 교육문화회관 건립	644,700천원
· 타당성조사	50,000천원
· 설계비	594,700천원
○ 기타시설	13,844,443천원
· 다목적교실 신축	1,755,000천원
· 도서관신축	1,380,000천원
· 직업보도실	740,000천원
· 전국체육대회시설	6,4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대응투자	600,000천원
· 기타시설	2,969,443천원
○ 교육정보화 사업	1,240,402천원
·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327,000천원
· 전산보조원 임용	59,878천원
· 컴퓨터 보급	469,000천원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31,324천원
· 교단선진화	53,200천원
·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100,000천원
○ 교육활동 지원	1,003,367천원
· 수준별 성취도평가 프로그램 개발	29,000천원
· 교육과정관련 집중연수	13,660천원
· 선택중심과정지원 전산시스템개발	48,000천원
· 교육과정 자료개발	403,440천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	11,000천원
· 학력신장	53,265천원
· 학생 흡연 예방 교육	120,000천원
· 교원연수	153,705천원
· 고교생 진로지도설명회	21,380천원
· 원어민보조교사	78,495천원
· 학생성교육	51,422천원
· 청풍명월 청소년 한마음축제	20,000천원
○ 학교도서관 활성화	310,020천원
· 사서보조원	279,360천원
· 도서관 리모델링	10,660천원
· 독서교육자료개발	20,000천원
○ 유아·특수교육 진흥	188,420천원
· 종일반운영 확대	53,160천원
· 사립유치원교구 지원	95,200천원

· 탁아방 운영	14,980천원
·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25,080천원
○ 과학·실업교육 지원	3,567,120천원
· 과학교육 진흥	2,978,980천원
· 실업계고 컴퓨터 교체	555,800천원
· 직업교육확충	32,340천원
○ 학교급식 지원	1,872,637천원
· 급식시설	1,830,745천원
· 급식운영	41,892천원
○ 학교보건 관리	35,854천원
· 학생신체검사 시범실시	32,959천원
· 금연교육VTR테이프 보급	2,895천원
○ 학교체육 진흥	11,000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5,000천원
· 학교체육활동 지원	6,000천원
○ 지역인적자원개발	66,200천원
· 지역인적자원개발	66,200천원
○ 각급학교 운영비 지원	372,122천원
· 학교운영비	64,969천원
· 중설학급 내부 비품	240,000천원
· 학교 통·폐합 지원	67,153천원
○ 평생교육 지원	1,452,100천원
· 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 설치	1,324,000천원
· 평생학습관 운영	128,100천원
○ 교원 사기진작 및 교원단체지원	304,200천원
· 교원단체활동 지원	204,200천원
· 교원안전망구축	100,000천원
○ 학생종합야영장 운영 확대	573,207천원
· 대천 임해수련부 운영	573,207천원
○ 인건비	30,650,128천원
· 교직원 인건비	30,650,128천원
○ 기타	447,462천원
· 충북교육사료관설치	33,674천원
· 고입·고졸검정고시	7,726천원
· 중등교원임용시험	25,812천원
· 일반직연수	16,600천원
· 교육정책연구개발	80,000천원
· 문달은학교 역사찾기	283,650천원

나. 삭감내역

□ 삭감액 : 682,500,000

□ 삭감내역 및 사유

- 교원단체활동 운영 87,800천원  
교원단체활동 운영비로 204,2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한교조는 충북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교원단체로써 한교조 관련 사업비 87,800천원 전액을 감액하였음.
-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 594,700천원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로 594,7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설계비 전액을 감액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과 2002년도 결산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과학교육진흥, 교육정보화사업 지속적 추진, 학교교육활동 지원, 평생교육 지원, 교육공무원 증원 인건비 및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이월 추정액을 적정히 판단, 당초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시설비 등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예산 배분에 있어 가능한 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학교급식, 합숙소 시설난방·조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4. 25.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회장

나. 수정이유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교원단체중 충북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한교조 사업비와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를 감액 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운영(항), 중등교육관리(세항)
  - 한교조 사무실 임차수수료 4,800천원을 감액함.
  -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80,000천원을 감액함.
  -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9,000천원중 3,000천원을 감액함.
- 교육청(장), 교육지원기관(관), 지원기관시설(항), 지원기관시설(세항)
  -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 594,700천원을 감액함.
- 예비비 13,406,515천원을 14,089,015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4월 25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 1. 제안이유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교원단체중 충북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한교조 사업비와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를 감액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교육행정(장), 교육청(관), 교육청운영(항), 중등교육관리(세항)

- 한교조 사무실 임차수수료 4,800천원을 감액함.
-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80,000천원을 감액함.
- 교원단체 교육활동 행사지원 9,000천원중 3,000천원을 감액함.

나. 교육행정(장), 교육지원기관(관), 지원기관시설(항), 지원기관시설(세항)

- 교육문화회관 건립 설계비 594,700천원을 감액함.

### 3. 수정안 : 따로 붙임.

###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장)교육행정 관)교육청 향)교육청운영 세향)중등교육관리

한교조 사무실 임차수수료 4,800천원과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80,000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9,000천원중 3,000천원을 감액한다.

### 장)교육청 관)교육지원기관 향)지원기관시설 세향)지원기관시설

교육문화회관건립 설계비 594,700천원 전액을 감액함.

###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향)예비비 세향)예비비

예비비 13,406,515천원을 682,500천원 증액한 14,089,015천원으로 함.

##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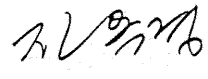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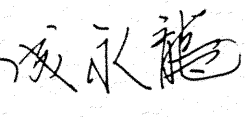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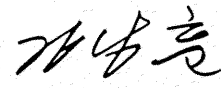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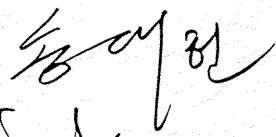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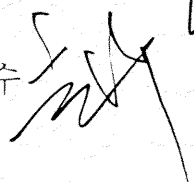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과 목				교육감제출 예산액	교육위원회 의결		예산액	수 정 내 용
장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4. 교육행정				30,600,212	87,800		30,512,412	
3. 교육청				11,333,409	87,800		11,245,609	
1. 교육청 운영				11,167,409	87,800		11,079,609	
22. 중등교육 관리				505,327	87,800		417,527	○ p68~69 -한교조 사무실 임차수수료   △4,800 (4,800 → 0) -한교조 사무실 임차료       △80,000 (80,000 → 0) -교원단체교육활동행사지원   △3,000 (9,000 → 6,000)
5. 교육지원기관				10,734,482	594,700		10,139,782	
2. 지원기관시설				6,309,656	594,700		5,714,956	
01. 지원기관 시설				6,309,656	594,700		5,714,956	○ p152 설계비                               △594,700 (594,700 → 0)
5. 기타경비				25,465,453		682,500	26,147,953	
3. 예비비				13,406,515		682,500	14,089,015	
1. 예비비				13,406,515		682,500	14,089,015	
01. 예비비				13,406,515		682,500	14,089,015	○ p131 예비비                               682,500 (13,406,515 → 14,089,015)
합 계				1,071,613,827	682,500	682,500	1,071,613,827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3. 4. 25.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진옥경 
간사	성영용 
위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별첨 10)

의안번호	제 152- 6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4. . (제152회)

## 교육기관 방문의 건

제 출 자	이상일 의장외 6명
제출년월일	2003. 4. 23.

# 교육기관 방문의 건

의안  
번호 제152-6호

제의년월일 : 2003. 4. 23.

제 의 자 : 이상일 의장의 6명

## 1. 주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합숙소·기숙사 및 급식소 운영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미원공업고등학교 등 11교에 대하여 2003. 5. 2.부터 5. 3.까지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 2. 제의사유

- 2003. 3. 26.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축구꿈나무 중 9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중경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나, 4. 8.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실습실 및 4. 18. 금천고등학교 정독실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 교육현장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하절기를 앞두고 급식학교에서 학생들의 식중독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바,
- 학생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위험한 학교교육 및 급식환경을 조기·확인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3. 제의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6호

# 교육기관 방문 계획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 방문기간 : 2003. 5. 2.(금)~5. 3.(토)〈2일간〉
2. 방문위원 : 전위원
3. 방문기관 : 미원공고, 보은자영고, 옥천고, 영동중, 청주중, 금천고.  
충주고, 예성여고, 제천동중, 단양고, 음성고 (계11교)
4. 세부 방문 일정

조별	권역별	방문위원	방문일자	도착시간	대상기관	점점시설	비고
1조	1권역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5.2.(금)	10:00	미원공고	합숙소/급식소	교육위원회 출발 (09:30)
				11:30	보은자영고	기숙사/급식소	
				14:30	옥천고	합숙소/기숙사/ 급식소	
				16:00	영동중	합숙소/급식소	
			5.3.(토)	10:00	청주중	합숙소/급식소	
				11:00	금천고	합숙소/기숙사/ 급식소	
2조	2권역	의장 부의장 성영용	5.2.(금)	10:00	충주고	합숙소/기숙사/ 급식소	교육위원회 출발 (09:00)
				11:00	예성여고	합숙소/급식소	
				14:00	단양고	합숙소/급식소	
				15:30	제천동중	합숙소/급식소	
			5.3.(토)	11:00	음성고	합숙소/급식소	



(별첨 11)

의안번호	제 152- 7 호
의 결	2003. 4. 24.
년 월 일	(제152회)

### 결의문 채택의 건

-시·도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시·도 교육청 기구 및 정원 책정권 지방이양 촉구-

제 출 자 고규강 교육위원외 6명

제출년월일 2003. 4. 23.

# 결의문 채택의 건

-시·도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시·도 교육청 기구 및 정원 책정권 지방이양 촉구-

의안  
번호 제152-7호

발의년월일 : 2003. 4. 23.  
발 의 자 : 고규강 교육위원외6명

## 1. 주 문

○ 지방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시·도 교육청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토록 관계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 시·도 교육청의 국장 직급을 시·도와 동일직급으로 하며, 교육위원의 의사국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정한대로 배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2. 제안사유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가 출범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권한 이양이 미흡하고, 지방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 첫째,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침해되고, 심의·의결 과정은 교육위원회에서 2단계 / 시·도의회에서 3단계 심의로 업무처리 지연 등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의 중복적인 감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 학교에서의 수업결손 등 행·재정적 낭비가 심각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 둘째, 시·도교육청 조직·기구를 정부에서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 정원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탄력적인 인적관리가 어려우며,

○ 셋째, 시·도 교육청 국장 직급이 시·도보다 한직급 낮고, 우리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은 조례에 지방3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4급으로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완전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최종 의결기구로 독립시킬 것과 중앙정부의 기구 및 정원책정권 등에 대한 지방 이양을 촉구하고자, 1만 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3. 결의문(안) : 붙임과 같음 - 104 -

# 결 의 문

## -시·도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시·도 교육청 기구 및 정원책정권 지방이양 촉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가 출범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권한 이양이 미흡하고, 지방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로,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침해되며, 심의·의결 과정은 교육위원회에서 2단계 / 시·도의회에서 3단계 심의로 업무처리 지연 등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의 중복적인 감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 학교에서의 수업결손 등 행·재정적 낭비가 심각하여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시·도교육청 조직·기구를 정부에서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 정원을 승인토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탄력적인 인적관리가 어렵습니다.

셋째로, 시·도 교육청 국장 직급이 시·도보다 한직급 낮고, 우리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은 조례에 지방3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4급으로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민선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정립과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1. 시·도 교육청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토록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1. 시·도 교육청 국장 직급을 시·도와 동일직급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은 조례에 규정된 지방 3급으로 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4월 25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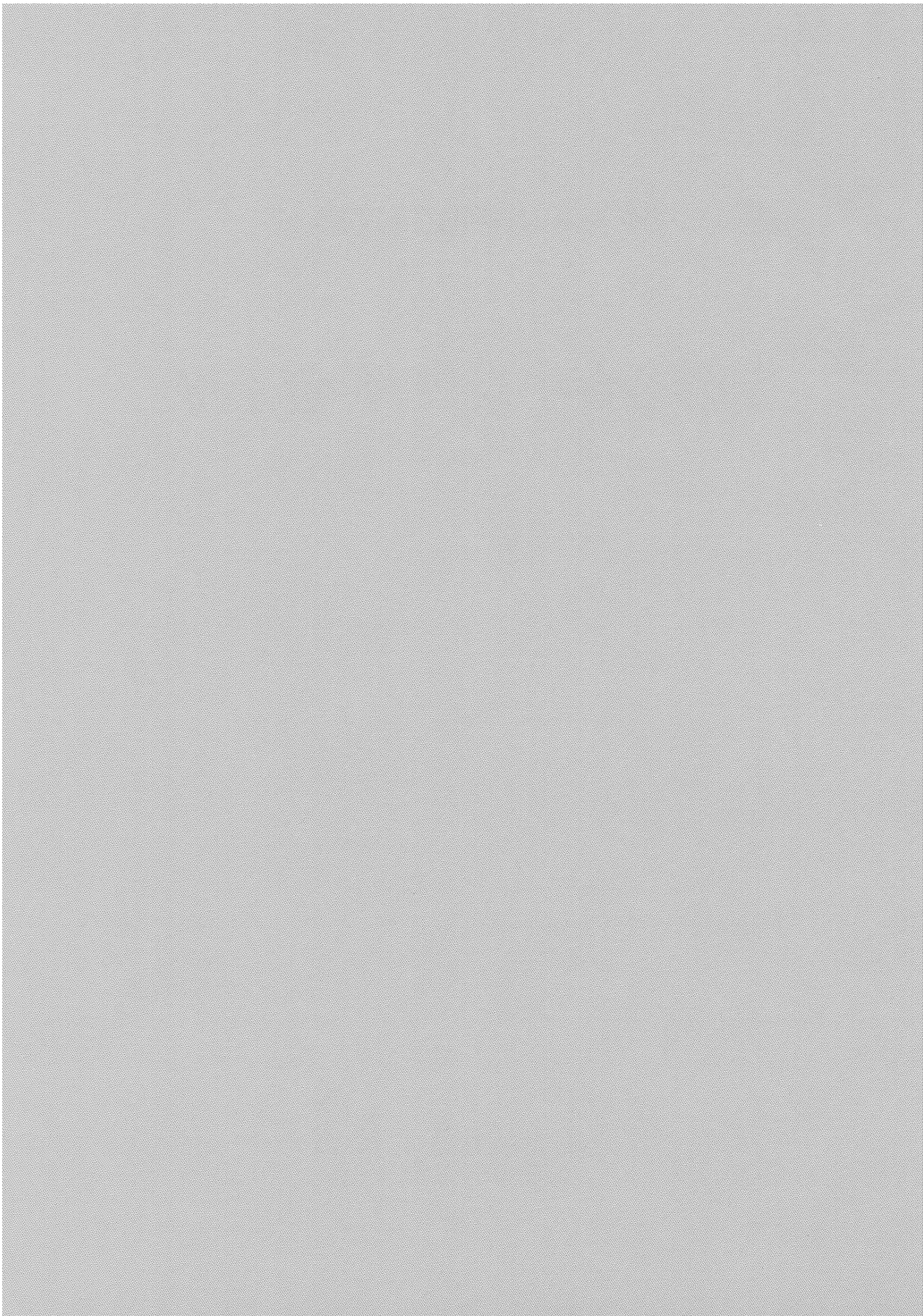


第15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11
- II. 부 록
  -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47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4월 22일 (화요일) 14시 43분

## 議事日程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시 43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견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영용 위원

고규강 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재청 있으십니까?

### ● 김남훈 위원

재청합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고규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규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위원장 고규강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간사선출의견

(14시 45분)

### ● 위원장 고규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영용 위원

김남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 간사 김남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간사의 수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46분)

● 위원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7분)

● 위원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하며,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수련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의 학생수련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학생종합야영장에 단재교육원의 업무가 야영장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조례나 각 기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재교육원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조례는 개정 안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같은 거.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이용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단재교육원의 이용대상도 조례에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신구문 대조해서 야영장에 관련한 제6장 야영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용대상도 있고한데요, 단재교육원의 학생 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에 종전에 어떤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을텐데 저는 그것들이 왜 이것만 올라 왔는지 의아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학생수련 업무만 진천으로 옮겨서 거기

서 학생수련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조례원안을 몰라서 그런건데 단재교육원의 이용대상에 관련한 조례는 없는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관이 됐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제 11조에 단재교육연수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단재의 열을 이어 받아 학생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면서 학생들이 수련하고,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육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학생수련원만 빼는 것으로 단재교육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야영장하고 2가지가 다 같이 동시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신구문 대비표라든지 이런거는 야영장에 관련한 것만 지금 올라왔거든요. 단재교육원에 관련한 수정부분들은.....

● 총무과장 김진성



거기 11조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 겁니다. 신구문 대조표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 의안으로 드린 거에 3페이지를 보시면 11조가 단재교육연수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진옥경 위원

11조요?

● 총무과장 김진성

예. 예.

밑줄 친 왼쪽에 밑줄친 부분이 있죠.

신구대비표 첫 번째란에 보시면 11조 신구문 대조표 맨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저한테는 없는데요.

● 총무과장 김진성

아 그러세요. 그럴리가 없는데.

● 진옥경 위원

아 11조요. 학생은 빼고 교육과학만 하는 것으로 설치.

● 총무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 다음에 13조의 업무에도 보시면 왼쪽에 밑줄 친 부분에 1항에 학생수련 및 교육공무원의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수련및 하는 것까지를 삭제할 하게 되고 공무원의 연수부터 단재연수원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결국은 단재교육연수원에 있는 업무를 야영장 쪽에다가 학생은 피어서 주고 또 임해수련원을 학생야영장 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부속시켜서 거기서 이름을 고치는 얘기인데, 지금은 물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진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양쪽 두 기관 것을 같이 넣어 갖고서 여기서 개정만 하면 되는 것보다 따로 따로 이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쪽 들어가고 한쪽 빠지고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묶어 갖고서 이렇게 단재교육원 조례에서는 빠져나가고 그 다음 저쪽의 야영장 쪽에는 다시 넣은 걸로 개정해 갖고 별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됩니까 평체과에서 같이 묶어 갖고서 한데에서 설명하고 빼고 넣고 이렇게 섞어 갖고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분리형으로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원상으로는 교원들 장학관이나 지금 서기관급 이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원을 획득하기가 첫째 어렵고, 두 번째는 단재교육원에서 사실상 지금 학생과 교직원을 종합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야영장이 과거에 다소 학생야영장으로써의 구실을 조금 미흡하게 했다가 이번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훈련원으로 완전히 학생교육과 공무원교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하자는 것이 중론이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고 또 여러 교장선생님들이나 또 여러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결과 학생과 선생님을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기구를 하나의 독립된 학생기구 하나의 독립된 공무원 연수기구 이렇게 이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행정기구에관한설치조례에 우리 교육감산하에 있는 직속기관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도 하나의 단일 조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속기관이라든가 이것이 단일조례 속에 전부 하나로 묶어져 있어 갖고 거기 들어가고 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이면 거기에 대한 조례 있고 야영장이면 야영장에 대한 조례가

있어 갖고 그렇게 된게 아니고 싹 섞여져 있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한 가지 조례로 되어 있어서 장을 달리 합니다.

장장마다 직속기관 순서대로 임무하고 조직하고 구성원이 큰 줄거리는 위원님들이 조례로 결정해 주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또 저희들이 다시.....

● 이기수 위원

양쪽으로 분리되어 갖고서 단재는 단재에 대한 조례가 있고 야영장은 야영장 조례가 있어 갖고 이게 들어감과 저쪽에서 빠지는 거와 그렇게 체계가 되어야 될텐데, 이걸 어떻게 싹 섞어 갖고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걸 모든 기관을 같이 한 개로의 조례 속에다 묶어 갖고서 무슨 비빔밥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내용에 지금 각 절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직속기관별로 조례를 하다보면 조례가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설치조례는 단일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별로는 장내지 절로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국장님 그걸 갖고 자꾸 논의하기보다는 있다가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섞여져 있는지 맞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바로 그건 드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종합야영장 속에 단재교육원의 학생연수도 그쪽으로 포함시키고 임해수련원도 업무가 그쪽에 포함되어 가면서 이름을 고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종합야영장의 여러 가지 직원정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원은 어떻습니까? 교육감이 총정원 속에서 적당히 배분하는 얘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한가지는 이게 한 기관으로 임해수련원이 한개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음으로 해 갖고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정원을 충원받는다는지 하면 우리 정원이 더 늘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 갖고 함축해 놓은 바람에 사실 본다면 종합야영장은 여기 뭘니까 문백에 있고 지금 임해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몇 분이 파견나가 있고 야영장장님께서 수시로 가갖고 거기 감독을 하러 왔다갔다해야

되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되다면 여기 문백에 있는 야영장보다도 저쪽의 임해수련원의 규모가 훨씬 방대하게 큰데 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관을 갖다가 붙여 놔 갖고서 업무를 같이 해 갖고 이름만 적당히 바꿔 놓는다고 한다든지 하면 과연 그걸 잘 지휘통솔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지 맞습니다.

왜 굳이 붙히려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해 갖고서 지역을 따로 분리해 갖고서 그쪽에 임해수련원 두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하고 양쪽의 거리가 멀은데서 야영장장님이 수련원장으로 된다면 과연 어떤 쪽에 근무하고 어떤 쪽에서 어떻게 지휘 감독한다는 얘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서부터 독립적으로 제대로 움직여야 우리가 임해수련원 조례를 만들어 갖고 맞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 어느데고 그렇게 다 붙여 났습니까? 봐 보세요. 처음서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되는데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임해수련원 처음 설립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5,6년 전으

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설치조례 문제를 아까 그걸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치조례가 충청북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과거에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과학교육원도 다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교육자치가 되면서 전부 본청까지 한데 묶였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관한법에 의해서 하부법으로 저희들 조례로 해서 본청에 각 국·과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문제라든지 직속기관문제를 다 조례로 하나로 통합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장과 절로 다 구분되어 있지 한데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칙으로 앞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적용할 규정은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본청 3장에 직속기관해서 직속기관 1절에 예를 든다면 과학연구원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단재교육원 이렇게 학생야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전체를 보시면 내용을 아실거구요.

이번에 서해수련원문제는 애초에 설립전에 저희들이 각종 예산조치를 하고 할 때부터 기구신설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원이 총정원으로 묶여있기 때

문에 교육위원회이나 도의회에서 누차 논의될 때마다 진천야영장에 부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관신설이 역제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부설로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진천야영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부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향후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단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학생수련과 교원, 일반직원 연수가 되어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련을 붙인다면 거기다 붙이거나 야영장에 붙이거나 둘중에 한군데에 붙여야 되는데, 단재같은 경우에 교원이나 일반직원 연수업무에만 전담하는 것이 옳고 진천야영장 쪽으로 간다면은 거기는 야영도 수련이거든요. 수련이라는 것이 야영수련도 있고 교실에서 분임토의니 그런 수련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련활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련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야영장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쪽으로 말하자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약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부기구를 운영부를 2군대를 두어서 진천야영의 운영부 또 임해수련의 운영부 운영부를 2개 두어서 각 운영부에서 책임지고 이쪽에 야영 저쪽에 임해수련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고, 총무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진천에 두어서 그 부분은 지원체제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영선이라든지 또 물건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총무에서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체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양쪽 운영부 책임을 지고 운영부장급들이 책임지고 운영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쪽 학생연수 문제에서 단재쪽에 소요됐던 인력 그거는 그럼 야영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겁니까? 그건.

● 총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야영장측에서의 일부 인원도 물론이고 또 단재에서 학생수련을 맡고 있던 인력도 그쪽으로 같이 감을 시켜 갖고 단재에서 감을 시켜서 그쪽 학생수련원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기관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독립기관으로 인정안하고 어디에 부속하게끔 하는 건 교육부 자체에서 그건 통제를 하는 겁니까? 그건 어디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교육부 쪽에서는 기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구를 두는 것은 교육위원님들과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정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차에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정원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사례들이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적합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통합한 기관장 속에서 같이 통솔해야만 가장 적합한데 저희들이 정원에 묶이다 보니 차선책으로 이걸 택했고, 지금 서

울시교육청을 비롯해서 몇 개의 교육청들이 저희들과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분원으로 설치 운영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대학들 같은 경우도 캠퍼스들이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2캠퍼스가 있는데도 같은 총장 밑에 둘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기수 위원

대학은 각 캠퍼스가 있어 가지고 부총장제로 해 갖고 운영하는데, 여기도 사실 따진다면 교육감 산하에서 두개 기관이 독립이니까 거기서 독립기관으로써 책임을 맡아 갖고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앞으로 저렇게 통합을 해 놓는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운영이나 또 지역적으로 참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키워나가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건 처음에서 시작할 때부터 분리해 갖고서 저쪽은 한 개 책임자로서 맡겨 갖고서 특성있게 운영해 갖고 자꾸 육성해 나가야 되는 애기지, 양쪽 기관을 합치고 이것저것 뭉쳐 갖고서 과다하게 해 놓는다든지 하면 그것도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해수련원이 우리 도는

지금서 건립됐지만은 지금 서울이나 충남이든지 전부 도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대천에도 벌써 우리보다 먼저 설립해 갖고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쪽에도 그게 그렇게 야영장하고 합쳐서 그런 식으로 안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최근에 야영장을 설립한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최근에 생긴 3개는 전부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따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같이 당위성은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 정원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수고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직속기관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직속기관을 방문을 해서 우선 단재교육원 쪽에도 학생교육시설이 너무나 빈약하고 그 거 가지고는 도저히 학생의 수련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일치를 보았고 빠른시일내에 타 시·도도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학생들의 가치관 교육이나 지도성 배양이나 학생들이 정신적인 요람으로써 학생교육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허용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구요. 타 시·도를 보니까 많이 우리보다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또 진천에 있는 학생야영장을 방문했을 적에 공통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해서 집행청에도 통보가 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시설을 해 놓고 한계절만 여름한철이죠. 활용하고 대부분이 그 시설을 놀리는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이 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타 시·도의 해양수련원 같은 곳 가보고서 우리도 되니까 우리 임해수련이 독립기관이 안된다면 진천에 있는 야영장에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은 위원들이요.

그런데 다만 새로운 것이 갑자기 탁 튀어난 것이 뭐냐하면은 기본적인 단설기관으로 안된다면 진천의 학생야영장에 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압니다. 그 부분 많이 생각했는데 단재교육원의 학생연수가 학생종합야

영장에 합침에 따라서 업무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갑자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집행청에서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들 교육위원들한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기구를 이렇게 조정하는데 지금 여론조사 해 봤더니 큰 문제는 없다고 아까 보고는 뒀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아까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도 금년에 거기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저쪽으로 이관되어서 차질없이 학생들은 한번 밖에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연수될 것이 이런 제반절차들을 하나없이 올해 조례개정이라고 해서 통합되어 있는 앞에 조례만 문구 몇 조 13조, 11조 몇 개만 내놓고서 위원님 방망이 쳐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기수 위원님도 모르니까 이게 규칙에 묶여 있는 것인지 하부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난상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했다면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 옮겼는데 문제점은 뭐다 그냥 우리가 집행청에서 단독으로 기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학부형 의견도 들어볼 테고 심의할 사항도 있었겠고 국·과장회의에서도 논의

했겠고 하여튼 문제점은 뭐가 되고 앞으로 하부규칙에 뭐 장·절이 됐던 간에 이렇게 고칠 것이고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변동할 생각이고 교육은 이렇게 할 것이고 예산은 이렇게 이관하고 인력은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 줄쯤이라도 한 장쯤이라도 우리 교육위원한테 주고 했더라면 오늘 생소하게 이런 논의가 안 될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11조, 13조, 20조 요 3개만 내놓고 이것을 ‘위원님들 결정해주쇼, 그래 조례 고쳐야 되겠습니다. 단재에 있던 학생의 연수를 저리로 뚝 피어서 종합야영장에다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난감한 거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월가월부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왜 사전에 충분하게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간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경과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사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원래 행정기구에 관

한 거는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업무는 평생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재에 관한 설명을 사전에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전 굉장히 환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단재가 지금 이원 조직으로 학생수련하고 교원연수를 맡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학생수련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 간부 학생수련으로 해서 간부학생들을 불러다가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어주기 위한 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이래서 1년내 거기서 연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단재교육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대입에 거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목적은 애들 수련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연구사님들이 지금 학생수련부가 구조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연구사 한 분하고 파견교사 한 분하고 몇 분이 맞고 있어요. 그 전체 업무를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1주일간인



가요, 내내 2박 3일인가를 쪽 들어오면서 연구사님들이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계속 추운 방에서 애들하고 같이 자야 되요.

그러니까 여자연구사님을 포함해서 다 거기서 자면서 애들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조직에 의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이 이쪽으로 나온다고 그럴 때 저희들은 교육위원들께서 대환영하시고 잘됐다고 칭찬해주실 줄만 알았지 이 부분 설명을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되고 거기에 수련을 담당할 부가 없어지고 몇 분의 연구사님들하고 몇 분 선생님들만 이쪽으로 넘어 오시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쪽에서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교원연수나 일반직 연수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생수련원을 이리로 이관하면 아마 원활하게 연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송대현 위원

예. 대환영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환영합니다.

제가 과거에 단재교육원장을 해봐서 그 실정을 잘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잘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에 하나 그 후속에 대한 문제도 걱정을 해야지 큰 것만 생각하고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도 단재교육원의 김전원 원장하고 전화를 통화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을 적에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것도 여쭙봤고, 또 그 건물이 지금 나와 있는 그 건물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외지에서 연수온 사람들 숙소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원어민에 좀 수리를 해 가지고 숙소로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영어마을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현재 그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아주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알면 좋거든요. 이거 뭐 내가 물어 봐야 단재원장한테 제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같이 절름발이식인 학생교육의 원성은 있으나마나 었구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어서 새로 넘어간다면 요번 기회에 사실은 다른 시·도에는 독립기관으로 있거든요. 학생교육연수원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도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영장에 합쳐가지고 둘을 더부살이 시키는데 좀 집행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것은 과감한 투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한 투자하고, 좋은 시설에서 학생교육도 제대로 되고 임해수련원에 늘 말씀만 하시면 우리 바다가 없는

도 바다를 아이들한테 구경시켜야 된다고 설립할 적마다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살리고 또 거기가 진천에 있는 아까 지적한 것처럼 한 계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4계절 애들도 거기서 먹고 임해수련원만 가서 학생들만 교육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천에도 와 가지고 강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4계절 따뜻한데서 겨울에는 연수도 받고 4계절 할 수 있는 정말로 학생교육원에 대체할 수 있는 돈도 투자하고 시설도 투자하고 해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뭐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기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한쪽을 떼어 간다고는 하고 떼어가서 그 뒤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위원장 고규강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 간사 김남훈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앞에서 세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설치나 업무, 그 다음에 장장의 임무같은 분야는 나왔는데 저는 운영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번에 부산 등지나 또는 경북 등지 또는 지난해 전남방면 이런데 가서 타 시·도의 수련기관에 대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학생야영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천에 있는 문백야영장을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서해수련원이 설립됨으로 해서 이 부분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가 기대를 해서 더군다나 단재에서 교원과 학생이 같이 하던 분야를 갖다가 학생부문을 서해수련원으로 떼어 온다는 거는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 예를 들면은 그 수련원쪽에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도 이렇게 상대를 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랄까 이런 것도 거출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도 학생만을 상대로 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타 여가가 있는 시간에는 일반인들도 상대로 해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할까 대여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했어요.

만약에 일반인을 대여를 해 준다고 하면은 하루사용료가 얼마나 하는 것도 조례부분에 속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면에서 대해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진옥경 위원님이나 이기수 위원님 또 특히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례를 올리면서 조례를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기획과 기획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분석한 것을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촉구시켰어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못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례개정 이전에 보고를 못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용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연간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일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까지 그 과정도 상당히 담당자들이 고심을 해서 계획이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

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서해임해수련원에 대한 운영은 지금 단재교육원에서 금년 7월말까지는 고등학교 간부학도 수련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2박3일 과정의 중학교 200명씩 10개 과정이 있는데 그 예산하고 수련인원을 서해임해수련원 가지고 가서 2학기 동안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왕복교통비 그러니까 단재에서는 200명 수행인데 여기는 400명입니다. 그래서 버스임차료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2차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간부학도수련을 서해임해수련원에서 모두 책임을 진다, 그런 다음에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인에 대해서 교원에 대해서는 40실 분의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도를 이용해서 평소에 도 할 수 있고 휴가철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총정원제 묶여 있기 때문에 수련지도사를 우리가 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요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수련원은 서해임해수련은 운영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조직을 갖추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임해수련원의 부장은 연구관 그 다음에 연구사 한 6명 그 다음에 수련지도사 그 다음에 나머지 내부적으로 인원을 다시 재조정해서 전체는 35명 선으로 규모를 직원조직을 갖춰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름방학 동안은 청소년단체를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만명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한 2만 5,000명을 서해임해수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남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콘도식 객실에다가 충청북도교육청소속직원들은 수용할 적에는 지금 현재 계획에 100% 무료로 대여 해줍니까? 그럴 계획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용수수료 관계는 조례가 조금 틀립니다마는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33조에 그게 관련됩니다.

그래서 야영장 수수료는 지금 저희들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전액 무료가 아니고 다만 거기에 관련된 이불의 세탁료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금 징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중복가족이 아닌 교육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더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감안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남훈**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소속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대여를 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속에 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차기에 요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안에 보시면 신구문대조표 33조를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4페이지입니다. 4쪽에 보시면 신구문대조표에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셔야 되요. 2호의안 충청

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2호의안 4페이지입니다. 맨 뒤에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33조2항 왼쪽 것을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장장이 정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장이 되겠죠. 원  
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 약 한 26명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거기서 먹는 식비라든지 세탁비라든지 이  
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 그것을 산정해서  
그것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서 실비를  
징수해서 충당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  
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김남훈**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기수 위원**

지금 요 사안하고는 조금 별개여서 질  
의하다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  
치조례 이렇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국이다 국의 설치 이런 모든  
조직에 대한 거를 얘기가 규정했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중앙도서관서부터 모든 직속기관들이 3조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개  
괄적인 뼈대만 이렇게 집어넣어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조례라든가 뭐 이  
런 걸 이쪽에 맞추는 건 못하겠지만 대개  
대학같은데에 조례연구소 같은데 조례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규칙으로 뼈대만 해서 해놓고서 하는 이  
유는 뭔가 조례를 간편하게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너무 정말 간결하게 이렇게 하  
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하느니 보다는 이  
걸 상세하게 모든 기관에 대한 뭘니까 조  
직운영 모든 분야를 구체화 할 이럴 의향  
은 없습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내가 이  
걸 보고서 느낀 얘기인데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조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  
냐의 문제는 법 표현의 기술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큰 덩어리를  
정해진 속에서 나머지를 기관장한테 위임  
을 해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세부  
적인 사항까지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 조례체계상 도청이나  
타 기관의 형편에 맞추거나 이런 여러 가  
지 법 표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이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내용에는 대강과 아웃라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과에 뭐를 분담한다 이런 거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좀더 폭넓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진옥경 위원**

이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연초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기관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그런 예정이 있을 텐데, 지금 단재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은 학생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의문인 것이 사업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은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것이 당연히 다 옮겨가는 것인지 또한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단재교육원은 그러면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관이 되고 업무가 기관이 되고 빠지면 그냥 그뿐인가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내가 미흡하고 지금 입법예고가 있다고 하셨는

데 한 아흐레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이리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야 이 의제기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을 전혀 알 수가 없게끔 지금 안내도 분명히 되어 있을테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참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해수련원이 중간에 생기면서 학생야영장과 업무를 이제 통괄하게 되면서 또 그것이 학생업무가 단재교육원에서 빠지게 되고 이런 큰 변동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연초에 다 계획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집행순서가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이것이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나는 기관이 설립되거나 기구가 축소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기관을 해서 예산을 그 부서로 보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안되고

다만 아까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좀더 세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새삼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올 때 저희들도 미리 검토를 해보고 오게 해 주세요.

여기서 그 많은 내용들을 질의를 일일이 질의할 수도 없으려니와 자료도 불충분하고 미리 볼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대안 마련을 하던지 이것의 가부를 미리 생각해 오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을 느낀건데 자세한 자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야영장과 학생수련원 이런데에 대한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안드렸기 때문에 상세히 몰라 가지고 질문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이나 이럴 적에는 조례를 전면 완전한 문구 전체를 드려야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조2항에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이거는 서해수련원을 두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했습니까? 20조2항.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맞죠. 그러면 이거를 조례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법 10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34조 규정을 보면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규정이 뭐냐 설치목적 아까 진옥경 위원님이 이거 하시다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설치목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설치장소, 설치명칭, 업무명 이것은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근데 그것이 빠졌으니까 상세하게 그 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이거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구조문 대조표는 조례가 아니고 교육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걸 이걸 참고자료지 조례가 아니에요. 조례개정 내용이 아니라고 위에 있는 문항이 조례개정 내용이거든요. 위에

있는 문항이 그러니까 그 조례규정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주소는 기관이 예를 들어서 진천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 문백면 은탄리 산3번지에 둔다 그렇게 해놓고, 별도의 건물이 있는 예를 들어서 분원이 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탄리 산3번지 및 이렇게 하려다가 별도로 분원은 규칙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거 명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그거는 교육법, 지자체법하고 교육법에 규정을 뭐뭐 하라고 완전히 규정을 지어 냈기 때문에 그건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규칙으로 안되는 거예요. 왜 규정으로 정해졌으니까 법으로 정해준 것만은 조례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22조 이렇게 보면은 신규대조표에 보면은 25조의 야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렇게 됐는데, 2호를 보면 제가 여기 아직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전부 떠들어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를 보고 규칙을 봤어요. 보니까 2호를 보면은 25조

에 청소년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야영을 고쳐야겠죠. 그죠. 수련원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신규대조 면에는 그것도 안나왔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례안 개정이니까 개정을 안한다는 뜻이거든 여기에 안나오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기다 넣어주셔야 개정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규정을 조례를 만들고 규칙이나 규정은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규칙도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에 보면은 우리가 개정을 한다든가 어떤 걸 신설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적에 규칙도 뭐뭐 고친다는 게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 장장이나 수련원이나 그렇죠.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고치면 안돼요.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부칙을 넣어 가지고 공포하고 부칙에다가 뭐뭐가 고칠 거냐 규칙에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규칙에 제5조라든가 제16조, 제23조, 제26조 그런거 장장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수련원이나 원장으로 고쳐야 될 것



들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부칙에다가 거  
기다 제가 말씀드려 보면 시행일 이 조례  
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다른 규칙의 개정 그렇게 해 놓고 충청북  
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거 규칙이 잘못  
된 것 말씀드린 것 15조 뭐뭐 몇 조, 몇  
조 이것만 집어넣고 수련원원장으로 한다  
끝에 해주면 공포한 날과 동시에 규칙도  
규정도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넣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부칙을 넣지도 않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이나 규칙은 개정이 안되는 겁니다.  
신구대조표는 이걸 조례의 참고문헌이에  
요. 이거는 우리 교육위원들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야  
완전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  
면 답변해보세요. 고쳐야 되는 건가? 안  
고쳐야 되는 건가?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치관계는 명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안이 잡혀  
있던 건데 타도나 이런 예를 들어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조 업무에서 2항의 청소년단  
체 단원들이 야영과 수련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고규강

그것이 수련원으로 된단니까 수련과 연  
수를 한다든가 야영은 그냥 넣어두실 거  
면 상관없어요.

● 총무과장 김진성

뒤에 그대로 넣을 겁니다.

● 위원장 고규강

그러면 상관없어요.

● 총무과장 김진성

야영도 수련이고.....

● 위원장 고규강

그냥 두신다면 상관없고 규칙에 관한  
문제만.....

● 총무과장 김진성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  
는데 저희들이 그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어떠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 다른  
관련 조례에 어떠한 사항을 조정할 때는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칙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두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례상의 무슨무  
슨 용어는 뭘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  
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체계상 저희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규칙보다는 상위법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이나 아니면 하위의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라 하기는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는 벌써 시행이 되는데 규칙은 개정이 안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공포하는 날까지 집행청에서 규칙을 동시에 개정해서 같은 날 공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부칙에다 그것만 삽입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 조례안이 되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데 이제 같은 조례가 다른 조례들 같이 변경해줄 때는 되는데 조례가 아닌 규칙사항까지를 조례로 고친다는 게 법률상 안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거기서 뭐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련원으로 진천에 있는 야영장을 수련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규칙에 보면은 수련원하고 장장원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게 전부다가 다 고칠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부칙에다가 그것만 몇 호, 몇 호만 넣고

서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 건데 될 또 다시 하시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연구를 더 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다만 규칙은 저희들이 별도의 개정절차를 꼭 밟아야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뀌면서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돼서 통보가 되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규칙을 전부 좀 손을 봐야될 부분이기에 때문에, 이것이 이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경과조치로 해서 규칙을 손을 안될 그럴 요량이면 말씀하신 대로하면 좋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알아듣겠어요.

지금 규칙도 수련원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고칠게 지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고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빠르는데.

● 진옥경 위원

덧붙여 하나만 여쭙볼게요. 질의를 하자면 그 야영장의 위치가 문백면 은탄리 산4번지가 왜 3번지로 바뀌었나요?

● 교육국장 반창남

주변의 땅을 측량하고 하다 보니까 진천에서 번지수가 바뀌었는데요. 지번이 그래서 산4번지로 되었던 것이 3번지로 통합됐다 그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개정해 놓은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 간에 지번이 바뀐 것이군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지적이 여러개 있을 경우에 그걸 통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번지를 가장 낮은 숫자의 지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 때문에 토지를 합필하는 과정에서 3번지를 쓰도록 대표번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잠시 정회를 좀 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에 대하여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 위원장 고규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회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중 다만 수련시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수련시설의 일부를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2218-1번지에 둔다라고 한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10분)

● 위원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 이기석과장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임해수련시설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 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학생야영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형태로 지금 야영장과 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서 운영조례를 바꾸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야영장과 수련원의 각각의 기능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업무분할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야영장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 그걸 야영장이라고 그러고 지금 종합야영장은 수련원으로 저희가 바꾼거니까 앞으로 수련원으로 이제 하면 야영도 하고 지도력개발 훈련도 하고 심성수련도 하고 다양한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진천학생종합야영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진천종합야영장은 진천에 문백에 있는 야영장은 청소년야영 및 수련활동을 하고 임해수련원에 있는 수련원은 청소년지도력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게 임대했을 적에는 그 임대신청한 관계 부서의 운영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야영장에 거기서 자는 일은 천막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숙박 시설로 해결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지금 진천종합야영장에는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과의 예절교육 자료실로 지금 지도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활용을 안할 적에는 학생들이 일부 숙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는 고정천막을 해와 가지고 야외에서 잠을 자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절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도 가봤는데 거기 지금 가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약 한 150명입니다.

● 진옥경 위원

150명. 그러면 그 운영을 예절관에서도 자고 또 한편에서 천막을 치고도 자고 이렇게 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에서 기본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하루정도는 천막에서 자고 하루는 숙박동에서 좀 자야되겠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요청이 되어서 가져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

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서해수련원이 임원연수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중학교의 간부학생 수련을 기본프로그램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중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간부학생들이.....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연중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숙박동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연중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지금 학생종합야영장이 운영이 굉장히 점차 저조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서해수련원의 여름운영 이것이 지금 야영 형태와 비슷하게 지금 천막을 치지않고 간다면 내내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되고 그러면 진천종합야영장은 더 인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규제완화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의무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기별로 배정을 해서 한 5만명까지 수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서 수련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일선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수련시설을 학생들이 선호하고 또 학교가 그렇게 그쪽으로 애들 수련활동을 하기 때문에, 진천야영장 같은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홍보부족이다 그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최선한도 5만명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도 2만명 정도로 지금 다녀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서해수련원으로 분산이 되어서 그나마 2만명 정도도 여름에 수용이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 예측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서해수련원은 단재에서 간부학습 수련원을 인수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천야영장에서의 학생야영 수련활동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

씀드리고, 하여튼 금년에 진천야영장장이 저희한테 업무보고 시에 5만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채우겠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수련지도 기능도 개발하고 해서 금년에 5만명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에 5만명 그래서 10만명 정도가 수련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사실 어제께 야영장 인근에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다른 이유지만은 지난번에 야영장 운영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흐르는 세금천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야영을 할 수가 없다 기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어제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그 위에 그냥 완전히 측사에서 내려오는 배출물들이 그대로 똥똥 떠다니면서 야영장 앞에 물이 흘러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역류를 하는 있는 것을 봤어요. 저말고도 여러분의 시민단체, 충청북도여성단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심각성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역할

의 분담이 지금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달라지고 또 장장님이 원장으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5만명을 공언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매립지나 좋은 점들이 없이 운영이 되면서 계속 지금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바람이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안을 드리기를 여름은 서해수련원쪽으로 학생들이 간다 하더라도 다른 철에 봄부터 여름도 좋고 가을까지 그쪽을 생태쪽을 복원을 시켜서 굉장히 넓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물부터 시작해서 물을 저희들도 외곽에서 이것들을 도와 드리려고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여성포럼에서 충청북도여성포럼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진천군과 도청에도 지금 요청을 할 계획으로 연간계획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근처의 생태를 복원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 편에 여러 가지 야생화단지라든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자연학습원을 하되 그 인근에 대한 어떤 산책코스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농다리까지의 어떤 길

도 지금 산책로로 이렇게 한 시간 정도의 구보코스로 만들었다고 그런 설명도 안내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근처에 대한 수련원과는 다른 기능 그쪽에 숲의 기능을 살린다든지 전문운영가들을 배치를 하거나 이쪽에 장점을 살려서 연중 운영하는 방식을 일선 학교에 홍보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뒷따르지 않고는, 지금 이 야영장은 용도폐지가 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당연히 서해수련원으로 기존의 업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그냥 뒷집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저는 생태학습지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치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지금 2조에 지역교육청소속 야영장도 야영장이라고 칭할 수 있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건 야영장입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럼 여기에 신규조문 대비표 하나만 가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32조에 사용허가도 원장 및 장장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성영웅 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에 있는 야영장 역시 장장이나 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 **교육국장 반창남**

지역교육청에 있는 야영장은 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야영장장이라고 그렇게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천학생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면은 야영장장에게 사용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성영웅 위원**

근데 여기에서 오늘 조례개정 하는데 나타난 사항은 진천야영장을 주도해서 많이 다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혼동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교육청 야영장에 관한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 **성영웅 위원**

그래서 야영장은 진천야영장과 지역교육청이 관장하는 야영장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 **교육국장 반창남**

그러니까 진천은 청소년종합수련원 그렇게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 **위원장 고규강**

다 하셨어요?

● **성영웅 위원**

예.

● **위원장 고규강**

성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훈**

152-1호에 보시면은 1호에 제13조 보시면은 거기 아니라 5절 제목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한다 이랬고, 그 다음에 152-2호에 보시면은 33조제1항중 야영장을 수련원 및 야영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장장을 원장 및 장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지금 명칭을 개정하는 거죠?

●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간사 김남훈**



그럼 거기의 장이 수련원장이야.

●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간사 김남훈

그렇죠.

원장인데 지금 현재 기존 야영장의 책임을 맡는 분이 야영장장이죠?

● 교육국장 반창남

진천입니까?

● 간사 김남훈

진천.

● 교육국장 반창남

진천은 앞으로 조례가 지금 먼저 개정이 됐으니까 종합수련원장이 되는 겁니다, 수련원장.

● 간사 김남훈

아니 그러니까 두 군대를 묶어서 종합수련원장이 되는 거고 그 수련원장이 진천하고 임해수련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련원장 밑에 양쪽의 기관이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반창남

원장 밑에 3가지 부를 두도록 그렇게.....

● 간사 김남훈

그 원장 밑에 있는 분을 진천야영장에 있는 분도 종합야영장장으로 한다?

● 교육국장 반창남

아닙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부장이죠, 부장.

● 교육국장 반창남

부장.

● 간사 김남훈

부장으로 하는 거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 간사 김남훈

이쪽 임해수련원도?

● 교육국장 반창남

임해수련 운영부장, 진천수련원 운영부장 그렇게 명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간사 김남훈

그런데 34조 보면은 장장을 원장 및 장장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야영을 수련 및 야영으로 제3호의 장장을 원장 및 장장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조금 혼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장 밑에 부장을 둘 계획이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천종합장에 있는 장장하고 지역교육청의 장장하고 똑같은 장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 간사 김남훈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이제 먼저는 기구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은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얘기하고 조금 연관되는 게 먼저 얘기를 조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통과된 얘기겠지만 지금 봤을 때 22조에 조례에서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 그렇죠, 임무.

● 위원장 고규강

업무죠, 업무.

● 이기수 위원

22조에 업무는 동일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됐죠. 우리가 개정하는데 그렇죠. 업무가 업무조항에는 현행과 같이 더 개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진위원님이 질의하고 우

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야영장하고 수련원하고는 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한 것은 단재 교육원쪽에 있는 학생수련과 또 두 개 임해수련원 또는 야영장을 합한 복합적인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반창남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야영장에 대한 업무하고 수련원에 대한 업무가 다를 텐데 먼저는 야영장의 업무에 대한 조례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수련원 업무가 다시 더 들어갔다면 거기를 더 가미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조금 있다 우선 관계규정을 보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현재 업무가 각급 학교학생수련활동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활동,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조항 가지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22조1항에 말입니다. 수련활동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해 놓고 수련이 들어갔으면 거기 또 야영장이 또 있기 때문에 야영이 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문구에.

● 교육국장 반창남

2항에 청소년단체 단원들의 야영과 수련.....

아, 각급 학교학생들 수련활동.

● 이기수 위원

학생이니까 이거는.

● 교육국장 반창남

수련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야영하고 수련을 모두가 총괄적으로 해서 수련활동 그렇게 용어를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걸 그렇게 된다면 수련하고 야영쪽에 야영은 싹 빼고 수련이라고 하면 됐지 거기다가 야영이라는 거는 넣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 되면 전체를 이걸 보다면 수련하고 야영을 조금 어휘적인 구별을 한다면 1항에 말입니다. 수련활동 및 야영에 대한 계획까지 명시하고 그럼 왜 밑에는 야영과 수련을 청소년단체에 거기도 수련

이라고 해 버리고 말지 야영과 수련을 왜 넣은 겁니까? 거기는 이원화 시켜놓고 위에는 또 그렇게 놓는다면 다른 애기지 앞뒤가 안맞는 애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밑에 2항에.....

● 교육국장 반창남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22조란 얘기는 순전히 야영장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 조례니까 수련이 가미 됐으면 당연히 수련쪽의 얘기도 같이 내포할 수 있는 함축성 있는 업무를 어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고규강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총무과장님이 야영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20조1항을 보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대자연과 접하는 게 야영이에요. 그거는 없애 버리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게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애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연수나 수련이 되는 거지 어떻게 야영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맞지 않아요.

● **교육국장 반창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22조는 수련원장 및 야영장장은 그러니까 야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의 야영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 **이기수 위원**

아니 이게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다면 사실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이 합친 얘기예요.

결국은 야영장이라는 거는와 수련쪽과 왜 그러냐 하면은 단재교육원의 수련원을 흡수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야영장의 성격으로 봐지지만은, 엄연히 단재교육원의 수련업무를 떼어다가 이쪽에다 붙였다면 고유하게 야영장으로써 되어 있었던 업무하고는 구별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야영장을 이게 맞는다고 고집한다면 과거 야영장에 대한 결맞은 업무를 했던 자체가 수련 쪽까지 더 집어 넣었다는 그런 모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던 간에 야영의미를 해 갖고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이 합쳐졌다면 업무는 당연히 적당히 조정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는 말입니다. 야영과 수련을 같은 의미를 봤다면 야영과 수련을 왜 같이 씁니까? 수련이라고 했던지

야영이라고 했던지 2항 조항을 하나로 통일해야지.....

● **교육국장 반창남**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련활동이라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영하고 수련을 별도로 나눠서 보는 측면도 있고 통합해서 야영하고 수련 여러 가지 지도력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전부다 한데 합쳐서 청소년 수련활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이걸.....

● **이기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조항도 말입니다. 적당히 그쪽을 비슷한 성격쪽에 내포시키려면 2항도 수련과 야영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를 이거를 위에는 말입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뭘니까 수련이라는 어휘만 사용했고 2항에 와서는 야영과 수련을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썼다는 얘기는 이 취지 자체가 야영과 수련을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서 쓴 얘기인데, 그걸 같이 얼버무려 놓고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는 얘기고 꼼꼼히 따져 갖고서 보는 사람은 이게 뭔가 모순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바랍니다

다.

● 송대현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수련과 야영의 개념을 과기적으로 해석하면 같을는지 모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은 청소년들의 가치관정립이라는 거는 수련이 됐던 야영이든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수련활용을 하던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 지역교육청에 있는 건 야영이고 문백에 있는 건 수련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가치관정립을 위해서 수련이 됐든 야영됐든 똑같다, 방법상에서 체험위주를 통해서 가지고 강인한 체력이라든가 강인한 체험위주가 될 때는 야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 정신내면의 가치라 해서 정신교육의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이면 물론 정신교육만 전부 넣는 건 아닙니다. 뭐 등산도 하고 합시다라는 그게 위주가 될 때는 수련이라는 쪽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 용어로.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문백처럼 이런 지역에 따라서 야영장과 수련의 용어를 쓰지 않고 각 시·도에 있는 것을 보세요.

학생수련원, 학생야영장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영장쪽은 주로 체험

활동 서로 움직이는 것 강인한 정신을 넣는 그런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 학생수련원 하면은 거기 강의도 받고 정신교육도 받고 물론 체험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체험보다는 정신교육 측면 쪽으로 해서 둘이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에 따라서 수련, 야영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성격, 운영 방법상에는 약간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감사합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송위원님이 설명을 했고 어휘의 차이도 엄밀히 분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련과 야영은 이게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봐도 한데 묶어 갖고서 이렇게 해서 안 될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기관들이 하나로 합쳐져 갖고서 되어 있는데 종전의 기관의 이름을 써 갖고서 업무가 똑같다든지 하면 이걸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1항과 2항의 차이에서 그게 구별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1항에서 그걸 뭔가 야영과 수련이 다른 의미에서 각도에서 본 얘기이고 2항일 경우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본 얘기고 2항일 경우는 수련과 야영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다 수련이라는 어휘와 야영이라는 어휘를 동일하게 한 줄에 나란히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의미로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기관이 합치는 얘기를 가지고서 이걸 문구 한 두 개만 더 넣으면 될 걸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위원님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자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기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1항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및 야영 이렇게 넣어 야지 되겠죠. 1항에 1항에.

● 교육국장 반창남

수련활동 및 야영계획.

● 이기수 위원

예.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및 야영 거기도 그게 들어가야 되고 교육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의 목적을 같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에도 그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 위원장 고규강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벌써 개정선포가 되어서 끝났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이용에 관한 거 얘기하시는데 우리 하마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끝난 거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위원장한테 허락을 안받고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명을 하거든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 32조하고 35조가 누락이 됐어요. 그렇죠. 누락이 됐죠. 친구대조문에는 그게 개정을 한다고 나왔고 그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 그런데 조례개정안에는 32조하고 35조가 누락되어 있네 그죠. 이거는 빼버린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누락됐습니다.

● 위원장 고규강

다시 저기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삽

입을 해야 되겠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삽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고규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잠시 정회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 위원장 고규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간담회 협의회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제36조 중을 제35조 및 제36조 중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질의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고규강, 간사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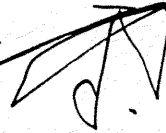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5. .

위원장 고규강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3.4.22. (화) 제1차 예·결소위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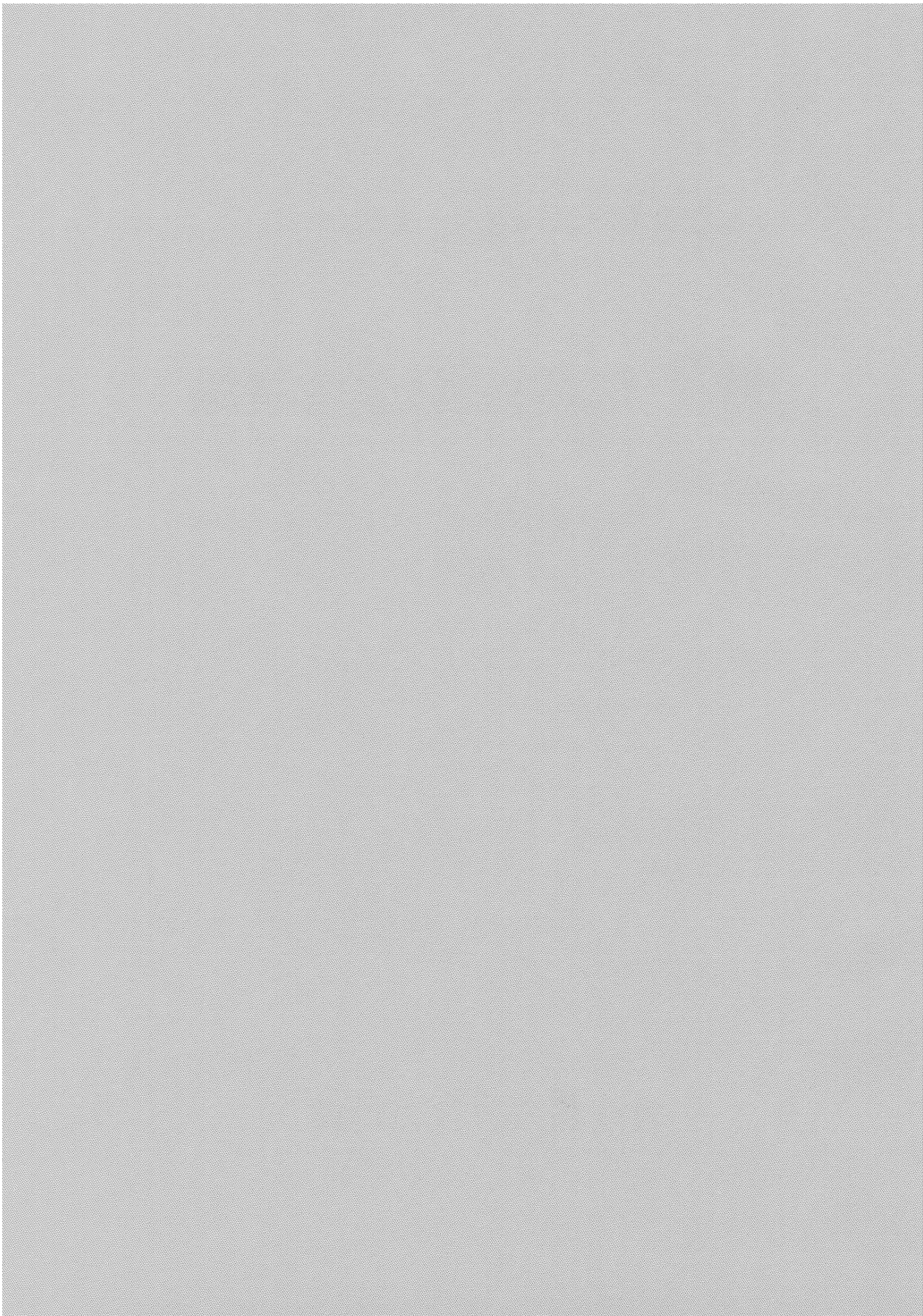


第15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53

II.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57

##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227
2. 서면답변서 ..... 229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4월 22일 (화요일) 14시 37분

## 議事日程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37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진옥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 **이기수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진옥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옥경**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민주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간사선출의견

(14시 40분)

● **위원장 진옥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견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성영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 **송대현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간사께서는 잠시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본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견

(14시 41분)

● **위원장 진옥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옥경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진옥경, 간사 성영용,  
위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3년 4월 23일 (수요일) 10시 05분

議事日程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진옥경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진옥경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의 좌석순에 따  
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서 고규강 위원님  
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위원입니다.

교원사기 진작 및 교원단체 지원으로 3  
억 420만원인가를 책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의원님들이 지금 지원해 준  
돈도 회수하려고 그러는 걸 당국에서도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지원해 준건지 모  
르시고 지원해 준건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시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시  
초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요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도의원님들과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지원은  
일체 올라와도 안해 주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저희가 건물임대를 해 주  
었는데 그것까지 회수한다 뭐 그런 얘기  
는 처음 듣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의원님들하  
고 오찬석상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적에  
도 교원단체라는 것은 물론 저는 여기 노  
조에게 사무실을 주고 그러는 거는 법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줘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자기들이 회비  
를 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  
어 어떻게 국고로다 지원해 주냐 하는 얘  
기를 했고, 또 교원단체들이 학생들 교육  
을 하는데 있어서 더 잘하는 게 뭐가 있  
느냐 이래서 준 것까지도 회수해야 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도교육청에서  
다시 예산을 올렸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적에 도의회에서 99%  
가 삭감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적에 만  
3,000명의 교원들과 우리교육청과 교육위  
원들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  
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교원단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  
떤 공간을 임대료를 준다는 거를 그렇게  
저희들은 거부감은 별로 없는데, 이것이  
도의회에 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위상도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이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교원단체 한교조는 여기 없더라고.

● 교육국장 반창남

한교조는 본부가 서울에만 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여기 한교조 구성도 안됐는데 사무실 임차료, 수수료, 한교조 사무실 임차 여기 다 들어 있네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작년에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한교조가 결성이 안됐어요. 지부가 그래서 금년도는 지부가 결성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한 2,000만원 깎아서 8,000만원 사무실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깊고 넘어가고 아까 교원단체 두분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원연합회는 돈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필요없다는 거고 전교조는 사무실공간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교섭협의를 하실 적에 교원연합회도 교섭협의를 하고 전교조도 교섭협의를 하실 적에 한쪽 군대가 필요하다면 거기만 줄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 교육국장 반창남

작년에 교원단체연합회도 교섭을 했고 전교조와도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측에서는 현재 3층에 기독교방송국 3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한 66명밖에 안돼 가지고 연수를 자주 해야 되는데 연수공간이 부족해서 연수를 상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2층으로 가면은 108명이니까 연수공간이 한 40평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5월 1일 날 3층에서 2층으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다 끝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장차 교원단체가 교육활동에 전념을 하고 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방침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층으로 옮기는 부족금 6,2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고규강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학교에 E-book이라는 것을 구입을 못하게 하고 3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교육과학연구원에 E-book 디지털도서관을 설치해서 480개에 달하는 학교가 전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뿐이 못줬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온 게 예산이 1억원이더라

구 예산이.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30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돈은 없어서 3억을 요구 했는데 1억으로 되고 교원단체에는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요자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은 못하고 이런데 투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반창남

연구원의 E-book은 저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E-book은 작년에도 한 2억 정도해서 일부 했고 금년에 1억을 하면 3억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터넷 도서도 확충해야 되고 또 교원단체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규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부산이고 대구고 뭐 이런데를 경북이고 돌아보고서 충북의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초라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못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디지털 E-book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별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타 시·도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별로.

그런데 충청북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효

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 디지털도서관을 E-book을 설치해서 각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그거를 빼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하는 건데, 거기서 3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왜 3억이라는 게 되느냐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각 학교에 팔 적에는 E-book 하나에 10,000원 자리도 있고 8,000원 자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충청북도는 학교에 못하게 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쓸 경우에는 25만원에서 디지털도서 한 권이 35만원 단가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고는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얻어다가 여기다 준 것도 있어요. 몇 군데 얻어다가 가격을 조정을 하고 내용을 봐 가지고 취사선택을 하시오 해 가지고 준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30만 학생이 독서를 도서실 확충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장비만 그렇게 많이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한 권을 1,0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데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이 낫지 어떤 게 나은지 나는 제가 생각하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교원단체가 중요한 건가 이런 거를 묻고 싶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릴 적에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난처한

지금 난처하다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나 하면 도의회에 올라 가지고 100% 삭감될 건데 100%예요. 100%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교원단체장을 불러 가지고 자신 있느냐 도의회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충청북도의 교육제도가 이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많고 인적부장관 부총리의 예산권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측시켜 편입되는 교육제도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당신들은 뭐하나 교원단체가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이런 것만 예산 올려서 되겠느냐 그 얘기도 했어요.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하겠다 그런 커다란 문제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글썄 이 예산을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줄거리는 모르고 있더라구 교원단체도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교육이 살아나고 교권이 살아나고 이런 거를 큰 틀을 잡아 가지고 자기들도 중앙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단체에 눌러 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 할 때 못하고 그런데로 새나가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교육위원으로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단체에 눌러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도 도의회에 갔을 때도 작년도에 저희가 올렸는데 깎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다시 편성을 할테니까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작년에 호의적으로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고규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다음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에 보면 선수합숙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또는 지난 3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화재사건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주기계공고 그 다음에 금천고등학교, 청주중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어 딱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숙소등은 학생들이 주야로 생활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지 않

면 안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내의 운동부 합숙소는 총 몇 개이며 이중 위험이 있는 간이 합숙소는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에 고등학교의 경우 합숙소 3실 개축비로 1억 8,720만원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중·고등학교별로 합숙소 개축 예산편성 학교 수와 편성예산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교육감재량사업비나 본 예산으로 편성하여 합숙소를 개축하는 현황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합숙소는 전면 개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합숙소현황만은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운동선수합숙소는 60교의 71개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합숙소가 3교 4개소, 조립식건물 합숙소는 19개교 21개소로 그렇게 현재 나와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숙소개축 예산으로는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즉 재량사업비로 1교에 청주남중에 5,000만원으로 지금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 9교에 12억 6,500만원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총 13억 1,500만원으로 약 9개 동의 노후시설을 합숙소를 개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1개중에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9개교에 21개소가 컨테이너나 아니면 노후된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은 우선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9개교에서는 아주 시설이 낙후하고 위험있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남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합숙소의 위험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서는 나머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전면 개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올리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세 번째 질문드린 것.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초·중·고등학교별 예산현황은 지금 초등학교가 2개교 남성초등학교하고 중평초등학교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청주남중, 제천여중, 영동중, 영신중학교가 올라와 있고



고등학교는 미원공고, 청석고, 일신여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초·중학교 거는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9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앞으로 개축이나 또는 신축시에는 건축 방법을 재료를 불연내장재로 요새 신제품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을 사용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물을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146쪽, 148쪽 그리고 또 한군데가 있는데 냉난방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난방개선비가 86교 1,232실에 108억 9,436만원을 투자하였고 이번 추경에 또 다시 20개교 868실에 80억 6,251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올해 난방개선비로 106교 2,100실에 189억 5,688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는데, 그렇다면 추경 전까지 난방개선은 전체 몇 %로이며 추경 후에는 몇 %의 난방이 개선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 학교의 개선되지 않은 교실난방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바라고, 세 번째로 이번에 편성되는 20교 868실에 투자되는 80억 6,251만원은 본예산에 편성 하절기인 방학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동절기 난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경에 반영하여 동절기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는지 걱정입니다. 동절기 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학교의 냉난방시설비는 사실 당초 계획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냉난방을 우선적으로 빨리 좀 매듭을 지어야겠다 해서 1년 당겨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체 전 학교에 난방을 갖다가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건물이 개축대상인 학교 또는 통·폐합 대상인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막론하고 이번에 다 전체가 완료됩니다.

● 김남훈 위원

100%로 다 된다는 말이죠. 신축학교 빼

놓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개축 대상만 빼 놓고 100%로 다 완료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지금 말씀드렸지만 개축대상 학교하고 학생수가 적어서 통·폐합이 불가피한 학교 요런 학교를 제외하고 100%로 완료됩니다.

그리고 요번 추경에 이것이 의결이 되면은 여름에 공사를 해 가지고서 금년 겨울부터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완료가 됩니다.

● 김남훈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있어서 제가 페이지 수는 밝히기는 곤란한데 지붕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면은 이제 까지 지붕방수에 소요된 금액을 연도별로 제가 뽑아 보니까 2001년도 6억 6,575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9억 80만원, 2003년도 금년에 26억 1,575만원 최근 3년간 수리공사비 합계가 51억 8,230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되었습니다.

매년 지붕방수보수 공사비로 막대한 예

산이 반복 투자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의 방수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건축이나 주택에 비교해서 학교건물들이 방수공사 주기가 짧은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건물들이 지을 때 종합적으로 이거를 전공정을 세워서 전 계획을 세워서 지은 경우는 일반주택과 같이 장기간동안 방수문제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교실을 자꾸 이어서 짓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어서 공사함으로써 전차공사와 후차공사의 공간 사이의 방수문제, 그 다음에 먼저 완공된 공사하고 뒤에 공사된 시차 때문에 방수공사를 일절 다시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방수문제가 예산편성될 때마다 여러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방수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께서 올려오는 요구는 전액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주려고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상현상 생길 때마다 방수공사를 해 줘도 또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짓거나 개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법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감리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공사들보다는 상당히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붕경사도라든가 아니면 시공,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건물개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는 짧게짧게 적은 공사를 이어 가지 않고 완성된 건물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방수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남훈 위원

51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지금 학교가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서 교실에 비가 새고 있다 이거 발생 즉시 고쳐주어야 됩니다.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다는 게 아니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그

냥 방수공사만 해서 고쳐주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뭐 과거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사항별설명서 145쪽 청주농고 수영장다이빙 경기장 건립에 60억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수영장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 다이빙장하고 그리고 지붕최우기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에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내년에 전국체전 또 후년에 소년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논의했어요.

전라북도가 금년에 전국체전을 지금 치루는데 전라북도에 좀 위탁을 해서 내년에 전국체전 다이빙을 거기서 할거냐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금 새롭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이빙경기를 치룰 거냐, 그래서 우리 도의 자존심도 있고 장차 충북수영선수의 전국제패를 겸한 전천후 수영경기장을 이 기회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비 우리 도비로 25억, 국비하고 지방비로 35억 그래서 6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

고 청주농고 옆에 있는 수영장의 지붕을 덧씌우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서 전국체전도 치루고 우리선수 육성도 훌륭히 할 수 있고 그러한 전천후 종합수영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시설을 갖다가 개축하자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60억이라고 하면 보통학교 3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급인데, 수영장 하나 세우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설계를 했을 테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금액이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전라북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20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고 요번에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새롭게 지으려면 200억이 소요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60억은 적절한 금액이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이 나간 건데요. 통학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먼저번에 고등학교 배정 관계로 인해서 몇 군데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청주시내 초·중·고등학교가 제가 알기에는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유독이 3개교만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물론 지역에서 분교장이 통·폐합 되어서 없어지는 학교는 통학버스를 대준다고는 하지만, 이거 학생들이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통학버스비를 갖다가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고 3년씩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예산은 고등학교 현안사업비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속에 그래서 그 예산에서 한 학교에 약 3,000만원씩 그래서 버스를 임대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 3지망까지 되어 있는 걸 4지망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는 다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4지망은 마지막 1지망, 2지망, 3지망했을 때 자기가 원하

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그러면 근거리로 4지망을 꼭 지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917명이 지망을 안해 가지고 원거리 통학을 하게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소차원, 그 다음에 학생들의 복지차원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판단할 때, 원거리 통학생 예를 들어서 미원에서 오는 사람, 진천에서 오는 학생들 또 증평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또 교차해서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좀 지원해 주자 그래서 버스를 임차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해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그럼 현안사업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내년에 신입생 배정방법을 현재까지 4지망에서 5지망까지 늘리고 마지막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 원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1지망, 2지망까지 다시 받아서 배정해서, 그러한 배정으로 인한 어려움 또 원거리 통학로 인한 고통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 금년도 중3 신입생 배정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 다수가 물론 컴퓨터추첨방식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지만, 다수가 몰려있는데 그런데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해 주고 또 어떤 학교 같은데는 다수가 아닌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특정학교 여기 보니까 흥덕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원, 주성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데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설득하고 과정을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해 줬다 이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3년씩 맞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3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약속을 했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면 현안사업비라는 것을 그런데 쓰는 걸로 저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현안사업에서 풀어나갈 겁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이러한

집단성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연구해 봤는데 학부모 전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김남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러한 사태가 고등학교도 일어났고 중학교도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고로는 중학교도 일어났는데 중학교는 이러한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학부모를 갖다가 이해를 시켜서 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는 통학버스를 해 주지 않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중학교는 그것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학부모를 이해 못시키고 이러한 사업을 더군다나 3개교씩을 3년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저거하지 않았나 해서 미비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우리 충북교육의 청사진으로써 유치원 교육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은 현대적인 감각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면서 젊은 교육을 주창하시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현황하고 연도별 추경예산별 예비비변동 사항을 보니까 지침 79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비가 전체예산에 약 0.5%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억 정도면 가능한데 이미 당초 예산에도 이것이 기준에 충분한데 그 부분에 36억을 늘어 가지고 134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한 80억이 초과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서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97억 있었습니다. 97억에서 3억 정도를 요번에 썼고 사용을 했고, 추가로 요번에 예비비에 계상된 것은 문화회관건립비로 특별교부금으로 40억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단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 간사 성영웅

지금 충분히 그것도 되면서 40억을 뺀다고 그래도 한 90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현재 예비비가 한 9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간사 성영웅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지출 현황이나 변동사항을 보니까 집행현황하고 이걸 보니까 큰 변동이 별로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지역교육청 연도별 신규교사발령 현황이나 교직원공동숙소 관계를 한번 같이 연계해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들의 생활근거지가 대개 청주지역이거든요. 신규교사나 모든 게 그래서 옥천지역에도 요번에 5세대 해주고 음성지역에도 8세대 공동숙소를 마련

해 주어서 좋은데, 이 제천지역에는 신규교사가 매년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공동숙소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예비비 같은 거를 이런 쪽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신지 있다고 그러면 언제쯤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136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안용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 40억이 포함되어 있고 국고 40억 중에서는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일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한 80억을 제외 놓으면 기준보다 약간 상위 되어 있는 재원만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계획상으로는 약 한 87% 정도 되는 거지만 사실상 94%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잉여금이 약 한 972억 정도가 사실상 국고를 받은 거를 이월시킨 거기 때문에 그게 자체수입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도세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다소 좀 오버해서 책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교직원숙소에 대해서는 저희

들 교육청에서도 성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간에 격차가 심해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복지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어촌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관사사택을 많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동, 단양, 제천 이런 오지 지역의 선생님들 부분이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매폐지역에 세대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다른 거에 우선해서 좀더 증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 ● 간사 성영용

지금 신설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2004년도 개교예정인 6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167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근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설립사무취급을 전부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새로 부임한 교직원이나 교장과 의 의견차이나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이질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에 개교 한 2,3개월 전에 간부직만 미리 발령을 내서 그 학교의 모든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게 어떤가 두 분 국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우선 개교학교 신설학교 개교에 즈음해서 사전에 일반직을 임용을 해서 개교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교준비 요원을 6개월 전에 낼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일반직만 가가지고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교원 즉 학교장인 교장하고 임명을 우선 같이 해서 교장의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반직들이 지금 현재 개교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의 모든 장부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행정문화들을 전부 익혀서 가야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개월 전에 발



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사전에 발령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와 동시에 사전에 발령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의 3개월 전 임용방안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설학교 설립 또 운영에 관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주요사업 15쪽에 병설유치원에 대한 주문입니다.

이번에 6개원이 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병설유치원은 하지 말고 아주 아예 단설유치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게 어떤가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편법운영입니다. 저희가 공립에서 유아를 수용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초등학교 병설에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단설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이 청주같은데 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는데 아울러서 이번에는 유치원부지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할 때 아주 처음부터 단설로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요사업 23쪽 참고하시면 교원안전공제회 기금이 요번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기금되어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 33억원 정도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앞으로 그럼 몇 년 동안 기금을 좀더 마련해야지 지금 현재 어떤 저금리 시대에 이자만으로서 이게 운영이 가능할지 또 이럴 때 이게 꼭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은 작년 2003학년도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예산 편성된 걸로 해서 끝났는데 안전공제회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또 지금 알다시피 제천지역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금액이 과다된 금액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단의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금을 조금 더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을 부득이 편성을 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아주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금리만을 가지고 그 수요에 충당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회비를 지금 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학생들이 빈병을 모은다든가 폐품을 수집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재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회계에서 결국에 그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도 대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전출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오느니 우리가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부득이 1억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금운영의

형편을 봐 가며 기준금을 다시 출연을 할 것인가 여부를 당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 ● 간사 성영웅

다음은 주요사업 47쪽의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3억 2,500만원을 배분하면서 확일적으로 학급 수를 적용해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특수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인지 한번 묻고 싶고, 또한 장애종류별이나 치료대상학생 수나 여기에 필요한 치료기구라든가 단가수량 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 적절하게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기준이 있다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합한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학생의 치료정도에 따라서 교재·교구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기자재를 살 것인가를 학교에 맡기고 학급수가 많으면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학급수에 따라서 차

등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슨 기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치료가능할 수 있는 기구인가 요것은 학교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간사 성영용

각 시·군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서보조원 일용직에 대해서 많이 배치하는 것은 교원업무를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요번에 배치되는 되는 학교현황하고 미배치는 되는 학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미배치 학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언제쯤 배치될 것인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모든 학교를 현대화된 도서관으로 건립해 주자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적으로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한 60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규모에 따라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사서임용은 60개교 금년

에 리모델링하는 학교에 대해서 해 주고, 이것이 212명이고 3년 동안에 그러면 전체 거의 학교가 도서관을 갖출 수 있다 그래 3년 계획으로 212명 연차적으로 60명 그 다음에 또 120명 이렇게 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연차계획이라든지 임용계획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간사 성영용

사항별 354쪽에 음성교육청의 식중독예방시스템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까마는,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검증해 보셨는지 또 검증이 됐다면 전체 학교에 보급해야지 단지 음성 2개교에만 지원한 이유가 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35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음성교육청 자체에서 책정한 겁니다.

● 간사 성영용

식중독예방시스템이 HACCP하고 어떤 차

이가 있죠, 자료 제출한 식중독예방시스템하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HACCP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화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두 학교 용천초하고 삼성초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차이점은 뭐고 기본 내용이 무언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간사 성영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 합숙소신축사업 사항별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사업에 신축사업에 7,000만원, 개축사업에 4,000만원 이건 199쪽에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종목선수들이 사용할 합숙소인지요?

그리고 최근 화재사건하고 고려해서 안전시설에 최대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떤 건지 그렇게 하고 사항별 204쪽에 공고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신

문 공고라면 작은 금액이라도 도보나 관보를 통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공고료가 필요한지?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쪽 청주교육청의 합숙소신축은 남성초등학교에 합숙소를 신축하는 예산으로 7,000만원 이렇게 계상해 왔습니다. 남성초는 농구부선수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리고 204쪽 나와 있는 공고료 관계는?

● 교육국장 반창남

공고료는 관리과 소관.....

●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공고료 부분은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청주시내에 있는 울랑중학교의 부지 일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환경평가수수료가 1,200만원 소요되고 측량수수료가 600만원 그 공고료가 한 280만원 예상됩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 충주교육청에 관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무슨 사업이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 중앙중학교 도로 변에 있어 가지고 차량소음 때문에 학교 교실수업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외부소음을 차단하는 그러한 방음벽을 도로 가에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도로공사나 시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시공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도로공사는 이제 도로가 신설된 도로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할 때는 해 주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환경부담금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중앙중학교는 처음에 당초부터 서 있던 학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은 225쪽에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지붕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심의 때도 영동인가 제가 어느 교육청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문답은 학교 지붕방수에 3,420만원을 투자 할 가치가 있는지 혹시 이게 방수내지는 다른 요소가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건물가액이나 현재 용도라든지 임대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3,420만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225쪽입니다, 사항별.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충주의 성남초등학교 동신분교장하고 엄정초등학교 추평분교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수를 안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 간사 성영용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임대료가 지금 동신분교장은 건대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약 연간 2,011만 1,000원이고 또 추평분교장은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163만원입니다.

● 간사 성영용

그러면 이거해서 1년해서 한 3,300만원 들어오는데 3,420만원 지붕방수해주고 다 하게 되면 빌려줄 이유도 없잖아요. 한번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서 좋은 판단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리고 진천교육청에 사항별 321쪽입니다. 교육과정 개편시설 사업비가 다른 교육청은 거의 조정이 없는데 여기만 3억 900만원씩이나 삭감된 이유가 뭔지, 또 3억 900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진천교육청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구상한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요것이 당초 구정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7차 교육과정 교실증축비를 짓는데 학급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간배정한 내용입니다.

● **간사 성영용**

다음은 괴산교육청의 사항별 343쪽입니다. 증평도서관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가 다른 도서관에 다 있는데 증평에만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도 없는데 증평도서관만 특별히 해야 하는지 증평에만 설치하는 그 이유가 뭔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거는 장서관리를 위해서 증평도서관

에 CCTV를 설치하는데 다른 도서관의 상황은 저희가 알아 가지고서 다시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장서관리라도 도서관은 주민들이 자유로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요소를 갖고 있는데 CCTV같은 거 해서 거부감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혹시 도난 같은 거 장서관리라고 그러면 도난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CCTV설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양국장님, 과장님, 담당관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900여억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쓰고자 이 자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때로는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민들이 궁금해서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로운 절차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제도권 하에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라 생각하시고 연일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기초로 몇 가지 드러볼까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 세입예산지원별이네요. 세입예산지원별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간 하단에 보면 정책사업수요지원 3건 한 게 있습니다. 그 3건이 약 11억정도 되는데 그 3건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해서 10억 1,7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녹색학교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죠. 15쪽에 수용시설확충 초·중학교 수용시설이 있고 그 밑에 제7차 교육과정 시설이 있어서 교실이라든가 때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 두 내용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잘 몰라

서 여쭙보는 부분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초·중학교 수용시설은 초등학교가 12실인데 청주에 가경초등학교가 4실, 보은에 동광초등학교가 3실, 괴산에 삼보초등학교 1실, 음성 대서초등학교가 4실해서 12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청주에 청원중학교 3실, 청주여자중학교 3실, 봉명중학교 3실 9실이 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여쭙 보는 게 아니고 7차 교육과정 시설에도 교실을 지을수가 있고 초·중등학교 수용시설도 교실을 지을수가 있는데 그 둘의 재원에 따라 성격의 차이를 나누는 것인지 그걸 여쭙보는 것입니다, 성격의 개념을.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수용시설은 본래 초·중학교 수용시설은 전액 국고에서 나와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금 23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학급증가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돈을 더 좀 추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수용시설은 증설학급에 대해서만 국고 받아서 전액 투자를 하고, 7차 교육과정 시설은 저희들이 7차 교육

과정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 시설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기준의 70%를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해 오다가 2002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어떤 기준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부족되는 학교에 7차 교육과정 시설로 명목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22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재원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은 전액 국고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다 오고 7차 교육과정은 5대5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50을 주면은 우리가 50을 보태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족되는 학교에 한해서 22억을 투자해서 자체재원으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알겠습니다.

14.5실을 하면은 7차 교육과정 시설의 70% 기준의 70%에 지금 목표로 설정된 부족액이 14.5실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7차 교육과정의 기준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시·도별로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되 교육개발원에서 표준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거기에서 전부 하다보면 워낙 재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개발에서 나온 거에 70%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 오던중 이게 교육부로부터 다시 지침이 일정한 수준을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맞춰도 부족되는 학교에 따라서 급격히 많이 부족되는 봉양중학교라든가 남산중학교, 석교초등학교 등 3개교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확보했다가 다소 필요성이 적어진 학교를 조정하는 2학교 해서 사실상 3학교에 지어 주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교육환경 개선에 이것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보는 겁니다. 환경친화조성 11교, 녹색학교조성 25교 해서 내용을 봤더니 환경친화조성 3,000만원씩인가 아마 그렇고요. 녹색환경은 1,000만원 또는 2,500만원 이렇게 차등이 나는데 두 개념차이가 어떤 것이며 왜 3,0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단가 지원이 되는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환경친화학교 조성은 학생들이 학교가 공원이란가 어떤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학교 공원하고 가깝다든가 어떤 숲이 가까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학교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골라서 담을 없애고 그 환경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초등학교는 한솔초등학교와 상당초등학교, 경상초등학교, 경덕초등학교, 진흥, 개신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용암중학교외 4개 등 11개교인데, 이걸 교당 3,000만원씩을 일단 투자를 해서 담장을 헐고 담장을 헐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밖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을 다소 저희들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사실상 교육부로부터 도심지에 정서가 상당히 매끄러운 학생들을 위해서 나무를 가꿀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사직초등학교 포함해서 4개교에 한해서 돈이 교당 2,500만원씩 1억원이 국고로 내려 와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학교를 검토하던 중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특정학교만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일단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학교를 환경을 조성해

야겠다고 신청한 학교 덕성초등학교 외 21개교 입니다마는, 여기도 교장선생님들이 적극 그래도 뭔가 학생들 정서를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매머른 학교에 나무를 심는 것을 지원해주자,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머지 학교에는 1,000만원씩 2억 1,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교는 2,500만원씩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21개교는 1,000만원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평균 금액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학교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조금 안맞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그래서 환경친화조성 의미를 담장을 없애고 밖에서 투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한다는 의미를 알게 됐는데, 지금 11개교 선정은 아까 공원이란가 환경이 좋은 곳을 선정했다고 그러시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것이죠, 11군데를 시·군교육청에 다 내려 줬나요? 선정 11개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의 일단은 의견을 물어서 학교의 신청이 온 것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 송대현 위원

기우입니다마는 혹시 우리가 가끔 도로

에 보다 보면 포장을 잘해 놓은 것을 자주 뜯어서 수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가까운 기간 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담장을 설치한 학교가 또 환경친화 조성을 한다해서 다시 헐고 다시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나 수요자들한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학교도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데는 반대가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쓸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더 시급한 나무 많이 심을수록 좋죠. 꽃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할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의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 돈을 투자하겠느냐 쪽에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려 봤던 부분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좀 봐주시죠. 16쪽에 교육문화회관건립이 타당성조사 5,000만원하고 설계비 5억 9,41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부산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보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350억을 투자했다는데 국고가 한 200억 지원받고 나머지는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좋은 시설을 갖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충북도 빨리 저보다 더 나은 시설되었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대구가 곧 5월 며칠 날 개원한다는데 규모가 더 크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북의 숙원사업이 바로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이 뛰어 놀 수 있고 그런 곳에서 바른 인성이 함양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다가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문구를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는 거하고 설계비하고는 벌써 두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된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자체로도 이게 모순이고, 교육위원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떨어져만 있어도 문제가 낫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얼마가 됐든지 저는 찬성합니다만 설계비 쪽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관리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교육문화회관건립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시찰을 또 해 주셨고 현지 답사까지 해서 비교까지 해주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5군데는 그래도 학생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갖추어져 있거나 현재 개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아다시피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아직 문화공간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다른 시·도 보다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 인적자원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충북교육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시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못했던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40억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에만 편성하고 예비비로 지금 묶여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만한 부지를 저희들 자체로 마련을 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도지사 산하에 있는 도청의 땅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지금 걱정을 하시는 사업계획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내의 자체예산만 가지고는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상으로는 반 이상의 재원은 국고에서 우리가 국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 빼놓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또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시급합니다마는, 관계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와 그 다음에 투자계획심의를 또 하고 그 투자계획심의에 의해서 다 2군데 옳다 이것은 이러한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자 났을 때에 교육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사업계획을 심의 받고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 순서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나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가 작년도 12월중에 거

론이 되다보니까 12월중이나 11월중에 거론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매우 촉박스러움 속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밀레니엄타운의 건설계획과 저희들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문화회관간에 협조관계 또한 재정문제 이런 것을 원만히 해결을 해서 조만간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예산을 중앙에서 얼마를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중앙에 내야 되는 계획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계획서를 여러 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도 제출을 했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도 2차례나 제출을 했고 도지사 산하에 도지사님한테도 제출을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40억 그 다음에 부지 7,000평 또 부지는 무상사용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는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듯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법령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

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적인 사업 계획수립이 아직 위원회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행의 일부분인 설계비가 편성된 거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설계비를 확정을 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심의를 해 주기 전에 집행할 그런 뜻으로 편성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주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다시 다음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해야 되고, 다시 편성된 예산이 통과되기까지는 12월중순 쯤이나 되지 않겠는가 2차 추경이나 이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40억중에 20억이 2002회계년도에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대비해서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더불어 설계비를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예산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려서 예산확보작업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조금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을 심의해 주기 전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집행청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을 서두르다 보면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꼭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그만큼 산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절차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입장은 다름니다만 교육위원들이 하는 책무라는 것도 한번 집행청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심도있게 논의를 합니다. 논의하고 늘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욱 노력을 하셔서 지금 국고가 얼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도 섭니다마는 그이상 제가 알기에 지난해에도 한 100억 정도가 거의 예·결위원회에 계수

조정에서 아마 빠진 걸로 압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뭐 이런 설계비도 없고 해도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설계비 5억 얼마가 있어야만 국가에서 예산을 따고 그게 없으면 예산을 못 탄다는 논리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간에도 애쓰셨고 또 4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고 또 지사한테 부지도 확보했으니까 더욱 교육부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서 오셨으니까 노력하셔서 우리가 부산같은데 200억이라는데 우리는 한 300억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총력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서 좋은 문화회관이 설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45쪽을 봐주시죠.

초등교육과쪽이네요 가정교육 지도자료 보급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이 붕괴되고 있고 여러 가지 참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애를 써도 어려운 입장에서 결국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고 학부모, 가정이 연계되어서 우리교육의 정상화를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가정교육 지도자료라고 하는 참 매력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조금 한 장을 넘겨보니까 학부모용 자료제작이 500원이라고 되어 있어

요. 500원 곱하기 7만부라는데 그 500원 자리 팜플렛인지 뭔가 그래도 학부모들에게 가정교육에 학부모로서의 평생식량을 주고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려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요즘 산적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죠. 어려서부터의 보충학습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등등 이런 차원에서 500원자리의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초등과장님 말씀을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실무자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교육국장 반창남**

제가 설명 올리면 안될까요?

● **송대헌 위원**

초등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교육 지도자료는 가정에서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등은 중등대로 초등은 초등대로 이렇게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고안을 했습니다. 고안을 해서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일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서 초등학교 세대당 학생수가 아닙니다. 세대당 1부씩하니까 약 7만부 그래서 단가가 500원해도 한 20페이지 정도 나오니

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대헌 위원**

그 20페이지 내용이 뭐니까? 대개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를 담을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초등교육과장 정무**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거 또 학교생활 또 사회생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영역별로 지도를 마련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른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뭐를 하지 말아라 뭐를 어떻게 하면 안된다 아주 규범적인 그런 이야기는 식상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젊은 아이들에 맞는 그 시대에 애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만화를 통한가든가 애들이 만화 좋아하거든요. 만화를 좋아한다든가 또 학부모님들도 영상매체 좋아합니다.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감화를 느끼면서 활용이 되는 자료가 되어야지 이런 거 묶어서 정직하거라 뭐 어떻게 하거라 이런 교훈적인 얘기를 담아서 7만부 뿌려야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500원 내용가지고는 충분한 내용을 담을수 있는 물론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이왕에 발간을 하면은 집에다가 잘 두고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들이 정말로 이거 참 불만하다 이러한 책이 되어야만 값어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 참고하셔서 좋은 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더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단설유치원설립계획안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운영비로써 1개교당 4,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남성유치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서원유치원도 단설유치원으로 하겠다 그 2학교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 초등교육과장 정무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청주시내에 산성유치원이 단설유치원 하나있고 이쪽에 남부지방에 하나 세워야겠다 해서 남성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고려한 것입니다.

● 송대헌 위원

다만 그러면 청주만에 국한해서 청주에 지역에 하나있으니까 남부, 서부 지역을

고려했다는 기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초등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요. 가만 있으세요.

초등과장님 학급의 규모라든가 지금 이미 병설유치원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설립하는 유치원에다가 단독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학급의 규모가 제일 크고 해서 우선 순위 이런 기준이 되어야지, 청주에 국한되는 땅을 잡아놓고 청주의 남쪽이나 서쪽이나 대상선정 기준으로 한다면 타당도가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치원의 원아수으로써 제일 많은 우선 순위는 어디입니까? 학급수가 유치원의 인원이라든가 학급수가 많은데는 도내에 청주에 국한하지 마시고.

● 초등교육과장 정무

지금 아동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현재 자료가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 송대헌 위원

아니 규모나 학급수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못하신다면.....

● 초등교육과장 정무

지금 지역에서 옥천 삼양.

● 송대헌 위원

예. 내가 삼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 초등교육과장 정무

두 번째가 덕성초구요. 두 번째가 아니라 많은 숫자대로 말씀드리면 덕성초, 충주 예성초, 옥천 삼양, 보은 삼산, 청주 창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요. 제일 많은 데가 옥천 삼양이고 그 다음에 충주입니다. 충주인데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왜 청주에 국한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는 요지입니다.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4,000만원 설립해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 설명은 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 지금 학급수가 제일 많은 유치원은 옥천 삼양 초등학교 6학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성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덕성, 충주 예성, 보은 삼산 모두 5학급씩 되어 있습

니다.

이번에 9월 1일자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시키는 2개 유치원은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청주에만 2개 할 것이 아니고 옥천도 있고 충주도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일 학급수가 많은 옥천은 지금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 시설비를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단설유치원이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는데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부족합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리고 지금 2실이 부족합니다.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을 완비해 놓고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고, 충주 예성초등학교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충주시의 저희가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은 금릉초등학교가 내년도에 개교가 불투명합니다만 금릉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예성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의 원아수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 단설유치원 전환을 갖다가 유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를 제외해 놓고 옥천은 시설 때문에 제외해 놓고 그래서 남성하고 서원만 요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본 위원은 남뭇지 않게 우리 단설유치원의 원장을 두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감으로서 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감으로서 원장으로 갈 곳이 없어서 참으로 애로를 많이 느낀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번 단설유치원 2군데도 단초를 달는데 크게 고무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을 기준을 좀 청구가 물론 학생수도 많고 인원이 많습시다마는 국한하지 말고 지금 아까 시설이 안됐다고 한다면 그간에 왜 시설을 거기다 안시켰습니까? 그런 책임도 있고, 또 원장을 내는 부분이 어차피 한울타리에서 별도로 이사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원장이 시설이 훌륭하고 좋아야 원장이 이름이 붙고 시설이 좀 없고 유휴시설이 없으면 원장이 안됩니까? 누가 봐도 원장님소리 안합니까?

그래서 나는 옥천에다 놔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충주에 한자리 놔도 원장은 원장이고 단설유치원이지 시설이 없다고 해서 원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설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 더 있으면 말씀하시고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할 것이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제가 삼양초등학교시설을 말씀드린 것은 요번에 저희가 4억 4,500을 계상을 했는데 그 시설 자체는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초등학교하고 그런데 거기에 유휴시설하고 자료실이 부족해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을 완비해 놓고 내년 3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 송대현 위원

유휴시설이 부족한 부분하고 원장을 내는 거하고 유휴시설이 부족하면 원장이라고 안부릅니까? 그리고서 보완하면서 내년에 오픈하면 되잖아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 송대현 위원

단독유치원사를 지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제안 조건이 뭐를 얼마를 유휴시설을 갖고 교실이 몇 칸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건 없습니다.

● 송대현 위원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하면 우리도 좋죠. 충주에다 10개를 지어도 그 조건만 맞으면 굳이 반대 안하지만 때로는 이 생각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한 바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9쪽을 우리 동료위원들 시간이 가는 걸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사립유치원 교단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학급이상 사립유치원 68개원에 컴퓨터를 1대씩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3학급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청원, 진천, 단양은 전무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학급이상인 아니라 3학급이하로 3학급 안되는 영세한 2학급이나 1학급 쪽에 컴퓨터를 지원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 너무 한꺼번에 전부 하면은 금액이 너무 커져서 우선 3학급이상을 금년 추경에 지원하고 다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3학급이상을 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아 글썽 그건 여기 계획서가 있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써 있어요, 요렇게. 그걸 과장님께 여쭙보는 것이 아

니라 기준을 할 적에 영세한 1학급, 2학급 영세한데부터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3학급이상으로 잘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학급이나 2학급 자리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말씀하신 것은 서류에도 다 있는 것지요. 일시에 다 못하니까 아마 68개교를 했는가 보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달라 이 말씀입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우선 3학급을 요번에 추경에서 예산에서 지원하고 다음에는 2학급 다음에 1학급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갈 작정입니다.

● 송대헌 위원

3학급이 아니라 3학급이상인니까 3학급, 4학급, 5학급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위로.

● 초등교육과장 정무

1대 지원하는 겁니다.

● 송대헌 위원

1대 지원하는데 우선 순위를 본 위원은 규모가 작은 데를 우선 순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쭙보는 겁니다. 의견을 묻는 겁니다.

● 초등교육과장 정무

1대 가지고 여러 학급이 쓰면 효과를

얻기 위해서 1학급에 1대 주는 것보다 3학급이상 되는 유치원에 우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1대라도 보급해주면은 사립 유치원에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학급수가 많은 데서부터 지정을 했습니다.

● 송대헌 위원

효율성이 더 크다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하고 우리 과장님 의견이 다르다는 쪽으로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저기 송위원장님 질의사항이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 송대헌 위원

아니에요. 좀 남아있는데 그렇죠.

● 위원장 진옥경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2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식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위원장 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몇 가지만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등교육과 소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수준별 성취도평가 프로그램개발 신규사업으로 2,900만원을 설정을 했는데 우선 한 가지 거기 주요사업 내용에 10학년 5개 교과를 고등학교 1학년을 의미하죠?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렇습니다.

● 송대헌 위원

고등학교 1학년 5개교과 국·영·수·사·과에 문항수 개발 및 문항탐재를 해서 활용하겠다 아주 취지에 전적으로 본 위원 찬동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준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이 성취도를 평가할 것이냐는 문항개발이 제일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그 일선 교육활동에서 많은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문제은행을 설치해서 수십만 문항들이 무엇을 쥔 것인가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탑재되어 있고, 거기서 평

가들만 작성하면 무엇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은행에서 빼다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의 부담이 덜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일선학교를 도와주는 문제은행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초가 되는 격으로 지금 5개교과 국·영·수·사·과의 문항개발을 한다고 아주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과거에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원을 중심으로 이 평가에 대한 문제은행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고 그 모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충북단위 도단위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일예를 들면 외국에서 영국같은 제도에서 어떤 문항 한 문항을 개발해서 탑재될 때까지는 그 목적을 바로 잰느냐 해서 문항을 개발한 사람이 문항을 제시합니다. 문항 제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재는 어떤 문항을 개발해서 그 문항을 과연 그 재려고 하는 것을 잰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 그 문제를 넣어서 실험을 합니다. 투입을 합니다. 거기서 통과율이 어떠며 그 재려고 하는 목표를 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긍정을 해서 긍정을 받으면 평가은행에서 그 문제를 사들여서 개인소요에서 문항으로 들어갑니다.

검증 단계를 거쳐서 통과율이나 그 문항이 지향하는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은행에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감히 문항개발이라는 쪽에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수준별 더군다나 수준별 성취도 확인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높이 평가하고, 우리대학 전문교수나 또 우리 일선학교의 체험이 많은 전문가나 또 연구기관의 종사자나 모두가 참여해서 아주 좋은 문장이 많이 일시에 100% 완성을 안해도 좋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한 단원도 좋고 한 부분도 좋고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축적된 문항들이 쌓여서 한 십여년 하다보면은 그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우리가 가장 앞서서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생각이 2,9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뜻에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보하시면서 이것은 꼭 성취되어야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 ● 교육국장 반장남

예. 142명의 평가문항개발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교과별로 몇 단계의 개발과정,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인터넷에 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에 각 시·도에서 개발한 자료를 한데 모아 가지고 다시 몇 번의 검토를 과정을 거쳐서 전국에 활용하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빼서 볼 수 있고 자기학습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국가하고 지방하고 같이 연계한 개발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을 봐주시죠

실업계고교 컴퓨터보급 계속사업인데 요.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2002년도 사업실적에 노후컴퓨터를 797대를 교체를 했고, 2003년도 사업계획에 노후컴퓨터 교체를 300대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자꾸 새로운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된 컴퓨터로 하는 것을 대 찬성하면서 단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노후 컴퓨터가 금회 97년도 분까지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초과물량을 다 교체하지 못하고 97년도 분까지 교체한다 지금 교체되는 그 컴퓨터가 그냥 폐기하고 마는 것인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가 지난해에 도 한 700대 요번에도 300대하면 1,000여

대가 되는데 이거 말고 또 교원들이 나오는 컴퓨터 교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연도가 지난 컴퓨터에 대한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가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컴퓨터는 세대교체가 빨라서 3년이면 현재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국가재정 형편상 5년 주기로 저희들 학교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컴퓨터 교체한 것은 교실로 들어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 초·중·고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기시키거나 이걸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터는 컴퓨터실에서 활용을 하고 노후된 컴퓨터는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 평소에 생활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체계획을 세워서 나오는 내용연수가 지난 나오는 실험실에서 두지를 않고 각 교실로 그래서 저 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을 가봤을 적에 우선 교실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영국을 가봤을 적에 교실의 구조라고 그럴까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실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부분을 사물함들이 학교구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뒷면을요. 3면이 물론 학생수가 25명 밖에 안 됩니다마는 벽의 3면이 이렇게 물건을 얹어놓을 수 있는 짜여져 있어요. 다이로 이렇게 거기에 컴퓨터가 쪽 들어서 있어요. 3면이 그리고 인터넷, 램 다 깔려있고 그래서 수시로 교육과 활동을 하다가도 뭐하면 가서 두드리고 또 쉬는 시간에도 만져보고, 근데 우리 현재 학생수로 봐서 교실의 공간이 과연 그렇게 폐기되는 컴퓨터가 뒤 교실마다 뒷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그대신에 거기에 사물함은 전부 다 복도로 나가 있습니다. 철제로 되어 가지고 복도로 개인 일인당 하나씩 복도로 해서 모든 교과용품이나 생활용품이 들어있고, 교실의 내면에는 3면이 전부 다 컴퓨터를 얹을 수 있도록 전부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대단히 바람직하다 지금 말씀드리는 매년 쏟아지는 700대, 300대 이런 부분이 꼭 컴퓨터실에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만지고 정보를 꺼내는 것

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업시간에도 바로 이동해서 내눈에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내고 활용하고 해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활용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 저 개인에게 들어와 있는 정보입니다마는 각 노인정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회들이 노인정을 만드는데 컴퓨터 시설을 하다보니까 노인들도 그 못쓰는 컴퓨터 대여섯대 구할 수 없느냐는 주문이 많이 와있습니다. 혹시 아주 전혀 못쓰는 걸 드리면 옥먹을 테고 좀 폐기가 되는 폐품이 되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 같으면 노인정 같은데 우리가 기증하는 것도 좋은 활용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말씀을 조금 드려 봤습니다.

####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알겠습니다.

#### ● 송대헌 위원

그 다음에 108쪽을 조금 봐주시죠.

108쪽이 학교과학관운영 쪽에 과학 쪽에 아주 많은 계획을 세워서 과학교육활성화 기본계획도 받아봤습니다.

예산도 요구되어 있고 5개년 계획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개념 중에서 거기 가끔 보면 현대화실험실설치라고 하는 것은 과학관에도 나오고 학교에도 들어갔고 현대화실험실설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화실험실설치라고 하

는 것이 지금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확보율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실험실하고 현대화실험실의 개념의 차이가 무언가 그걸 간략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지금 실업교육과장은 저희들 한 68명을 모아놓고 이 문제로 과학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모델을 물리실, 화학실, 생물실, 지학실 이렇게 4가지의 모델을 제시해 가지고 그 모델에 맞추어 가지고 물리실에는 뭐뭐를 집어넣고 실험기구를 뭘 설치하라고 이렇게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 모델에 맞추어 가지고서 그 모델도 A형, B형, C형 이렇게 쪼갬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교구를 다시 집어넣는 이러한 새로운 과학실험실습실의 모형을 현대화실험실설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제가 대충 여기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실험실에서 상주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 물리실험실이면

물리실선생님이 선생님마다 실험실을 가지고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아이들이 이동해 와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설명을 여기서 봤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은 새롭다는 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실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실험실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외에는 지금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실험 기구를 갖추고 실험교육활동에 실험 운영하는 실질적인 필요한 것은 어떻게 테마니 이런 말도 더러 있습니다. 마는, 아이들에게 실험하는 방법과 절차의 내용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지금도 실험실 물리실, 화학실 다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확보율이나 현황 같은 걸 여쭙보려고 했는데 새롭다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거기 과학선생님이 상주하면서 한다 과학선생님별 실험을 갖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잘 파악을 못했나 해서 여쭙 보는 건데.....

● 교육국장 반창남

또 하나 이제 달라진 것은 필수실험 단원을 해 가지고 매 실험요소마다 실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합쳐서.....

● 송대헌 위원

국장님 저도 과학생물선생님입니다. 필

수실험 항목은 전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요런 것은 반드시 실험을 하도록 필수실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새로운 부분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보면 특이하다고 하면 아까 대로 선생님이 상주할 수 있는 과학실을 하나씩 가지고 거기에다가 실험실 기본 필수기자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든 기준단위가 있으니까 기준 시설령이 있으니까 그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 못한 것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학이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오랫동안 컴퓨터교육, 정보화교육에 묻혀서 과학교육이 정말로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보화가 아무리 되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망막하다는 것, 기초과학교육 기초수학교육이 없이는 정보화교육이 아무리 되어도 교육은 정보화로써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200억이나 300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는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봤고요.

그 다음에 122쪽이에요. 122쪽 전산보

조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 겁니다. 채용기간이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가하는 것을 간단히 여쭙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이렇게 임용을 했는데 예산이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지고 시·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 그래 가지고 6개월 반년치만 뭐 이렇게 활용하고 또 내년에는 뭐 1년이 아니라 6개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연단위로 임용할 건가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글쎄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서 1년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1년을 로테이션으로 이 학교 찾다가 그 다음에 예산이 된다면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6개월 하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6개월 한다는 것은 좀 관리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문제가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좀 봐주시죠.

충북교육사료관설치 신규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요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김진성**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저희들 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각종 역사적인 그런 사료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발간된 교육자료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후에 찾아보려고 했더니 전혀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이걸 모아서 한자리에 모아서, 향후 교육에 활용도하고 또 앞으로 생기는 각종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보관, 보존하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사업을 요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송대현 위원**

예. 아주 저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압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전한밭교육박물관도 가보고 제주도 잘되어 있어요. 제주도 탐라교육박물관도 가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뀔 적에 동판으로 새겼던 국민학교 동판이 다 옛장사가 가져가 버리고 구할래야 아주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게 아주 산 역사고 전통인데 이렇게

우리 보관문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 늦으나마 우리가 이룬데 착안해서 사료라든가 자료 가치가 있는 부분 이렇게 앞으로 사료관으로 설치해서 한다고 하니깐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교육사료가 우리 뒤에도 이어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내용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65쪽요. 신규사업에 교육정책개발 기획관리과에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개발 3개 과제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3개 과제 그 분야 구체적인 건 아직 과제 개발해야 되니까 분야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3개 분야가 있다면 뭔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책을 개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구비가 없이 단순히 담당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내지는 일반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정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처리하도록 지금 모든 방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어떤 교육정책을 개발한 경우에 어떠한 테마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전

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최소한도 예산을 좀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과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과제가 2,000만원 정도 한 과제가 2,000만원 정도이면은 한 과제를 큰 걸로 선택을 해서 선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쇄물이라든가 아니면 발간비가 좀 다소 포함됩니다. 그렇게 돼서 요걸 저희들이 결정을 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제는 각과에서 주로 초·중등교육업무 중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 중에서 정말로 이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과제는 앞으로 여러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 ● 송대헌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을 설정해서 요구할 적에 최소한도 충북교육을 분석을 해 봤더니 여기 분석팀들 있잖아요. 교육행정분야라든가 인사분야라든가 재정분야라든가 교육내용분야라든가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정책적으로 우리 비전문가만 가지고는 이것을 개발하기는 어려우니 교수팀이라든가 자문단을 구해서 이 과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테마

는 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씩 주시오. 이게 상식이거든요. 예산 올리는데 A, B, C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연구해 봐서 뭐가 나올 테니까 각과별로 해서 연구해서 그때 한 서너개쯤 하다 보면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교육위원님들 과제 서너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할테니 예산 좀 주십시오.

그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행정이나 충청북도교육을 움직여 오면서 이런 분야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우리 힘 가지고 안되니 우리 참 이런 정책과제 개발연구팀을 만들어서 해야 겠다고 하는 최소한도 분야만 물었잖아요. 어떤 분야를 정책과제로 연구하시려고 하는지 분야만 물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도 안했어요. 물론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안다면 정책과제 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그것도 설정 안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 봐서 각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그 분야를 연구 하겠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그 문제 제가 보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학교경영 실무편람을 전제 52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 과제만 했는데 금년에 그중에 30개 과제까지 마치고 내년에 52개 과제를 전부 마치겠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얼마쯤 되나 그래서 대충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 과제까지를 금년에 학교 경영 실무편람 그걸 만드는 작업을 요 과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력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4개의 전문가 혹은 대학교수를 활용해서 그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송대헌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 교육국장 반창남

있다 끝나면은 저희가 바로 설명자료를.....

● 송대헌 위원

아니 자료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한 8,000만원 주시오 한다고 하면은 과제를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과제를 돈을 달라는 요건은 갖춰져야 될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한 대로 30개 과제라는데 그 나머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에 한 서너개 과제는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의제를 하기 위해서 선정한 거라던가, 이것만 봐 가지고 내 깊이 안봤습니다만 교육정책연구개발 3개 과제 하길래 최소한도 3개 분야는 설정해 놓은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에 주신다니까 3개 과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 다음에 197쪽을 좀 봐주시죠.

시설과 소관이네요. 교육환경개선에 아까도 김남훈 우리 위원님도 그 말씀을 지붕방수가 나는 다른 차원에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수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274.5실이 들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추경 내용에 지붕방수가 235.5실이 다시 올라왔는데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에 방수문제는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즉각 해준다 비가 새니까 안해 줄 수 없죠. 저도 대찬성입니다. 비 새면 바로 고쳐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절차를 조금 여기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설립할 적에 학교에서 비가 새는데 올리라고 하면 학교장한테 내가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학교 비 새는 건 하 루아침에 12월달이나 10월달에 끝난다면

하루아침에 새는 게 아니라 지난여름에 벌써 알았을 겁니다. 해당교장이 아 우리 학교 이렇게 비가 새는구나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을 달래서 방수를 해야지,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273.5에다 거의 맞먹는 숫자가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기부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언뜻 든다 말이에요. 아까 사실은 이 방수문제는 들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참 처리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274실에다 그와 비슷한 숫자가 지금 또 추경에 세우는데 이런 경위가 예산 선정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려서 먼저 당초예산을 짜보니까 돈이 요거밖에 없어 가지고 방수고 새고 말고 하니까 뒤고 뒤로 밀어놨다가 요번 추경이 생기니까 그거 못해준 거 요번에 해주는 것인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올라오기만 하면 즉각즉각 해주는데 누락이 되어서 학교장이 나태해져 가지고 자기학교 비새는 것도 몰라 가지고 보고를 안한 것인가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당초에 이 방수부분이 지금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하절기에 우기에 많이 발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본예산이 7월내지 8월달에 예산이 편성되

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의 누수가 됐던 것은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거처서 겨울이 지나고 보니까 눈이 녹든가 봄비가 오거나 아니면 가을비에 보면은 또 그때 누수가 생기는 것들은 대개 3월달부터 편성되는 추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차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야 합리적이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학교측에서 볼 때에는 방수가 참 예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정말로 새서 얼룩이 져야 그때서 현장에 올라가 보고 정말로 왜 새는가 이렇게 보다보면 이게 시설이 낙후됐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주로 방수가 되기 시작해서부터 파악되는 것들인데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거와 같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대로 곧바로 그건 수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청주교육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여름철에 오면 비가 새면 득달같이 보고가

옵니다. 여기 비 새니까 교육장님 와보시던지 관리과장님 와 보십시오 하면 비 샌다는데 안가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수를 하는데를 알아둬야 예산을 잡으니까 나가 보시오 시설과장이 나가 보시오 바로 나가 봅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예산 있느냐 말이야 없으면 교육감님한테 쫓아가서 예산주시오 비가 새서 안 됩니다. 말이야 이렇게 우기 7월, 8월 지나가는 것이지 이게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갑자기 국장님 말씀은 6, 7월경에 하다보니까 그 뒤에 들어 왔던 부분은 그냥 놔둔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모아져 가지고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할 수밖에 없다는 예산편성의 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가 새고서는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장했던 지역으로 봐도 비가 왔을 때는 벌써 예비비를 빼오든 뭐를 빼오든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당초 예산과 맞먹는 숫자가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본 겁니다.

이미 예산이 서서 방수가 됐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시설관리를 해서 내용연수가 안지난다든가 하자보수 할 부분은 하자보수를 받는다든가 책임규명 할 것은 책임규명 해서 방수가 안 되는 게 제일

첫째고, 방수가 된다면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너무 장황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하고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선수합숙소 9교가 나와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천안의 참사로 인해서 화재참사로 해서 전국적으로 합숙소를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아까 국장님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다만 가지고 있는 물량 가운데 아주 일부분만 신·개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모양이 있는가 전혀 나머지 부분들은 화재나 개축이나 신축할 그런 소지를 갖지 않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원래 선수합숙소를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일제 점검을 했었습니다. 지금 평체과에서는 체육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1차로 했고 시설과에서 2차례의 현장을 갔고 그 외에도 총리실에서 안전진단 전문가가 포함된 직원들이 와서 조사를 해 갔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파악하는 지금 합숙소가 총 69개교 71개소인데 이

중에서 컨테이너 합숙소 보유는 3개교 4개소, 조립식 건물에서 쓰고 있는 게 19개교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하고 노후된 조립식 건물합숙소는 우리가 지금 폐지를 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교에 대해서 1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앞으로 계속 시설이 열악하거나 또 개소의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요것이 한 가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재 천안에도 화재사건인데 누전으로 앞으로 화재원인이 누전으로 판명이 될 때에는 그 누전을 점검하는 학교하고 계약한 공사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그런 쪽에서 진단결과 다하고 뭐 한걸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차단기 잘 안떨어졌다든가 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불성실한 업체하고는 계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방화점검을 상당히 전문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꾸 화

재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인화가 아닌 경우에는 주로 소방서나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할 때 화인을 추정으로 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화로 보통 누전으로 추정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업체하고 책임을 묻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를 들으면 금천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 1년에 한 3차례, 4차례정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전이 추정되는 걸로 아마 이렇게 화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는마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방화의 원인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참 많이 하시고 이와 같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송대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거기 첨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신설설립에 대한 소요예산 그 중에서도 뭐냐 하면은 설계비 쪽에 5억 4,000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판단을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 거쳐서 도의회에 통과해서 사업이 확정된 후에 예산이 따른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 우리가 했지만 집행청의 간부께서도 잘 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송대헌 위원님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업승인도 않는 것이 예산부터 올라와서 그걸 안쓰겠다 해 갖고서 사실 제가 그 문제는 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만약 사업승인을 안냈을 경우에 설계에 들어가서 설계비를 사용했을 때 그게 결국은 공사도 안하는 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손실문제를 개인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때, 그것은 결국 가지고 있다가 승인난 후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갖고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참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쓰고 안쓰고 이거보다도 이게 조금

하고 또 이렇다든지 하면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02년에도 20억이라는 돈을 교부받았던 말씀도 다른 얘기 속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건 3대 교육위원 때도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었지만 왔는데, 그 동안에 충분히 교육문화회관을 설립 승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나태하고 해태한 게 아니냐 왜 절차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그걸 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항시 요구만 한다면 말입니다. 일주일 후에 공고하고 일주일 후에만 개최되어 갖고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 승인을 안하고서 지금에 와서 거꾸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떠나 갖고서 뒤죽박죽 한다면 이건 결국은 아무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법도 어겨 갖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얘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쪽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러면 할 수 있는 승인을 말입니다.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지금에 와서 승인을 찍혀놓고서 예산부터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송대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질의답변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비를 올린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본사업 계획을 맞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합리적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저희들의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의 부지를 사용하고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고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이것을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금방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맞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밀레니엄타운에 세부계획이 도자체에서부터도 상당히 그것이 확정인 당초에 계획이 변동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쓸것이나 유상으로 쓸것이나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이 좀더 들어 갈 수가 있고 적게 절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이 지금 국고에서 따오는 것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따

기 시작해 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40억만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이 당초 연도에 한 100억 정도를 끌어올려다가 끌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계획을 세부적으로 교육위원님들한테 올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공문 보내서 3월달에 도에서 7,000명을 써도 좋다고 최종 공문이 왔고, 그런 다음에도 지금 재정의 규모가 지금 타당성과 동시에 타당성이 어느 정도 그것이 된 상태에서 아웃라인 그려진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계획을 올릴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러면 왜 설계비를 올렸느냐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하는데 60일내지 90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0일내지 90일 이후에 설립계획을 바로 도교육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다보면은 3개월 내지 4개월 소요될 텐데, 그때 다시 또 추경을 올리면 12월달에나 설계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설계비를 미리 확보를 해놓고 승인이 되면 집행은 하자 이렇게 되면은 사업기간이 그래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은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법을 어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말해서 위원님들이 예산권 예산



심의권이 있는데 예산심의 했다고 그래서 법 어겼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법 어기면 징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어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요것을 합리적으로 시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설계비를 넣었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사업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올리기 전에 설계서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죄송하기 짝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삭제해도 괜찮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예산을 일단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깎아도 좋다는 얘기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걸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시간을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계획 승인 관계는 아까 그 동안에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의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해서 승인 받으려면 첫째가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를 확

보해야 됩니다, 우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20억 금년초에 20억 해서 특별교부금 4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위치하고 부지를 갖다가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는 산남동에 하려다가 밀레니엄타운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청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금년 3월 28일날 도청에서 그 밀레니엄타운 부지내에 7,000명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불과 3월 28일날 그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설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되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설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3월 28일 받았으면 바로 교육위원회 소집해 갖고서 승인 받을 수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아닙니다.

그건 설립계획을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적에는 첫 번째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조사하려면 최소한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면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하게 됩니다.

● 이기수 위원

안과장님 말씀은 말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만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그러면 타당성조사에서 승인받는 일과 타당성조사도 안됐을 때 설계 들어가는 일과는 어떤 게 더 앞섭니까?

그거는 논리에 안맞아요. 결국은 타당성조사 하고서 바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먼저 순위인 얘기인데 타당성조사와 들어가면서 여기서 설계가 들어왔다는 얘기로. 먼저 할 일을 짓혀놓고 그 다음 단계를 이쪽에다 올리는 얘기는 아예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설계승인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설계는 더 못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다리도 더 먼저 뛰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논리에 안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 시간이 걸려 갖고서 사업승인 못하겠다 타당성조사에 그 단계에 한 단계를 더 댄 단계를 여기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이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전부 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경을 하다보면은 기일이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설계비만이라도 좀 심의를 해 주시면, 나중에 설립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이것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그래도 한 5,6개월 절약해서 쓸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설계를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교육위원님들이 우선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의 승인을 안해주고 신설계획 자체를 승인을 안해준 상태에서 그 승인이 만나면 우선 재정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됩니다. 본예산이 아무리 교부금으로 와 가지고 세입에는 와 있지만 세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되는 거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계를 그만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줬을 때부터 하자면은 다시 그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은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 **고규강 위원**

가만 있어요. 저 한마디만 그 문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이걸 심도있게 토의를 좀 했는데, 우리 이기수 위원님이 정확한 질문을 지금 해 주셔서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설계비 하고를 넣긴 넣는데 절차상 잘못됐다 절차상 잘못된 건 당연한 얘기이니까,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계획서를 타당성조사 끝나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해하기에 이런 시급한 문제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지, 잘못됐지만 그때에 사용승인까지 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러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자꾸만 서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계획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서 도의회에 통과되려면 5월중순쯤 될 겁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하다 보면은 한 6월쯤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전문업체하

고 해서 그 분들이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고서가 나와야 타당성이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어느어느 이런 학생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겠다 재원은 어느 정도 타당하겠느냐라는 아웃라인이 나오면은 나오는 즉시 교육위원님들한테 그 설립계획을 올리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에 사업승인을 얻기 위한 준비단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서 아직 못올렸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또는 예산은 늦다 뭐냐 하면 설계비까지 예산 편성 했다는 얘기는 타당성조사는 100%로 되는 걸로 보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요건을 갖춰서라도 교육위원회는 소집해 갖고서 추경하기 전에 3월 28일 왔다든지 하면, 참 그때서부터 일주일이면 일주일 교육위원회 소집해 갖고서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당연히 거쳐놓는 절차를 오늘이 오기 전까지는 3월 28일부터 오늘 4월 거의 한 달여 날짜가 지났는데 말입니다.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고수영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고수영장은 과거에 독립적으로 경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인원도 축소하고 사실 농고에다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60억 도에서 35억을 지원하고 우리 자체예산 교육예산 25억을 플러스해 갖고서 60억을 가지고서, 지붕도 세우고 또 뭐냐 하면은 다이빙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개조를 해 갖고서 참 완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60억을 들여 갖고서 제대로 해 놓든지 하면 청주시민들이 레저시설로 사용하고 이렇게 갖고서 시민들이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해 갖고서 시민복지를 위한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참 말씀하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걸 했을 때 60억을 들여 갖고서 전국체전을 내년에 개최하고 그때 수영장을 우리가 사용하게끔 그런 목적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계속 적자가 나고 말입니다. 또 돈먹는 하마 마냥 이걸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래서 내년 8월말까지는 완공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치루고난 다음에 활용방안이 어떠냐 질의하셨는데, 일반은 6만 2,000원 정도 또 학생은 4만 1,000원 정도 그렇게 학생들이 6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2번 훈련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일반인 혹은 다른 학생들 청소년들 이렇게 활용해서 연간 저희가 생각을 계상을 해 보니까 약 6억정도 그러면 인건비하고 거기 여러 가지 가스대니 전기난방비 이런 거 하면 3억 그래서 3억의 수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또 다시 시설보수도 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 해서 인건비 하여튼 물건비 합쳐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저희가 사업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운영관계는 어떻게?

● 교육국장 반창남

운영은 현재 2명이 농고에서.....

● 이기수 위원

아니 농고에서 관리하는데.....

● 교육국장 반창남

현재 농고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완공이 되어서 하면은 11명의 직원이 필요하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직원이 뭐뭐냐 하면은 일반 행정요원 1명, 기계실 요원 2명, 매표 1명, 안전요원 4명, 탈의실 2명, 간호원 1명 그래서 1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질의는 충주하고 제천이 또 몇 년 전서부터 수영장을 세워 갖고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요구를 계속 오는데, 그러면 청주를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 대한 요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그래서 그건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과 충주는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자금을 염출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또 내년쯤 해서는 충주와 제천도 같이 그런 차원에서 건립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은 지금 설명자료 13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현암초등학교 로라스케이트장

에 4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수하기 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예산.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4억은 지자체 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입니다. 교육청의 자금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체전하고 소년체전을 2년 동안에 걸쳐서 치러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50명 규모의 2층 관리실까지 선수합숙소, 관리실까지 짓고 나머지 홀 규모도 전국체전 규정에 맞게 그렇게 대보수하고 수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로라스케이트장 지금 현재 선수만 쓰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반창남

네.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빌려줘 갖고서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나온다면가 그건 지금까지.....

● 교육국장 반창남

아직까지는 활용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고서 1년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쪽은.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그것은 청주시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위원장 진옥경

이기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예. 예.

● 위원장 진옥경

계속 하시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럼 쉬었다가.....

● 위원장 진옥경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쉬었다 잠깐 몇 가지 안남았으니까.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보면은 조도와 방수 문제가 있는데 방수문제는 송위원님이나 김남훈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다시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도가 142.5실에 4억 9,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준조도가 320룩스.....

● 교육국장 반창남

350룩스입니다.

● 이기수 위원

30룩스가 더 올라갔습니까? 저는 320룩스로 아는데. 300룩스?

예. 예. 그래서 전에도 보면 조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서 계속 올라 갖고서 300룩스까지 되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조도 미달인다가 있어 갖고서 참 질의할 때마다 행정질의나 또는 이런 기회에 제가 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142.5실이나 되는지 전에 보면 거의 다 뒀다고 걱정하실 것 없다고 이렇게 그 전에 시설과장인 오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조도가 180룩스에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

렇게 돼 갖고서 결국은 300룩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나 더 남은 얘기입니까? 이게 4억이나 142.5실이 요번 추경에 반영됐다는 걸 본다면 말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조도 개선문제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시야를 좀 상당히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보통교실을 제일 먼저 했고 보통교실 내지 관리실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일반 특별교실이 나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부서를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3.9%가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로 통·폐합대상 학교라든가 또 금방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시설을 금방 부서야 될 그러한 교실,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실습실 중에서도 조금 본관하고 거리가 있어 가지고 시설공사비가 많이 들거나 요런 것이 조금 우선 순위에서 조금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부분 3.9%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히 하고 어차피 개축대상 건물이라든가 통·폐합해서 쓰지 않을 건물을 제외하고서는 저희들이 아마도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얼마나 더 남은 얘기입니까? 3.9%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실수로는 640실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로 실습실내지 아까 마냥 통·폐합할 요런 내용들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전에 조도문제를 제가 질의했을 때 다 될거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회의록 답변을 전에 한 적이 얼마 안남아 갖고서 거의 다됐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항시 그만한 실수가 생기고 말입니다.

예. 예. 말씀해 보세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조도개선 현황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현황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 개축대상이라든가 조도개선할 필요가 없었던 실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3.9%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9%에 지금 이대로 했을 경우에 요 예산 4억이 투자되고 나서도 잔여 조도 미개선 시설이 3.9%라는 얘기입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실수는 몇 실입니까? 이게.

● 시설과장 안세열

640실입니다.

● 이기수 위원

640실 그러면 이건 학생들이 공부안하는데 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잠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축대상 건물이라든가 철거예정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축을 하게 되면은 개축사업과 아울러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할 사안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 이걸 먼저 과장님도 전에 질의했을 때 거의 다 됐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거의 다 됐다고 답변을 받아 갖고서 나는 이 조도문제는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억에서 142.5실이 또 올라오고 거기 다 또 3.9%해서 640실이 또 남았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되는 얘기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예산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요즘 학생들 눈에 관한 사항인데, 1룩스라는 얘기는 1축광을 1m에서 쏘인 그 밝기를 1룩스라고 보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180룩스에서 300룩스까지 상향됐는데 앞으로 가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말이야.

● 시설과장 안세열

그래서 기준이 상향이 되면.....

● 이기수 위원

기준 상향이 되면 그때는 100% 또 부족한 상태예요. 말이에요.

이런 건 즉각즉각 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학생 눈의 건강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다른 예산에 우선해 갖고서 일시에 해결해 갖고서 100% 완공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걸 우선해 갖고 배정해 갖고 사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남아 갖고서 조도문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예산편성에 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시설과장 안세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실은 개축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추경이든지 뭐 내년 예산이든지 확보해서 조도문제는 다시 좀 만나오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1에 지역인적자원개



발에 대한 예산 하나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인적개발시범 도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랑할만한 일이고 한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우리교육 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지원됩니까?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범 도로 지정을 받아서 국고 2억을 지원 받았습시다. 그래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연구보고서를 금년 8월까지 내게 되어 있는데 충북개발원에 도청에 있는 충북개발원에 저희가 연구위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2억 중에 1억 3,400에 낙찰이 됐습시다. 그래서 6,600이 남았어요. 그 6,600하고 조금 저희가 뭐 집기사고 해서 200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6,620 작년에 2억 중에 남은 금액을 지금 요번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 4월 28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때 도청에서 우리 관계 대학하고 연구소 뭐 노동청 여러 가지 기관이 28개 기관이 모여서 1차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국장님이나 그외 집행청 간부님께서도 교육예산을 긴축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실히 모르고 혹시 이게 선정되어 갖고서 국가에서 전액을 보조하지 않고서 우리 교육예산을 잠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제반 경비도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갖고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 그걸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진행상황을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이니까 보고 좀 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반창남

오늘 오후에 소위원회가 끝나면 즉시 저희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페이지 149에 공립·사립유치원지원원칙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참 많습니다. 공립유치원도 많고 이런데 국가예산을 자기들이 보조받기 위해서 유치원들을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공립·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원칙이 서져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원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독립유치원사로 하는 문제가 이 문제도 참 상당히 유치원에서 관심거

리가 되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뭐 인원수 이런 것보다도 인원수는 더 많은데 그 쪽에 시설이 안돼 갖고서 못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수는 많으면서 시설까지도 불이익을 받았던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이 더 많으면 시설이 나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일텐데 그 인원수는 더 많은데 시설만은 더 열악하게 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못 받은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독립유치원사 문제도 인원은 더 많은데 너희는 시설이 못해서 못주겠다 한다면, 이것은 1차, 2차 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까요? 그건 사실 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논리가 공색한 얘기가 되요.

왜 그럼 우리가 인원이 10명밖에 없는데 우리 20명인데 지금까지 시설이 10명인데 보다도 20명된데가 시설이 못하다는 얘기는 재정적인 지원을 더 크면서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보면 독립유치원사 지정문제도 우리는 시설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이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까 시설 때문에 지정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공색한 변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공·사립유치원간에 지원규모는 사립은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치원생 이 학생들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일인당 1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립이 먼저 교단선진화사업 같은 것은 공립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립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그래 아까 보고드린 대로 3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에 컴퓨터 1대씩 140만원씩을 지원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독립유치원 이 문제는 교육감님 생각이 충북에도 유치원원장 그러니까 교장급의 원장이 15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 3명을 하고 연차적으로 2,3년 안에 15명까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기본 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별 안배라든지 또 인원수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차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기수 위원

그래서 그걸 독립유치원사 설립이라든지 일단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은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규정이

라든가 뭐가 되어 될 겁니다.

떡장사 떡떼어 주듯이 그럴거다 해 갖고 이렇게 주어 갖고서는 배분받는 측에서는 상당한 저항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배분이 공정한 배분 속에서 이루어져 가지고서 누가 보더라도 야 옳다 이 원칙에는 수긍할 수 있어야 되지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공평하고 하계끔 원칙을 정해 갖고 배분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독립유치원사 문제는 그것도 내가 지적한 부분의 하나지만은 내가 청주·청원을 중심으로써 태어나고 여기서 지역구에도 한 적도 있고 하지만은, 농촌교육을 뭔가 성실하게 하고 좀더 잘되기 위해서는 사실 도시보다 농촌쪽에 투자를 해야 되요.

청주 그렇다든지 하면 청주 스톱해 놓고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 충주 쪽에다가 투자를 먼저 설립해 갖고서 그쪽에다가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한다든지 하면 농촌교육이나 지방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후에 그러면 다시 청주에다가 북부에다 하든 서부에다 하든 간에 해야지 이쪽에다만 청주에다만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했다면 그런 측면도 상당히 얘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감사합니다.

● 이기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충북교육사랑봉사단 이거 상당히 의미있고 사실 평생을 교육계에 봉사하시다가 퇴임하신 선생님들을 이용해 갖고 다시 우리 2세 교육에 남은 정력을 쏟게끔 할 수 있는 제도라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지금 우리 청주에 중앙도서관 여기서 금빛봉사단 또 있습니다. 여기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만약 한다면 양쪽을 합쳐 갖고 일원화시킬 이런 용의는 없는지 차별할 용의는?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해서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초·중등교육을 참 알차게 시키는 것, 질적수준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봉사활동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 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현재 청주, 청원은 금빛봉사단이 있고 나머지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적자원도 개발하

고 평생교육의 활성화 그래서 나머지 9개 시·군에도 평생교육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별로 1,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 충북교육사랑봉사단은 도교육청 산하에서 관리하게 되겠죠.

● 교육국장 반창남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그것을 예산을 주어 가지고 금빛봉사단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의 사랑봉사단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금빛봉사단도 우선 작년에 규모가 90명인가 내가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 갖고서 청주, 청원에 주로 봉사하게끔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도 계획이 시·군전체 11개 시·군에 다하려고 계획을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원화 비슷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한쪽에서 통합해 갖고서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잘 검토해서 갖고서 통합의 효율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쪽하고 같이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연계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네트워크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뭐니까 소요를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어느 지역은 교육감님이 찾아다니는 교육감실 이렇게 해 갖고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 사업도 있고, 또 한 가지 집행청의 간부들이 생각해서 갖고 편성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갖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책임자가 편성할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소요예산은 밑에서부터 소요판단을 해 갖고서 고루 가게 편성돼야지, 어떻게 본다면 이걸 고루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테니까 그런 쪽을 잘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지금 편성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은 방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

성할 때 일단 세입 전체 재원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지역교육청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해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받아놓고 사업별로 시설사업이면 시설사업별로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별도지침을 받고, 또 과학이면 과학분야 쪽 받아 가지고서 나중에 저희 과에서 조정을 할 때 1차로 조정을 하고 다시 윗분들한테 가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요구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 이기수 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거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문화회관 따오는 것도 어떻게 해서 더 따와야 되겠다 이런 고심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교육위원들이 말입니다. 교육재정투자위원회에서 각 교육청에 시설비를 아마 보고를 받아 갖고 전부 합쳐봤습니다. 3조 5,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조 5,000억인데 장관이 특별교부금으로 가는 게 1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조를 가지고 있다면 3조 5,000억 시설에 1조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 누가 얘기를 하면 딱 떼어 주듯이 주는 얘기에요. 고루 분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권에 로비 잘하는 큰 도 이런데서는 이게 멍치로 가고 말이야 열악한 인재가 많지 않아 갖고서 그런 예산부서든지 그런 부분에 적게 가 있는데서는 적게 배정 받는다면 이게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산 이걸 정말 고루 분배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서 더 와서 얘기하고 어디 가서 로비하고 어떻게 해서 더 주고 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정말로 공정하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들은 말입니다. 장관 그 1조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이야 줄여야 됩니다.

시설비 전국의 3조 5,000억 중에서 1조를 가지고 있다면 몇 %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식으로 고르지 못하고 배분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 중에 재정분과에서는 그걸 앞으로 교육부와 계속 건의하고 그럴텐데, 혹시 우리 충북교육 예산도 그와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밑에서부터 받아온 자료를 가지고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갖고서 배분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운동부 합숙소에 관련한 예산들이 여기 저기 있는데 지난 천안합숙소 문제가 불어지면서 4월 1일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체육담당과장 회의에서 초등학교 상시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숙소는 계속 보수라든지 중·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고등학교가 적당한 기간만 실시하는 그것에 해당되는 합숙소 중·개축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점차 합숙 자체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국과 함께 하고 있는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교육국장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체 합숙훈련을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방학중에 타 시·도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그네들이 기거할 장소가 없다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합숙소를 임대해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기 1운동 차원에서 기왕에 교기로드가 정해진 예를 들어서 세광고등학교는 야구, 기계공고 야구 이러한 특성있는 운동부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의 특기도 신장시키고 도의 명예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그러면 합숙소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반창남

합숙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진옥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와 함께 나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야영장에서 예절교육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예절교육 교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주로 여자만 여학생만 지금 들어오게 되는지?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학생만 집어 넣었는데 남학교하고 여학교하고 같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같이 넣는 기도 있습니다. 몇 기에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혼합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그런 관점에서 여성만의 예절을 강조한다든지 교육을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더 열린 시각에서 남학생들의 어떤 예의나 이런 것들도 함께 하시고, 전통적인 그런 답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요사이 현실에 맞는 그런 예의나 이런 것들로써 학생들의 그런 어떤 거부감 같은 것들을 자아내지 않도록 좀더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예산과 함께 더불어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진옥경

또한 문단은 학교역사 찾기가 각 지역 교육청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폐교학교 실태같이 위원님들과 가서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 많이 느끼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참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학교를 보고 격려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예산을 보면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은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문단은 학교역사 찾기가 있고 각 지역

교육청의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쪽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문단은 학교역사 찾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대충 이해는 하셨겠지만 지금 저희 도내에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폐교한 학교가 약 207개 학교입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8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폐교되고서 자꾸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교육자료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연말에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자 결정을 해 가지고서 금년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단은 학교의 정말 역사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다 정리됐을 때 이걸 책자를 발간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는데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자료수집에 대해서 솔직히 교육청 직원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지역교

육청별로 그 추진위원회를 임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위원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시냐 하면 교육계에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들 또는 그 지방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해서 추진해 보니까 하루식사 접대해야 되고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당 내지 그런 식사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리됐을 때 책자 발간하는 겁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시·군별로 차등을 둔 것은 폐교학교 수가 많은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데는 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 ● 위원장 진옥경

저는 이런 부분에 홍보부분에 예산들이 고르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무엇을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110만원씩 각 교육청마다 6개, 8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활동홍보, 회의진행용품 이런 것에 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여쭙 보고 싶습니다.

####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홍보비가 11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역교육청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일간지에 게재하는 홍보비용인데요. 요 제도가 종전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까마는 종류는 학교별로 해서 지역교육청하면 예를 들어 청주교육청하면 청주교육청의 교육장님, 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교장선생님들 이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 온 것이 종전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감사원감사에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교육청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지역교육청 예산에서 지역교육청시책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아 가지고 지역교육청별로 홍보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 ● 위원장 진옥경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 아닌가요?

####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종전에는 학교별로 해서 분담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시정권고를 받아 가지고 지역교육청예산을 계상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 ● 위원장 진옥경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나 교육청에서 하



나 그것을 일간지에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함을 쪽 낸다든지 이런 교장선생님 성함이 나가던 것이 교육청단위의 교육장 성함이나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교육장 성함은 안나갑니다. 위원님.

● 위원장 진옥경

그런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그런 혹시 성격이 아닌가 하고 한번 여쭙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역교육청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정책부분에 대한 연구도 송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은 방향조차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돈을 제대로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들의 학교현장을 바꾸어 나가는데 실질적인 그런 쓰임으로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조차도 지금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자료를 그냥 이런 종이에다 인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표라든지 선언이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몇 구절의 말로써 축약하는데 이런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답은 학교역사 찾기는 자료수집에는 굉장히 치중을 하고 지역의 어른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고 그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것을 교육홍보라는 이런 분야로써 책정을 하고 각 지역교육청마다 지금 한 800, 900만원 정도의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또한 여기 지역교육청의 회의진행용품을 따로 책정해 가지고 쓰인다든지 혹은 이런 무슨 전시회의 아치를 150만원자리 아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교육적인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전시성의 그런 목적이 강하게 들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청 집행청측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 어디 감사에서 지금 이것을 지적 받았을 때는 그것은 그만큼 교육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그런 언론 일종의 지금 언론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그걸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랬더니 언론을 뭐랄까 일종의 회유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써 일간지에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 따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시중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 받아서 지금 각 교육청에다 홍보비용을 이런 식으로 문닫은 학교역사 찾기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교육활동 홍보.....

####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홍보활동은 문닫은 학교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감사에서 얘기 나왔던 사항은 방법적인 사항을 권고를 받은 거지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폐지하도록 권고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에서 판단해서 각 시·도나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방법적인 면에서 종전에 교장선생님들 이름이 쪽 나열되어 갖고 학교를 분담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집행 하는 것이 좋겠다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 ● 위원장 진옥경

그 학교에서 그 홍보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 ●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항을 권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과성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들이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제 위치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꼭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사업의 효과는 안하는 거보다는 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에 그 사업을 널리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개량화 되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100만원짜리 광고를 내고서 얼마나 효과를 거뒀느냐 하는 것은 수량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 위원장 진옥경

또 하나는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유아교육의 특수교육의 보조원을 쓰는 것이 5명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다른 지

역에서는 어떤 지자체의 예산이라도 좋게 이렇게 해서 인천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시범적으로 이것들이 많은 숫자가 보조로써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다른 제주도인가 어디 한 군데만 이것을 만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보조교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금 이것을 겨우 다섯 분을 각 지역에 청주 1명, 음성 1명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다섯 분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2007년까지 이것을 아주 힘있게 실천해나가겠다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크게 나간 그런 부분의 우리지역에서는 굉장히 아주 소극적인 그런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홍보비용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이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조금 해 보면서 제가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또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 하는 부분들은 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는 해 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범적이고 양질의 재료들과 이런 것들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위원님들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졌습니다.

또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위원들로서 교육적인 판단을 가능하면 해 보려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부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타 지역에 가서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문화회관이 우리지역에 굉장히 학생회관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모두들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돌아오신 그런 끝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고심을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청은 저희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어 주고 함께 이런 것들은 머리 맞대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이런 동반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립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되묻고 저의 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사 성영웅

제가 2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습니다.

평체과 소관인데 지금 학교수가 447개에서 지금 급식하는 학교가 443교거든요. 거의 100%에 가까운데 직영하는 학교가 396개교로써 학교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학생건강이나 조리활동 과정에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HACCP을 설치한 학교가 몇 되거든요. 상당히 조리사나 이분들이 일하는데 또 어떤 안전관계에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단위에서 아이들의 급식의 안전성을 위해서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질의합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HACCP제도는 지금 전 급식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음성의 두 학교처럼 종합관리시스템 자동관리시스템 그런 것을 더 확대보급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간사 성영용

그게 아니라 HACCP이라는 기구가 안정성을 위해서 온도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그러는 기구가 있어요.

● 교육국장 반창남

HACCP이 아니라 아까 질의하신 음성의 용천초하고 삼성초등학교 설치하려고 했

던 자동온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 간사 성영용

HACCP도 그렇게 됩니다. 그 과정에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런게.....

● 교육국장 반창남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성영용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주요사업 63쪽에 있는 건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관련 학부모 집중연수하고 고교생 진로지도 설명에 대해서 한 1,366만원 되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내용도 학부모를 동원해서 강의하고 자료를 보급하고 버스로 집단이동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여 올해 교육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 해서 버스로 집단이동 같은 게 혹시 선심성으로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하는데 특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반창남

교육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6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입을 보는 학생들이 금년에 3학년 들입니다. 그래서 2004학년도 대입자료 여러 가지 설명자료를 학부모들한테 해서

학부모가 알아야 학생들 진학지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한번하고, 1,2학년은 2005년도에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는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서 선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간사 성영웅**

혹시 하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옥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 **위원장 진옥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중 조정하기로 한 부분은 중등과 소관으로 교원사기 진작 및 교원단체지원중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 한교조사무실 임차수수료 480만원, 교원단체활동행사지원 한단

체 한교조 300만원 그리고 시설과 소관으로 교육문화회관건립 설계비 5억 9,470만원 합계 6억 8,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1조 716억 1,382만 7,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애쓰신 집행 관계자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칩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진옥경, 간사 성영용,

위 원 고규강,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 부 록

- ▶ 서면답변서(별첨 2)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3. 5. .

위원장      진 옥 경 





(별첨 1)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5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03.4.22. (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3.4.23. (수)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별첨 2)

# 서 면 답 변 서

1.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기준(성영용 위원)
2.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 배치(성영용 위원)
3. HACCP시스템과 식중독예방시스템의 차이는?(성영용 위원)
4. 충북학생롤러경기장 개요(이기수 위원)

# 질의 · 답변

성 영 용 위 원

초등교육과

## 질 의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특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 교육인적자원부 공문 특보81440-94(2003. 2. 17)호에 의하여 전액국고지원으로 지원기준을 명시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하였으며
- 교육부에서 시달한 지원기준은 10학급 이하 학교 3,000만원, 11~20학급 학교 3,500만원, 21학급 이상 학교 4,000만원이며
- 우리도 특수학교별 치료교육용 교재·교구비 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0만원 : 꽃동네학교(10학급 이하)
  - 3,500만원 : 청주혜화학교, 청주맹학교, 충주성모학교, 송덕학교, 제천청암학교(11~20 학급)
  - 4,000만원 : 청주혜원학교, 충주성심학교, 청주성신학교(21학급 이상)

작성자 직 : 장학사    성명 : 김 인 숙

# 성 영 용 위 원

## 학교도서관 사서보조원 배치

중등교육과

### 대상 학교

- 학교도서관 시설이 구축된 학교 또는 2003년도 사업 대상 학교를 우선 배정함
  - 2001, 2002년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교 : 30교
  - 좋은 학교도서관 사업 대상 학교 : 52교
  -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의한 지원학교 : 9교
  - 특별교부금 사업에 의한 도서관 신축 : 5교
  - 디지털자료실 구축 학교 : 8교
  - 기타 학교도서관이 잘 구성된 학교

### 선정 기준

- 학교의 규모가 큰 학교
- 학교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  
도서관 개방일, 사용자 수, 장서 보유 수, 열람석 수 등

### 선정학교

- 초등학교 30교, 중학교 20교, 고등학교 10교, 계 60교
-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정 예정

### 기 타

- 지역교육청 11명, 직속기관 2명, 본청 2명 등 계 15명은 당초 예산에 반영

### HACCP(해썹)시스템과 식중독예방시스템의 차이는?

- HACCP(해썹)이란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각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기법을 말하는 것이며,
- 우리도에서는 2002년도 부터 모든 급식학교에 대하여 조리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HACCP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중독 예방시스템은 해썹 시스템 적용에 따른 온·습도를 자동으로 측정 관리하는 기구이며 음성관내 2개교(남신초, 용천초)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이 기 수 위 원

## 충북학생롤러경기장 개요

- 소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89번지
- 공사 기간
  - 1999. 9. 17 - 2000. 8. 30.(약 12개월)
- 개장일 2000년 8월 30일
- 시설 현황
  - 부지 5,091m<sup>2</sup>
  - 우레탄 뱅크트랙 200m
  - 관람석 468석
  - 전광판 및 전자계측장비, 조명시설 설치
  - 합숙소, 식당, 창고 등은 기존의 현암초 시설을 대폭 수리하여 사용.
  - 투시형 담장, 50대 주차공간 확보
- 활용 현황
  - 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 강화훈련
  - 타시도 우수 선수의 전지 훈련장 제공으로 본도 선수 기량 향상도모
  - 충북 도내 각 급 학교의 전지 훈련
  -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롤러스케이팅 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 유·초등생의 현장 체험학습
- 실적
  - 2002년도 소년체전 : 금 6개 은 2개 동 4개 획득
  - 2001년도 소년체전 : 금 7개 은 3개 동 4개 획득
  - 2000년도 전국체전 금 2개에서 2001년도 전국체전 금 7개 은 6개 획득 : 비약적인 경기력 향상을 가져옴.
- 운영예산
  - 2002년도 : 23,520천원(인건비 12,578천원, 순수운영비10,942천원)
  - 2001년도 : 27,692천원(인건비 12,574천원, 순수운영비 15,118천원)
- 관리
  - 장장 : 청주교육청 평생교육과장
  - 기능직 1명 채용 관리(롤러 코치 겸직)

